

연구보고서 2015-04

# 서울시 봉제노동자의 건강안전과 작업환경

-주요 5개구 실태와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김재희 · 전수경 · 한인임  
조성애 · 박준영 · 이관재

서울노동권익센터



## 발 간 사

산업화 초기에 한국 경제를 견인한 봉제업은, 지금도 서울시의 도심형 4대 제조업 중 한 분야로서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 세계경제지형 변화에 따라 산업이 위축되자, 신규인력 유입과 의류봉제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골자로 하는 다양한 지원책이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봉제업에 종사하는 개인들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낮으며, 장시간 노동과 많은 작업량, 부족한 휴식을 개선할 방법 고안도 마땅치 않은 편이다.

본 연구는 봉제 노동자의 건강문제와 안전문제에 중점을 두어, 봉제 노동자가 체감하는 건강안전 문제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서울의 봉제업 집적지를 선정하여, 작업환경 및 근무조건, 건강에 대한 인식, 피부·근골격계·호흡기 질환, 휴식과 여가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봉제노동자는 높은 노동 강도와 시간압박으로 인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진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피설문자 중 59%는 40~50대 여성노동자로 가정과 일터에서 지속적인 고강도 노동을 수행한다. 여성 봉제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동일 연령대의 타직군 종사자에 비해 상당히 심각하며, 이에 대한 예방적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대다수는 근골격계 통증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신 피로와 만성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작업대 의자와 환기시설 개선의 필요성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여가활동과 휴식에의 수요를 바탕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성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을 제안한다. 이는 현장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 모색의 첫 번째 걸음이다. 이를 시발점으로 전문적인 표준설문을 통해 정책화를 위한 데이터 구축, 중고령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등의 후속 연구와 작업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연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특히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을 비롯한 5개구 봉제업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윤순익 르돔·소공인센터장, 서울의료원 김규상 과장, 정우철 박사의 조언에도 사의를 표한다. 분석과 집필 과정에 큰 역할을 한 송리라, 박유경, 의자개선안 디자이너 최재공, 보고서 교정에 큰 도움을 준 강지윤씨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인사이드와 연구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간적·물리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맡은 소임을 다한 연구진에게도 감사드린다.

2015년 11월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김성희



# 봉제일이 힘들어요.

2015. 5.11 ~ 5.28 대상: 서울시 봉제산업 집적지 5개 구 (종로구, 중랑구, 성북구, 중구, 동대문구) 소속 봉제업 종사자 466명

## 봉제산업 종사자의 인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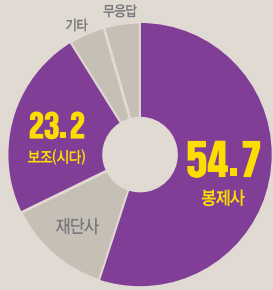
봉제산업 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약 2배 이상 많고(2014년 통계청: 남녀 비율은 약 36%대 64%), 전체 노동자 중, 40세~59세인 여성노동자는 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고령 여성' 노동자가 봉제산업 종사자의 대표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59%** 40~59세 여성  
중고령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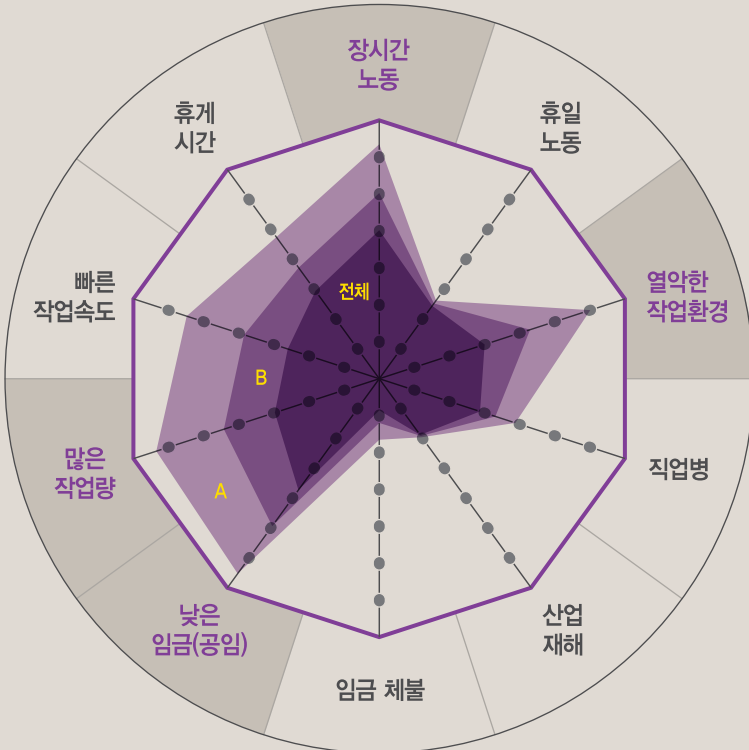
## 직무, 업무 분포도(%)

봉제산업 종사자 중 봉제사의 비중이 54.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보조(시다)의 비중이 23.2%로 높았다.



## 전반적 노동환경의 심각성 인식

'A'는 등대문 시장상권으로 시장의 주문에 맞춰 24시간내 생산과 납품이 이루어져 노동강도가 높은 편이다. 'B'는 그 외 지역이고, '전체'는 A, B지역을 모두 합친 설문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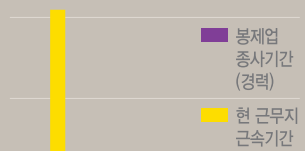


## 경력 대비 근속근무기간 비교

'봉제업 종사기간'은 경력을, '현 회사 근속기간'은 현근무지에 일한 기간을 뜻하는데, 숙련도 높은 기술자들이 봉제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처우에 따라 이직이 잦은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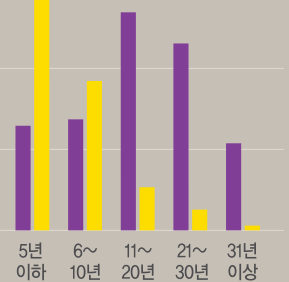
5년 이하 근속 비율

**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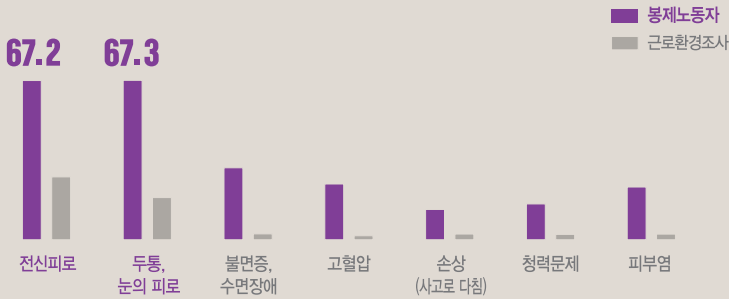


11~20년 경력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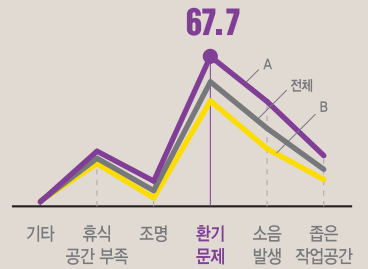
**27.3%**



### 건강상의 문제 경험한 비율(%)



### 지역별 건강에 영향을 주는 작업요인(%)



### 어깨 상지 통증, 증상을 일으키는 작업정도



**92.4%** 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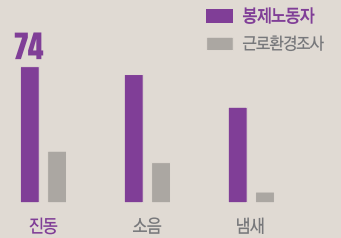
**77.3%** 허리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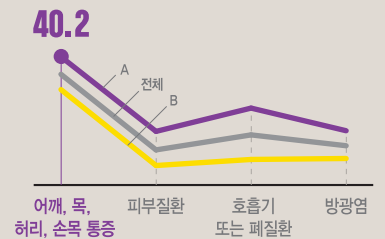
**41.3%** 무릎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심각하게 인식하는 근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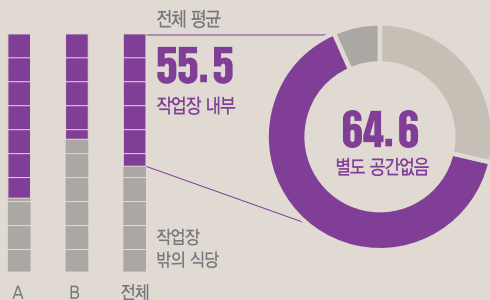


### 지역별 직업성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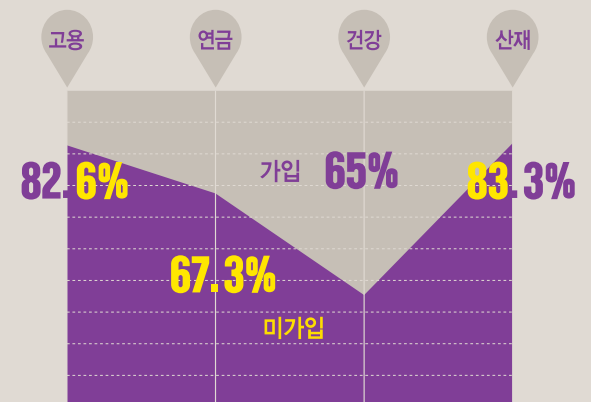


### 업무 중 식사 장소(%)

전체의 절반이상이 작업장 내부에서 식사를 하고 이중 64.6%가 식사를 위한 별도 공간없이 미싱테이블 등에서 해결하고 있다.



### 4대 보험 미가입률



# 목 차

## 연구요약

I. 서론 .....	1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2
1) 연구의 배경 .....	12
2) 연구 목적 .....	14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16
1) 연구의 구성 .....	16
2) 연구 방법과 한계 .....	17
II. 선행연구 검토 및 서울시 봉제산업 현황 .....	24
1. 선행연구 검토 .....	24
1) 국내 연구 .....	24
2) 해외 연구 .....	28
2. 봉제 산업 현황 .....	37
1) 현황 .....	37
2) 산업적 특성 .....	42
3. 소결 .....	50
III. 봉제노동자 건강안전 실태 분석 .....	51
1. 봉제 노동자 실태조사 개요 .....	52
1) 응답자 특성 .....	52
2) 설문지의 한계(무응답자) .....	62

2. 봉제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 .....	62
1) 전반적인 노동환경 인식과 건강안전 문제 .....	63
2) 봉제노동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 .....	75
3) 봉제노동자의 특수한 근로환경 현황 .....	85
3. 근골격계 질환 .....	92
1) 질환 증상 호소 수준 .....	92
2) 업무의 위험성 .....	93
3) 통증에 영향을 주는 요소 .....	95
4) 질환 관리 관련 규제 .....	107
4. 호흡기질환 .....	112
1)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	112
2) 코 질환: 부비동염, 비염 .....	115
3) 만성폐쇄성폐질환 .....	117
4) 질환관련 규제 .....	120
5. 소결 .....	122

#### IV. 대안과 과제: 건강문제 예방과 개선 방향 .....

1. 적절한 휴식 보장 .....	126
1) 휴식과 일에 대한 전반적 인식 .....	126
2) 업무 중 식사 현황 .....	128
3) 프리젠티즘(Presenteeism) .....	129
4) 휴식의 질적 측면: 봉제노동자의 여가 수요 .....	132
2. 기존 지원책의 확대·지속 .....	138
1) 작업환경개선 .....	138
2) 행정·사무지원 .....	140
3) 지속·확대 방향 .....	141
3. 의료적 지원: 건강관리와 예방 .....	142

1) 현행 제도와 실효성 검토 .....	142
2) 근로자건강센터의 역할 .....	144
4. 협업 체계 구축 .....	148
1) 협업의 필요성 .....	148
2) 협업 방안과 전망 .....	149
5. 소결 .....	153
 V. 결론 .....	 154
 참고문헌 .....	 159
 [보론] 봉제산업의 이주노동자 고용 .....	 163
[부록1] 작업의자 개선안: 인간공학적 개선 .....	176
[부록2] 봉제사업장 작업환경(소음, 분진) 측정 결과 .....	187
[부록3] 봉제노동자 건강안전 실태조사 설문지 .....	196

## 표 목차

<표 I-1> 면담자 정보 .....	20
<표 I-2> 연구 진행 일정 .....	23
<표 II-1> 봉제노동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직업병의 예 .....	29
<표 II-2> 의복제조업 취업자 수 .....	38
<표 II-3> 서울시 봉제업체와 종사자 .....	38
<표 II-4> 서울 봉제업 집적지 5개구 사업체 현황(2013) .....	40
<표 II-5> 서울시 봉제업 사업체 형태 .....	42
<표 II-6> 서울 봉제 집적지 5개구 제조업체 판로 .....	44
<표 III-1> 응답자 성별 분포 .....	52
<표 III-2> 응답자 연령 분포 .....	53
<표 III-3> 직무별 응답자 비율 .....	55
<표 III-4> 근무지역 분포 .....	56
<표 III-5> 봉제업 종사기간과 현 회사 근속기간 .....	56
<표 III-6> 작업인원규모 .....	58
<표 III-7> 5개 지역 봉제노동자 임금형태 .....	59
<표 III-8 > 임금 수준 분포 .....	60
<표 III-9> 5개 지역 봉제노동자 4대 보험 가입 현황 .....	60
<표 III-10> 5개 지역 봉제노동자의 4대 보험 가입 비율(상세 유형) .....	61
<표 III-11> 봉제노동자조사 중 근로환경조사(2011)와 비교 가능한 문항 .....	63
<표 III-12> 전반적인 근로환경 중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항목 .....	65
<표 III-13> 근무 중 위험요인 노출에 대한 지역별 인식 비교 .....	69
<표 III-14> 근무 중 위험요인 노출에 대한 조사별 인식 비교 .....	70
<표 III-15> 일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에 대한 인식 .....	72
<표 III-16> 봉제노동자 주관적 건강상태 .....	76
<표 III-17> 건강검진 여부 .....	77
<표 III-18> 지난 1년(2014)간 경험한 건강상의 문제 비율 상세 .....	81
<표 III-19> 지난 1년(2014) 경험한 건강상의 문제 여부 조사별 비교 .....	84
<표 III-20> 일하는 의자에 대한 생각 .....	86
<표 III-21> 지역별 피부염 발생 여부 .....	88
<표 III-22> 조사별 피부염 발생 여부 .....	89

<표 III-23> 직업 특수적 건강문제로 인한 퇴직자의 복귀율 .....	91
<표 III-24> 봉제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경험 .....	92
<표 III-25> 봉제업종 노동자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수행 여부 .....	95
<표 III-26> 상지 통증과 근골격계부담작업 2호 수행 .....	96
<표 III-27> 상지 통증과 근골격계부담작업 4호 수행 .....	97
<표 III-28> 상지 통증과 근골격계부담작업 5호 수행 .....	98
<표 III-29> 업무별 상지통증 호소 수준 .....	98
<표 III-30> 상지통증과 작업량 간의 관계 .....	99
<표 III-31> 상지통증과 작업 속도 간의 관계 .....	99
<표 III-32> 상지통증과 휴일노동 관계 .....	99
<표 III-33> 상지통증과 의자 등받이 부실과의 관계 .....	100
<표 III-34> 상지통증과 의자 바닥 부실 간의 관계 .....	100
<표 III-35> 하지 통증과 근골격계부담작업 2호 수행 .....	101
<표 III-36> 하지 통증과 근골격계부담작업 4호 수행 .....	102
<표 III-37> 하지 통증과 근골격계부담작업 5호 수행 .....	103
<표 III-38> 하지 통증과 업무 간의 관계 .....	103
<표 III-39> 하지통증 호소자와 연령 간 관계 .....	104
<표 III-40> 하지통증과 작업량 간의 관계 .....	105
<표 III-41> 하지통증과 작업속도 간의 관계 .....	105
<표 III-42> 하지통증과 휴일노동 간의 관계 .....	105
<표 III-43> 하지통증과 의자 등받이 필요성 .....	106
<표 III-44> 하지통증과 의자 착석감 .....	106
<표 III-45> 하지통증과 의자 높이 간의 관계 .....	106
<표 III-46> ‘숨막힘’ 증상의 빈도 .....	114
<표 III-47> ‘숨막힘’ 증상의 변화 .....	114
<표 III-48> ‘가래 없는 마른 기침’ 증상의 빈도 .....	114
<표 III-49> ‘가래 없는 마른 기침’ 증상의 변화 .....	115
<표 III-50> ‘비염(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 증상의 빈도 .....	116
<표 III-51> ‘비염(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 증상의 변화 .....	116
<표 III-52> ‘가래를 동반한 기침’ 증상의 빈도 .....	118
<표 III-53> ‘가래를 동반한 기침’ 증상의 변화 .....	118
<표 IV-1> 지역별 지난 1년 동안 몸이 아파도 나와서 일을 한 날 수 .....	131
<표 IV-2> 조사별 지난 1년 동안 몸이 아파도 나와서 일을 한 날 수 .....	132

<표 V-1 > 부문별, 주체별 대안 목록 .....	157
<표 보론-1> 이주노동자 고용관련 제도의 변화 .....	165
<표 보론-2> 2015년 도입규모(E-9) .....	166
<표 보론-3> 면담자 기본 사항 .....	167
<표 보론-4> 필요숙련기간, 평균총경력, 평균월급여, 평균근속년수 .....	169
<표 부록2-1> 의류봉제공장 환경평가 시료 수 .....	189
<표 부록2-2> 사업장 조사표_A업체 .....	191
<표 부록2-3> 사업장 조사표_B업체 .....	192
<표 부록2-4> 사업장 조사표_C업체 .....	192
<표 부록2-5> 업체별 총 분진 측정 결과(단위: $mg/m^3$ ) .....	193
<표 부록2-6> 업체별 소음 측정 결과(단위: dB(A)) .....	193

## 그림 목차

[그림 II-1] 봉제 노동자(재봉사)의 건강 문제(Jailer et al, 2015) .....	34
[그림 II-2] 봉제산업 가치 사슬과 한국 봉제산업 판로 .....	46
[그림 II-3] 창신동 봉제공장 생산-판매 네트워크(장미진, 양승우, 2015) .....	46
[그림 III-1] 40대~50대 중고령 여성 응답자 .....	54
[그림 III-2] 전반적인 노동환경 중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	64
[그림 III-3] 전반적인 노동 환경 인식(%) .....	66
[그림 III-4] 지역별 근무 중 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고 인식하는 비율(%) .....	68
[그림 III-5] 조사별 근무 중 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고 인식하는 비율(%) .....	69
[그림 III-6]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주요 작업 요인(%) .....	71
[그림 III-7] 봉제노동자 주관적 건강상태(%) .....	76
[그림 III-8] 건강검진 여부(%) .....	77
[그림 III-9] 지난 1년 간 업무와 관련하여 결근한 경우(%) .....	78
[그림 III-10] 지난 1년(2014)간 경험한 건강상의 문제 비율 .....	79
[그림 III-11] 지난 1년(2014) 건강상의 문제 경험한 비율 조사별 비교 .....	83
[그림 III-15] 일하는 의자에 대한 생각 .....	86
[그림 III-16] 작업관련 피부염 발생 부위 .....	88
[그림 III-17] 근무시간에 일 때문에 소변을 참는지의 여부 .....	90
[그림 III-18]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될까봐 물이나 음료수를 참는지의 여부 .....	90

[그림 III-19] 최근 3년 사이 동료가 일을 그만둔 이유 .....	91
[그림 III-20]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	113
[그림 III-21] 연령별 부비동염 유병률(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	115
[그림 III-22] 40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2009~2013) .....	117
[그림 IV-1] 전반적인 휴식과 일에 대한 인식 .....	127
[그림 IV-2] 업무 중 식사 장소 .....	128
[그림 IV-3] 작업장 내부 식사장소 .....	129
[그림 IV-4] 지역별 지난 1년 동안 몸이 아파도 나와서 일을 한 날 수 .....	130
[그림 IV-5] 조사별 지난 1년 간 몸이 아파도 나와서 일한 날 수 .....	131
[그림 IV-6] 여가, 문화 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	133
[그림 IV-7] 여가가 생긴다면 하고 싶은 활동 .....	134
[그림 IV-8] 여유 시간이 주어진다면 배우고 싶은 것 .....	135
[그림 IV-9] 업무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 .....	136
[그림 IV-10] 작업대의자개선안 .....	140
[그림 IV-11] 스트레칭 - 유연성 운동 .....	147
[그림 IV-12] 스트레칭 - 근력운동 .....	147
[그림 부록1-1] 기존 의자 판재에 피스 결합방식으로 부착하는 방식 .....	179
[그림 부록1-2] 기존 의자로 사용하고 있는 판재에 클랩프 결합방식으로 부착할 수 있는 요부받침 .....	180
[그림 부록1-3] 미사용 시 접어서 작업 자세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함 .....	181
[그림 부록1-4] 작업대 우측 하단에 위치한 자석 활용 소도구 보관방식 .....	182
[그림 부록1-5] 밀실 감개의 형태적 특성을 고려한 꺾는 방식의 정리시스템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쉽게 옮길 수 있도록 공기압착기를 이용 .....	183
[그림 부록1-6] 기존 작업대에 힌지 부착방식 활용 접이식 디자인 .....	184
[그림 부록1-7] 기존 기구에 신체 접촉 부위만 갈아 끼울 수 있게 했고 위치와 길이를 조절가능 하게 함 .....	185
[그림 부록1-8] 작업공간에 적용한 모습 1 .....	186
[그림 부록1-9] 작업공간에 적용한 모습 2 .....	186
[그림 부록2-1] 노출기준과 측정 결과 비교 .....	194

## 연구 요약

### □ 연구목적과 방법

○ 본 연구는 현행 봉제산업 지원책의 범위를 넓혀, 개별 노동자의 건강 향상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추진됨.

○ 서울의 대표적 봉제산업 집적지 5개 지역(종로구, 중랑구, 성북구, 중구, 동대문구)의 봉제산업 종사자 4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사업주와 노동자 대상 면접조사 집단, 개별 면접을 각각 실시.

○ 노동조건 전반(노동시간, 업무강도, 노동량, 임금),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질환 경험, 휴식과 여가에 대한 문항을 구성. 봉제노동자가 체감하는 문제를 기준으로 건강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 연구내용 및 결과

○ 설문조사 응답자 중 71%가 여성노동자이며(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노동자는 68%), 40~50대 여성노동자는 59%에 이룸. 60대 이상 여성노동자를 포함한다면 중고령 여성노동자 비율이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음.

- 봉제공정에 종사하는 재봉사와 보조 직군은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임
- 동일 연령대 타직군 여성노동자의 건강상태보다 전반적으로 나쁜 수준을 보임
- 모든 봉제업 종사자의 건강향상이 궁극적인 목표이나, 중고령 여성 노동자 비중이 높은 산업이라는 특수성을 인지, 중년 여성의 생애주기와 생활패턴을 고려해 건강상 문제와 안전 수준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노동자 처우 개선이 어려운 구조적 원인이 건강문제 악화와 맞물려 있음.

- 봉제산업 수출기지는 국외 제 3세계에 집중되어, 내수 시장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봉제업계의 구도가 형성됨. 운영이 불안정한 영세업체가 다수임.
-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 공정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저임금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특성이 유지됨.

○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 가입율과 공임, 과도한 작업량과 노동시간 문제.

- 영세업체, 미등록 업체의 비중이 높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 비율이 낮음(고용보험 미가입:82.6% , 산재보험 미가입:83.3%)
- 노동환경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장시간 노동(57.5%), 낮은 공임(56.4%), 많은 작업량(50.6%)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지역 간에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시장상권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경우, 주문-납품 과정에서의 시간 및 작업량의 압박이 더 심한 경향성을 띠기 때문임.(객공제와 당일출고시스템은 업무구조적 문제이기도 함)

○ 근골격계 질환과 호흡기 질환에 해당하는 증상 호소

- 56.2%의 노동자들은 환기문제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이라고 응답. 호흡기 질환 증상 호소는 인터뷰 내용에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남

- 봉제 작업을 딱딱한 작업의자에 장시간 앉아 특정 자세를 유지하거나,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분류되는 일을 수행함
- 근골격계 통증을 가장 심각하게 호소함.
- 호흡기 관련 증상의 심각성과 직업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표준화된 설문조사가 후속적으로 필요함.
-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와 예방을 위한, 운동요법과 휴식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딱딱한 나무 판의 형태인 작업의자로 인한 근골격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 요추, 어깨 통증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자개선 요구가 존재.

○ 만성화된 피로와 시간압박의 심각성

- 12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고, 가정에서 가사 노동을 수행하며 시간 압박에 시달림에 따라, 피로의 만성화와 각종 질환의 심화가 야기되는 경향
- 운동요법이나 스트레스 해소 등이 포함한 적절한 휴식이 필요

□ 대안 제시와 연구의 의미

○ 대안은 ①적절한 휴식 확보(일상생활 관련), ②기존지원책 활용(작업환경개선 사업 확대, 사무적 지원), ③전문의료진의 참여를 통한 건강관리, ④협업과 거버넌스에 대한 전망, 4가지로 제시함.

○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 파악하여 적절한 휴식(양질의 휴식)을 수 있음.

- 여가에 대한 구체적 수요가 존재함, 구체적 여가 활동의 실현 여부 판단 필요
- 나들이, 여행, 운동 수요가 높은 것에 주목하여, 휴게공간과 시간의 확보 및 외부에서 움직이는 활동을 독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함.

○ 작업환경개선 지원과 건강 및 안전 향상을 위한 비용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 사업주와 노동자의 기존지원정책 참여를 독려하는 행정적 지원도 필요함.

○ 의료전문가가 제시하는 예방적 조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직업관련성질환의 심화를 막고 건강 상태를 상시 점검, 관리할 수 있음. 일반 의료기관보다 영세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 상담, 예방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근로자건강센터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건강안전교육 내용의 일상화를 위해, 작업장개선과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및 상담 부문에서의 협업이 필요함

- 지자체 및 행정실무기관, 근로자건강센터, 지역사회저변, 봉제산업 종사자 당사자 간의 협업을 체계화해야함.
- 협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를 전망해야함

○봉제노동자 건강실태 파악을 위한 데이터 구축과 심층연구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작업시설개선과 건강개선 프로그램 사업 추진 등의 후속 작업이 이어져야 함.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연구의 배경

서울시는 2015년 뉴욕의 제조업 부흥 정책을 벤치마킹한 ‘매뉴팩처 서울’ 정책을 표방하며, 제조업 집적지역을 특화된 산업단지로 육성할 계획을 발표했다.<sup>1)</sup> 서울시는 이전부터 도심 제조업 진흥을 위한 정책으로 도심형 4대 제조업(봉제, 기계, 인쇄, 귀금속) 선정과 이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왔다.<sup>2)</sup> 작업장이 도심 내에 위치하는 전통적 제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지역사회의 경제와 산업 구조를 위하여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도심형 4대 제조업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제조업은 1960~70년대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를 견인한 산업이자 서울시의 제조업 지원의 핵심 분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매뉴팩처 서울이라는 명칭의 선 ‘매뉴팩처 뉴욕’은 뉴욕 ‘가먼트 디스트릭트’(Garment District)의 패션봉제 제조업과 디자인 분야의 상보적 발전이 성공적 추진된 사례임을 감안하면, 서울시 산업지형에서 봉제산업의 중요성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의 의류봉제업 종사자는 10만 명 이상이고, 1만개 이상의 봉제업체가 운영 되는 중이며, 이는 서울시 제조업의 업체 기준 23%, 종사자 기준 3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sup>3)</sup> 서울의 생산역량과 생활에서 의류

---

1) 홍선표, 강경민. (2015). “‘제조업 부활’ 나선 서울- 패션업 되살린 뉴욕처럼...서울, 산업밀착형 도시로 탈바꿈.” 『한국경제』 (2015.4.27.): 3면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42668951>〉

2)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4대 제조업 성장·안전 지원”(2012.4.2.)와 서울시 사업계획 “서울 영세봉제업체 역량강화를 위한 2013년 패션지원센터 운영계획(2013.2.5.)”에서 드러나듯이 서울시에서 최근 수년 동안 봉제업에 관심을 가져왔다.

3) 통계청. (2013).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조사표.” 〈[http://kosis.kr/common/meta\\_0nedepth.jsp?vwcd=MT\\_ZTITLE&listid=K22](http://kosis.kr/common/meta_0nedepth.jsp?vwcd=MT_ZTITLE&listid=K22)〉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2015). “도시형 제조업 인식제고 및 환경개선.” (2015.3.25). 〈<http://economy.seoul.go.kr/archives/18159>〉 (검색일: 2015-04-28)

봉제업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봉제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산업적 관심을 점진적으로 넓혀왔다. 봉제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책과 연구에서 이러한 관심이 드러난다. 대부분의 연구조사는 산업 단위를 대상으로, 의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05년, 산업연구원은 자유무역으로 인한 봉제 산업의 침체를 문제로 인식하고, 봉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산업연구원, 2005). 한국의류산업협회는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의류제조업 현황파악과 산업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왔다. 최근 한국의류산업협회에서 발간한 「국내 의류제조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2013)에서는 의류제조(봉제)업체를 대상으로 실شم조사, 정책조사, 근로자 조사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청에서 의뢰한 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는 봉제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고용서비스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도 다양한 제조업 진흥정책을 추진해왔다. 2012년 「안전하고 활력 있는 희망 서울 만들기」 업무협약을 통해 봉제 산업을 비롯한 4대 제조업 사업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 유입을 장려하여 제조업 활성화를 계획하였으며, 의류산업협회 주관의 전국 의류제조 실태조사에 협력하기도 했다(한국의류산업협회, 2013a; 2013b).<sup>4)</sup> 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를 통한 교육산업 등을 추진했으며, 2015년 개소한 ‘청파봉제사랑방’을 통해 디자인과 봉제 간의 연계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참여하는 봉제 산업 지원 방향은 산업 활성화와 인력 수급을 통한 취업연계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봉제산업 지원 계획에는 인력 유입 장려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이 일반적으로 포함되지만,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려는 조사는 시도되지 않았다. 노동자의 인권, 건강, 생활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연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작업환경 문제는 산업을 지탱하는 인력 수급을 논할 때 언급될 뿐이다. 고용, 산업, 문화 분야에서의 기존 연구와 지원은 각각 봉제업체 및 산업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생산 현장의 노동자의 삶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것이다.<sup>5)</sup>

4) “의류제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울시 결제문서 문화산업과-367 2014.1.14.

5) 한국현대사에서 ‘전태일’과 ‘봉제산업’이 갖는 상징성은 현재도 유효하다. 창신동은 인권, 노동운동의 차원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 주목받는 공간이다. 문화 분야에서 창신동에 대한 주목과 지원은 봉제의 집적지가 생활과 생산의 공간에 그치지 않고, ‘문화 공간’으로의 재정체화되는 흐름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방향과 현재 창신동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활과 고충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2014년 12월부터 서울시는 봉제산업, 생활, 문화를 복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질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계획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노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봉제노동자의 건강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려 한다. 봉제 산업 진흥 정책에서 기술 인력의 유입과 유지가 중요한 위상을 지니는 의제라면, 노동자의 건강관리와 안전 보장은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특히 봉제업이 서울시 서민 경제의 근간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주축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생활기반을 봉제산업에 두고 있으며 봉제산업의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자의 삶과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작업장에서 이들의 고충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작업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봉제산업 지원책이 기대하는 효과인 신진 기술자 유입과 사업의 고부가가치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각종 산업연구에 비해, 산업 종사자의 건강상태 연구는 부족한 편이며, 근로환경과 건강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어온 편이다. 그러나 근로자건강검진과 관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노동자는 신체 건강에 유해한 환경과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와 개선조치가 필요하다.<sup>6)</sup>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서 실시하는 작업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여성 노동자,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에 관한 연구가 이뤄진 바 있지만, 개별 직종 노동자의 건강안전에 대한 심층 조사는 노조와 전문가 그룹의 협업 하에 이뤄진 소수의 실태 조사의 형태로만 발견된다. 최근, 속기사와 화물기사 등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및 건강 안전조사 결과가 나왔으나(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연구소, 2009; 노동건강연대, 2009), 봉제 산업 노동자의 건강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시도 되지 않은 실정이다.

## 2) 연구 목적

봉제 산업은 서울의 도심형 4대 제조업으로 분류될 만큼,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더불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을 기대 받는 분야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봉제 산업에 대한 기존 연구는 전문 인력의 양적, 질적 성장에 집중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모

---

동자의 건강문제를 출발점으로하는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신동의 도시재생을 위한 봉제 박물관 건립 및 봉제의 거리 조성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 369호 2014.12.23.)

6) 노동부, 근로자건강진단 개념. ‘근로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작업환경에서 비롯된 작업성 질환’에 대한 대비로서 근로자 건강진단은 의의를 갖는다. 노동부. “근로자 건강진단-의의.” <<http://www.moel.go.kr/oneclick/work17/health/index.html>>

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봉제업체 작업장의 개선과 사업체에 대한 지원은 봉제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고,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한 신규인력의 유인정책을 시행해왔다. 한국의류산업협회와 서울디자인재단 등 기관에서는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을 강구하고 사업을 집행해왔기 때문에, 패션·봉제업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에 집중해왔다. 이러한 흐름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봉제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경제성과 산업육성이라는 거시적 목표에 무게를 두어왔음을 보여준다.

반면, 봉제업 종사자의 건강위험요소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며, 작업환경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정적이다. 사실상, 봉제 노동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산업분야로서의 의류제조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생활과 생산이 이뤄지는 공간의 의미를 함축한 봉제 산업 집적지 연구에서도 봉제 공정을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가 중시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속되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조사의 중심으로 ‘노동자’를 선정하여, 노동자가 스스로 체감하는 건강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중공업 현장에 비해 봉제업 작업환경의 위험도는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의류산업협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작업현장의 쾌적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sup>7)</sup> 봉제 노동자는 쾌적하지 않은 작업환경과 직업질환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에 비해 해외에서 이뤄지는 관련 연구와 논의는 활발한 편이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서는 의류봉제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건강안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Shaheen Ahmed·Mohammad Zahir, 2014a; Shaheen Ahmed·Nazrul Islam, 2014b). 의류봉제산업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관심과 개선 시도는 서구에서도 발견된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의류산업 종사자가 직면하는 인간공학적 차원의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연구를 조사하고, 결과물을 핸드북으로 발행했다. 2장 선행연구에서 소개할 의학적 접근은 건강문제를 객관적으로 정돈하여 보여준다. 이 연구들은 작업 자세, 휴식, 작업장 도구 및 시설의 적합도를 과학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인간공학적 접근은 종사자의 근골격계 건강 상태 진단과 질환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 내용을 전제하여 추진되었다. 봉제 산업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적절한 건강지원책과 작업환경 개

7) 의산협 실태조사 「국내 의류제조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2013)에 따르면, 생산 환경 위험도는 안전한편(2.3/5.0점)이나, 사업장 쾌적도는 낮은 수준(2.8점)이다.

선책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무 특성상 초래되기 쉬운 질환과 건강문제의 배경이 되는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봉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실태와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실질적인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봉제 산업 노동자의 건강안전 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문과 면담 조사를 토대로 봉제산업 노동자가 체감하는 건강위험요소와 그 영향을 밝히고, 건강 개선을 위한 현실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노동자의 건강안전 향상을 위한 현실에서 적실성을 갖출 수 있도록 협업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행위자의 역할을 제언할 것이다. 이는 건강과 휴식에 대한 노동자 개인의 바람을 반영하여, 미시적 차원에서의 개선안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시도이기도 하다.

##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1) 연구의 구성

본 연구조사는 봉제산업 노동자의 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우선, 1970년대 열악한 작업장에서의 노동자의 이미지를 투영해 봉제업을 보는 전형적인 시각을 탈피해, 2010년대 봉제노동자의 작업환경과 건강 상태를 실제로 관찰하는 과업을 계획했다. 즉, 현 시점에서 봉제 노동자의 노동실태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 노동자가 체감하는 건강문제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장 중심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상태 향상을 위하여, 직무와 연관된 질환을 중심으로, 봉제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의 적절한 안배, 작업환경의 변화,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요구 수준을 확인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1절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봉제산업 노동자의 건강안전 상태에 대한 인식과 연구동향 등을 살펴 볼 것이다. 2절에서는 노동자의 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배경으로써, 봉제산업의 구조와 현황을 확인하고, 3절

에서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현황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경향성을 살펴볼 것이다. 3장은 건강문제 실태 분석을 담고 있는 장으로, 봉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1절에서는 봉제 노동자의 일과 휴식,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차원을 다룰 것이다. 2절에서는 근골격계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포괄하는 직업성질환의 증상 수준을 파악하고,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주된 건강 문제를 설명할 것이다. 4장은 여가와 휴식에 대한 봉제 노동자의 수요를 파악하는 장으로, 향후 대안과 연계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5장에서는 대안과 후속연구를 위한 과제를 언급하고, 부록과 보론에는 작업의자개선안, 작업장 환경 측정 결과, 설문조사 시 사용한 설문지와 봉제업체의 이주노동자 고용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담을 것이다.

본 연구조사는 시간적 제약을 비롯한 여러 제약과 한계를 감안하고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과학적 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책 제언보다, 봉제 노동을 하는 당사자들이 마주하는 불편과 개선 요구를 발굴하고, 이에 응답하는 작은 실천으로써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론은 봉제 산업 노동자의 현재 노동실태와 건강실태를 개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며, 보건과 안전 차원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별 조사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술할 연구 방법의 엄밀성 등의 한계가 존재하기에 대안의 정책화를 위한 후속연구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는 문제의식을 환기하고, 개선을 위한 참여적 대안을 제시하는 첫 시도라는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방법과 한계

### (1) 설문조사

설문 문항은 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업력, 작업환경과 각종 질환과 증상의 현황을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건강전반에 대한 인식과 장시간 특정한 자세로 작업을 계속하는 봉제산업 노동자의 특성상,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해, 작업 재료와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피부염, 방광염 등의 질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 설문조사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자 자신이 체감하는 질환 및 증상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객관적 환경 측정

과 개별 노동자에 대한 이학적 검진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봉제 노동자가 느끼는 건강상의 문제와 불편을 파악하기에 용이한 방법이다.

특히 질환 및 증상의 경험을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문항을 구성했다. 이 결과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 피부염, 방광염 등 봉제산업 종사자에게 쉽게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의 발생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은 종로구, 중랑구, 성북구, 중구, 동대문구의 봉제업 종사자 478명으로, 478부의 설문응답 중, 유효 응답은 466부였다. 설문조사의 응답률에는 응답자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설문결과로 서울의 봉제업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고용현황과 임금수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 중 여성 비율과 중년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직업적 특성은 반영되었으며, 설문 결과를 통해 건강문제와 여가에 관한 노동자 자신의 인식과 직업성 질환의 대체적 경향을 검토할 수 있다.

비록, 설문 문항의 의학·보건 차원에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설문 응답자의 편향과 대표성 문제가 존재하지만 대표적 봉제업 집적지역 5개구에서 실시된 1차적인 양적 조사로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봉제노동자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 될 수는 없지만, 이후, 질적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는 봉제노동자의 건강현황에 대한 맥락적 설명과 결합할 때 이해도를 높이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규모의 업체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봉제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지역사회나 업체 근접지역 단위에 대한 지원으로써 직업성 질환 예방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더불어 설문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응답자 저변은 후속 조사와 건강 개선 프로그램 진행 시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측정조사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소음으로 인한 난청 등의 환경적 요인의 심각성을 판단하기 위해 소음과 분진을 측정했다. 측정조사는 전문적 측정팀을 보유한 원진재단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며, 3업체의 9명의 노동자가 측정대상이었다.<sup>8)</sup> 측정조사는 근로 중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의 심각성을 측정, 파악하는

8) 1개 작업장을 하나의 그룹으로 지정, 각 작업장 별로 3명의 노동자를 샘플로 선정하였다. 측정 조사의 대상은 총 3그룹, 9명의 작업자(그룹 당 3명의 작업자)이다.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노동자가 체감하는 소음과 분진의 수준을 파악하여 설문문의 비교를 통해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려는 기대에 따라 이뤄졌다. 효과성 높은 대안 모색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선정과 조사 시기의 문제가 맞물려 본 연구 과제를 위해 실시한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주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열악한 환경의 작업장에 조사 의뢰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또한, 하계의 봉제업체는 비교적 분진 발생량이 덜한 환경에 놓여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조사 일정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 하에서 불가피한 문제가 존재한다. 정해진 측정조사 일정 중에 각 작업장은 작업량과 작업자 수가 적은 편이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측정조사 결과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발견된다. 우선, 후속연구를 위한 샘플링에 대한 내용이 있다. 접근성이 낮은 작업장의 환경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한 연구 계획 설계가 필요하며, 주요 생산품목과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반복적인 측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후속연구를 진행한다면, 생산 물품의 특성과 계절별 원단과 작업 방식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직시하여 봉제업 노동자의 건강에 유해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진을 측정한 수치와 노동자가 체감하는 심각성 사이의 괴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진의 성분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사점은 호흡기 질환과 기타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3) 면접조사(면담조사)

봉제산업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고충을 듣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노동자와 사업주를 고루 인터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영세업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봉제업계에서 노동자와 사업주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며, 공정에 참여하는 사업주는 고용된 노동자에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작업량을 소화하는 경우가 많다. 봉제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봉제산업 노동자의 건강문제는 봉제업 종사자 전체의 건강 안전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노동자와 사업주 면담 조사 결과는 공통적으로 작업환경과 노동여건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양자의 견해를 모두 듣고, 봉제업 노동자의 열악한 건강 상태를 유지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가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업주와 노동자의 면접을 위한 질문 구성이 동일하지만은 않는데, 양자의 고충과 시각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사업주 대상 면접내용은 영세업체 중심의 봉제 산업의 현실을 분석하는 데에 보조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노동자의 건강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원인 분석에 도움이 되었다. 노동자 면담은 설문에서 드러나지 않은 노동자의 휴식과 일에 대한 인식과 희망하는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기에 다음 장에서 후술할 분석내용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특히 노동자가 구술하는 작업 경험과 건강상태는 봉제 산업의 부침의 영향을 받기도 하며, 직업성 질환의 배경을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면담에서는 설문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작업환경에 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인식이 제시되는데, 이는 본 보고서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 계획 수립의 준비 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연구의 치밀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접조사는 집단면접과 1:1 면접을 수행하였다. 피면접자의 인적사항, 면담방식과 면담 일시는 아래 <표 I-1>에 기재하였다.

#### <표 I-2> 면담자 정보

구분	인적사항(성별, 연령, 직업구분)	면담방식	면담일시
A	남성, 50대, 봉제업체 사업주	집단면접	5.22
B	남성, 50대, 봉제업체 사업주	집단면접	5.22, 6.5.
C	남성, 40대, 봉제업체 사업주	집단면접	5.22, 6.5.
D	여성, 40대, 봉제업체 노동자(객공)	개별면접	5.22.
E	남성, 50대, 봉제업체 사업주	개별면접	5.21.
F	남성, 40대, 봉제업체 사업주	집단면접	5.21.
G	남성, 50대, 봉제업체 사업주	집단면접	5.21.
H	남성, 50대, 봉제업체 사업주	집단면접	6.2.
I	남성, 50대, 봉제업체 사업주	집단면접	6.2.
J	남성, 40대, 봉제업체 사업주	집단면접	6.2.
K	남성, 50대, 봉제업체 사업주	집단면접	6.2.
L	여성, 50대, 봉제업체 노동자	집단면접	5.21.
M	여성, 40대, 봉제업체 노동자	집단면접	5.21.
N	여성, 50대, 봉제업체 노동자	집단면접	5.21.
O	여성, 50대, 봉제업체 노동자	집단면접	5.21.
P	여성, 50대, 봉제업체 노동자	집단면접	5.21.
Q	여성, 50대, 봉제업체 노동자	집단면접	5.21.
R	남성, 40대, 봉제업체 노동자(사업주 경험)	집단면접	6.5.
S	남성, 40대, 봉제업체 노동자(사업주 경험)	집단면접	6.5.

면담자와의 인터뷰는 5월 하순부터 6월 첫 주까지 이뤄졌으며, 각 면담자의 근무시간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담자는 봉제업체 사업주 10명과 노동자 9명으로 사업주는 모두 남성, 노동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모든 면담자는 40대~50대로, 업계 종사자의 평균 연령에 속했다. 종로구와 성북구, 중랑구의 사업주에 대해 집단면접을 진행했다. 노동자와의 면담은, 종로구 노동자와의 개별면접과 성북구 노동자와의 집단면접이 이뤄졌다.

면접조사는 자유로운 대답형식으로 진행되었지만, ①건강문제에 대한 인식과 질환 유무, ②작업환경개선 및 현행 산업지원책에 대한 인식 이라는 2가지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사업주와 노동자와의 면접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봉제업 종사자 모두가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봉제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유사한 건강 문제를 경험하며, 작업장 내의 위험에 노출된 정도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별도로 제시한 질의는 아래 서술한 바와 같다. 사업주에게는 ①고용과 운영 시 난점 ②작업과정과 납품과정 ③지원책(패션/봉제 지원 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평가를 주된 질문항목으로 제시하였다. 노동자에게는 보다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했다. 상세한 질문 내용은 다음의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업력, ② 직업성질환을 포함한 건강문제, ③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 ④근무 형태와 작업 특성, ⑤ 생활실태, ⑥ 노동 강도와 임금)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각 면접 과정에서 노동자가 체감하는 건강문제와 노동환경을 결정짓는 구조적 배경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노동강도와 임금 문제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방향을 인식할 수 있었다.

면접조사는 설문 선택지에 누락된, 산업과 건강 간의 관계와 맥락을 파악하는데 기여하였다. 구조적 문제로서의 봉제업의 특성이 미시적 문제인 개별 노동자의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고려한 대안을 고안할 수 있었던 것은 면접조사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설문에서는 찾을 수 없는 노동자의 삶과 일에 관한 ‘내러티브’를 확인함으로써, 건강문제를 심화시키거나 문제의 개선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을 추정해볼 수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면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의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의 문제와 업황의 취약점을 찾는 데에 주력하였다.

이와 별개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sup>9)</sup> 이주노동자 면담조사는

영세제조업의 자금난과 인력난을 타개하는 방책으로 이주노동자 고용이 선호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계획되었다.<sup>10)</sup>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작업환경과 건강권에 관한 논의를 봉제 산업 노동자의 건강안전 문제와 연계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한국인 사업주와 노동자 면담에 따르면, 현재 봉제산업에서의 이주노동자 고용비중은 매우 낮은 형편이다. 불법체류자 단속,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주노동자 고용이 급감했으나, 인력수급에서의 난항이 봉제산업의 존폐에 영향을 끼칠만한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봉제업계와 이주노동자 고용 문제의 중요성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산업의 진흥과 직결된 인력수급이라는 측면에서 봉제업의 기술 인력의 감소, 고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책이 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 안전에 대한 고려는, 봉제업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산업 진흥을 위해 이주노동자 고용이 장려될 때,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는 계층으로서 자리 잡게 되면, 봉제노동자 직군 전체의 처우 악화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조사가 현황을 직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주노동자와의 인터뷰는 이후의 봉제산업 노동 실태를 전망하기 위한 유용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추진된 이주노동자와의 면담과 노동, 인권에 관한 분석과 전망은 보론에서 다루어진다. 이주노동자의 면담에서는 제품 생산의 마무리 단계(시아게) 작업자의 야간노동 문제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국내 면담자와의 인터뷰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이지만, 업계의 일반적 특성이기도 하다. 마무리 공정 단계의 야간노동은 봉제업 종사자의 휴식과 일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중요성을 지닌다.

9) 면접조사에 임한 이주노동자 정보는 보론에 기재한다.

10) 사업주와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봉제업 종사자의 중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고려되는 점이다. 처우에 비해 높은 노동강도가 요구되는 업종 특성과 영세한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인구에 비해, 이주노동자들이 봉제업체에 취업의사를 가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력난 타개를 위한 다양한 정책 중, 이주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 등의 고용을 촉진하는 지원도 존재한다.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2013). “영세한 봉제업체 사장님 공동작업장서 봉제기계 사용하세요.” (2013.1.21.). <<https://economy.seoul.go.kr/archives/4701>>)

## (4) 연구진행 일정

연구 진행 일정은 <표 I-2>과 같다.

<표 I-3> 연구 진행 일정

연구진행내용	연구진행일정
설문지 설계	4.10. ~5. 4.
설문 조사원 교육	5. 6.~5.12.
설문조사 기간	5.11.~5.29.
심층면접(면담)조사	5.21.~6. 7.
추정조사	6. 3.~6. 5.

상술된 조사일정 이후, 6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조사 결과의 활용 등을 논의하였으며, 7월 16일 최종보고토론회를 진행했다. 당시, 토론 내용을 참고하여 본 연구보고서를 수정, 보완하였다.

## II. 선행연구 검토 및 서울시 봉제산업 현황

### 1.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국내 봉제노동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전문적 접근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으로써 진행된 2003년의 연구와 보건학 분야에서 제조업 종사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연구에서만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현 시점에서 10년 전에 추진된 것으로, 업데이트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봉제업에 대한 관심이 산업진흥 차원에 국한되어 있으며, 국내 봉제업 실정에 맞는 노동자 건강개선책과 관심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봉제노동자의 건강을 특정한 연구는 해외 연구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질환 관리 방향의 선례로 참고할 부분이다.

#### 1) 국내 연구

국내에서 추진된 봉제 산업 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봉제 산업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산업정책에 관한 조사와 영세사업장에 관한 연구,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산업연구에 속하는 정책보고서는 산업의 중흥을 위해 업계의 현황을 조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성노동자와 영세제조업체에 관한 연구는 봉제업이 지니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써, 봉제 산업 종사자가 직면하는 두 가지 문제- 열악한 환경과 건강상의 부담-를 포괄하고 있다.

#### (1) 산업정책연구

국내에서는 봉제 산업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독립적으로 다룬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봉제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논하는 산업 관련 보고서가 주를 이룬다(한국의류산업협회, 2013b; 산업연구원, 200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2). 산업자원통상부와 서울노동고용청의 한국노동연구원 산업현황을 개관하는 보고서는 업황과 봉제업의 발전방향을 고찰하기 위한 자료로써의 성격을 지닌다(한국의류산

업협회, 2013a; 2013b). 한국의류산업협회의 “국내 의류제조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2013)”과 “서울시 의류제조 집적지 실태조사(2013)”, 산업연구원의 “봉제 산업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에서는 각각 봉제 사업체와 종사자, 산업규모 등을 조사하고, 봉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봉제업체와 종사자 규모와 노동조건을 조사한 결과물은 봉제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한국 의류산업협회는 ‘실셈 조사’를 통해 정부 통계에서 드러나지 않은 업황을 파악하는 데에 기여했다.

의류 제조업의 국제적 재배치는 한국 의류 제조 산업이 위기 국면을 맞이하게 된 배경이다. 기존 산업연구에 따르면, 80년대 이후, 한국에서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로의 생산지 이동하며 봉제업계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으며, 90년대 동대문 중심의 봉제업의 일시적 성장이 있었다. 봉제업은 한정된 내수 시장에 주로 의존하여, 영세한 규모, 열악한 작업환경, 폐업, 이전 등 불안정성이 높은 분야로 남아있다.

인력난은 산업의 위기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과 작업환경 개선해야하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요인이기도 하며, 노동조건 열악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산업정책의 차원에서는 신규인력의 유입과 지속을 위해, 봉제업체의 시설 보수와 노동조건 개선에 위한 지원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 (2) 영세성과 여성노동 중심성

산업정책 연구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도 봉제산업의 경제적인 의미를 중시하고 있다. 봉제산업은 도시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자 도시 거주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한 축으로써의 경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같은 맥락에서 산업 활성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정현주, 2011). 국제적 산업 이동에도 불구하고, 국내 봉제산업은 도시형 제조업의 대표적인 부문으로 중요성을 갖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이러한 인식은 경제적·사회적 차원에서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봉제사업체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연장된다.

정현주(2011)는 봉제업을 비롯한 영세중소업체가 외부노동시장과 비공식부문으로써의 특색을 지닌다고 분석하고,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작업환경 열악성, 사회보험 미등록 문제가 수반됨을 지적한다. 봉제산업은 영세업체의 문제를 반영하

는 전형적 사례로 제시되며, 사업자 등록이 없는 봉제업체가 개선책과 지원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비공식부문에 남게 될 위험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봉제노동자의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의 열악함이란, 영세중소업체의 특성 상 수반되는 문제이자, 개선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된다.

한편, 봉제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자 전통적인 여성중심산업으로 분류된다. 최근 통계에서도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60%이상으로 집계되는 봉제업은 남성 중심 산업으로 여겨지는 자동차산업 및 조선업에 비해 여성중심적인 도시형 제조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장필화(1991)는 90년대 공장 자동화로 봉제산업이 탈숙련화 과정을 거치는 와중에, 여성노동자의 처우와 위상에 대해 고찰한다. 보건학과 의학적인 접근과는 거리가 있으나, 자동화 공정을 통제하는 남성 관리자와 다수의 여성노동자의 구도가 작업장에서 확산된다는 지적은 의미가 있다. 노동 강도와 고용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권익 보장을 주장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산업 및 직종의 특성에 초점을 다루는 연구는 건강위해요소를 진단하거나 질환의 심각성을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여성노동자의 건강에 관한 연구는 여성이 경험하는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을 포함한 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유의미한 변수를 찾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여성노동자의 작업성 질환과 관리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작업성질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건강행위, 작업환경, 작업 동작과 자세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동, 휴식, 수면, 음주 등 개인의 건강행위는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휴식과 피로에 관련된 요인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양자에 모두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지닌다(박경옥 외, 2004). 박수미와 한성현(2004)은 기혼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업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업무스트레스, 초과근무여부, 직무만족도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고, 고용형태와 임금체계는 전술한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혼여성노동자의 건강에 간접적 영향력을 지닌다. 이 연구는 기혼 여성노동자의 건강에 직업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 ‘건강의 계층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봉제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소

음, 분진, 온열, 조명 등이 있다(김남송, 이재형, 1993). 봉제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소음, 분진, 온열, 조명 등이 있다(김남송, 이재형, 1993). 이는 호흡기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청력과 시력의 저하와 연관된다. 김남송과 이재형(1993)은 작업환경 측정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장기근속자의 높은 증상 호소율에 초점을 두어 이들에게 적합한 예방 및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술한 연구들은 경력이 긴 중장년층 기혼여성 비율이 높은 봉제업의 특성상, 노동자의 건강실태에 대한 관심에 타당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성 노동자들의 일터 환경을 개선하거나 질환 예방 교육 장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이 궁극적으로 봉제노동자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간한 “여성근로자 보건관리지침개발”은 여성건강의 위해요소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 직무스트레스 등 유해 요인을 분석하고 보건관리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도 봉제산업 노동자 집단이 여성 중심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제시한다. 2차 년도와 3차 년도 보고서에서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작업성 질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직무와 질환 간의 연관성과 심각성을 객관화했으므로 봉제노동자의 상대적인 건강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여성노동자가 경험하는 근골격증상의 주된 요인은 불편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 반복 동작 등인데, 물리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에서의 작업장환경 요인은 섬유봉제업에서 가장 위해성이 높은 편으로 분석된다(산업보건안전연구원, 2003). 소음과 작업대에서의 정적인 자세는 근육의 피로를 높이고, 작업강도를 통제하는 권한이 낮은 환경은 여성노동자의 피로를 심화시키는 심리적 요소로 파악되고 있다.<sup>11)</sup>

여성근로자 보건관리 지침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봉제 노동자의 작업 자세는 요추에 하중이 크게 실리는 형태이므로, 인간공학적 접근에 바탕을 둔 작업대 및 작업 자세 개선이 필요하다. 적절한 휴식과 효율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시행도 질환 예방·관리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안된다.

11) 당시 평균 연령 40대인 섬유봉제업 종사 여성의 근골격계 증상은 양성자기준 1과 양성자 기준2에 따라 66.7%의 증상호소율을 보였고, 남성중심 산업의 근골격계 질환 만큼, 여성중심 제조업 현장에서 근골격계 증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하였다.

## 2) 해외 연구

봉제산업과 봉제노동자에 관한 해외 문헌들을 크게 (1) 봉제업과 관련한 건강문제와 작업환경에 관한 현황 보고, (2) 봉제노동자들의 건강문제와 관련한 요인 분석, (3) 봉제노동자들에 대한 인간공학적 중재의 효과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현황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같은 공식적 국제조직 외에도 비정규 노동을 주제로 활동하는 민간국제조직들에서도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 알리고 있다. 국제노동기구가 보다 의학적인 측면에서 봉제노동자들의 건강과 질병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면, 민간조직인 WIEGO(Women in Informal Employment: Globalizing and Organizing)는 세계적인 산업자본의 위계 차원에서 최하층에 위치한 봉제노동자들의 열악한 현황에 초점을 두며, Hesperian health guides<sup>12)</sup>은 특히 노동자들에게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어 서술하는 각 목은

### (1) 봉제노동자의 건강문제와 작업환경 현황

① ILO, Health Effects and Environmental Issues(Robin Herbert·Rebecca Plattus, 2011; Part XIV 재인용)

ILO에서는 봉제노동자들의 건강문제와 질병양상에 대해 다루면서, 봉제업 노동자들은 여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여러 위험에는 근골격계 질환, 직업적 천식, 접촉-자극 피부염, 눈·코·목의 자극증상, 폐·인후두·방광암, 그리고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등이 포함된다. 또한 봉제업 노동자들은 가열된 플라스틱 흄, 금속 먼지와 흄(특히 납), 가죽 먼지, 털 먼지와 유해한 용해제(e.g. 디메틸 포름아마이드) 등이 봉제 산업 과정 중에 발생하여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로 인한 질병 역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재봉틀의 모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 노출에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보고에 따르면 여성노동자의 생식능력과 의류생산 업무 간

12) 1970년대에 멕시코를 기점으로 시작된 조직으로,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그들의 건강과 노동을 더 잘 다루고 불건강해질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정보와 교육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1973년 첫 매뉴얼 발간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개정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있다. (Hesperian health guides, <<http://hesperian.org/>>)

에 부정적 연관성이 존재할 수 있음이 나타나기도 한다.

<표 II-1> 봉제노동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직업병의 예

상태	노출
근골격계 질환	
손목터널증후군, 상완 건초염, 드케르뱅 건초염, 위관절염, 이두근건염, 회전 근개 파열·건염, 삼두근 경련, 경추 신경근병증, 허리병증, 좌골신경통, 추간관 탈출증, 무릎 관절염	물리학 반복작업 들어올리기 비뚤어진 자세 지속적인 앉은 자세
천식	포름알데하이드 다른 섬유 처리물질 가열된 플라스틱 먼지
암	
방광암	염료
폐, 인후두암	포름알데하이드
청력 손실	소음
피부	
접촉성, 자극성 피부염	포름알데하이드, 섬유 염료
납 중독	납

우선 근골격계 질환이 봉제노동자에게 발생하기 쉽다. 단조롭고 반복적이며 빠른 속도로 작업하는 것이 특징인 봉제 산업은 노동자세가 중립적이지 않고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한 관절 자세에 노출되기 때문에, 봉제노동자들은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으며, 주요 발생위치는 목, 상지, 허리, 하지 등이다. (Anderson·Gaardboe, 1993, Schibye et al. 1995; Herbert·Plattus, 2011; Part XIV에서 재인용). 또한 손과 팔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노동으로 인해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과 더불어 종종 건초염, 신경압박 증상(e.g.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은 연조직 질환을 갖게 되는 일이 봉제노동자들에게 빈번하게 나타난다. (Punnett et al. 1985, Schibye et al. 1995; Herbert·Plattus, 2011; Part XIV에서 재인용).

ILO에 따르면 화학적 위해 역시 봉제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우선 포름알데히드가 합성수지 처리를 한 직물을 공정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직물 단면을 절단하는 작업이나 열을 내는 프레스 작업 때 남은 수지에

서 더 많이 나오게 된다. 직물의 양이 많은 작업장이나 창고, 소매장소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과량 발생한다. 봉제사업장 대다수가 환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온도 조절기능 역시 미흡하다. 온도 조절 기능이 떨어져 온도가 상승하면 가스가 더 활발히 나오고, 제대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름알데히드가 농축될 수 있다. 직업적 천식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바로 포름알데히드이며, 눈, 코, 목, 상하기도에 급성 자극 증세 역시 유발한다(Friedman-Jimenez 1994, Ng et al. 1994; Herbert·Plattus, 2011; Part X IV에서 재인용). 뿐만 아니라 폐와 인후두암을 유발의 원인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다수 나왔으며(Alderson 1986; Herbert·Plattus, 2011; Part X IV에서 재인용),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자극성 피부염 역시 그 원인이 포름알데히드에 의해 감작되는 것과 관련 있을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로 인한 피부염뿐만 아니라 그로인한 방광암 역시 발병가능성이 보고되었고, 금속 단추 생산이 납중독과 관련성이 있음도 보고되었다.

화학적 위해뿐만 아니라 물리적 위해 역시 봉제노동자가 마주치는 위협으로 작용한다. 그중에서도 자기장 노출이 주요 위험요소이다. 봉제기계를 작동시키면 높은 수준의 자기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최근 보고가 존재하며, 봉제노동자는 기계작동과 동시에 발생하는 자기장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은 알츠하이머 병의 발생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으며, 만약 노동자가 임신 중에 자기장에 노출된다면 태아에게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Sobel et al. 1995, Infante-Rivard et al. 1991; Herbert·Plattus, 2011; Part X IV에서 재인용).

## ② WIEGO<sup>13)</sup>

WIEGO에 따르면, 봉제산업은 가장 오래 된 수출산업 중 하나이다. 이 산업은 세계화된 제조업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저임금, “유연한” 고용계약과 열악한 환경에서의 노동착취 등의 특징을 가진 섬유·의복 산업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고통받아왔고, 종종 노동체계에서 고립되고, 노동문제에서 비가시적 위치

13) WIEGO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체, 연구자, 개발기구에서 일하는 활동가 등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로 빈곤한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 가시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단체이다. 이어 서술하는 내용은 다음의 WIEGO 홈페이지 내용을 발췌, 인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Women in Informal Employment: Globalizing and organizing, “Garment Workers,” available on-line at <<http://wiego.org/informal-economy/occupational-groups/garment-workers>>.

에 있으며, 권력이 없어 문제에 대처하지 못했다.

봉제 산업의 특성을 확인하기 전, 해당 산업의 전반적 흐름을 살펴보면, 의류 부문과 관련된 생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걸쳐 있고, 대체로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이 외주를 하는 방식으로 산업이 운영된다. 세계화와 함께 다국적 회사들이 증가하면서, 다국적 회사들은 적은 자본으로 활용 가능한 노동력을 찾아 국가의 경제를 넘나들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 유럽의 주변부(알바니아, 모로코, 터키)에서 공급받던 노동력의 값어치가 점차 증대되자 최근에는 미국의 주변국(멕시코, 중앙 아메리카)으로 그 범위가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과는 달리 작은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움직일 만한 유동성이 부족해 더 불안정한 상황에 경영을 이어가고, 더욱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결국 봉제 산업은 많은 나라에서 제조업 분야에서도 고용 인력이 많은 산업에 속하지만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거나 일감을 받아 작업한 양만큼 품삯을 받는 형태로 가정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통계에서도 가정근무 등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봉제 산업은 태국에서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산업이다. 또한 국가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봉제·의류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비노동 가내 기반 노동자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에서는 2005년 기준으로 약 95만 명의 가내노동자가 존재한다고 추정했고, 이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진국 역시 대다수의 봉제노동자들이 아시아 혹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주해온 여성인 경우가 많다.

상기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봉제 산업 종사자는 대다수 가내노동자이거나 하청계약직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노조를 조직하기가 어려워 근무조건과 관련한 권리를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임금 협상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대다수 계약주에 의해 임금이 정해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봉제 산업은 국제적 환경 변화 그리고 노동자 특성으로 인해 그 근무환경이 대체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들 대다수는 비정기적인 노동을 이행하고 있다. 봉제 부문에서 계약은 “유연한” 생산에 의존하고 불확실한 근무를 조장한다. 이는 근무가 불확실한 와중에도 일감이 몰려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큰 소매업체는 낮은 비용을 생산하면서 시간에 맞춰 물건을 전달해줄기를 요구하고, 제조업체는 이러한 요구에 맞춰 큰 소매업자로부터 주문을 따내기 위해 낮은 가격에 입찰을 한다(McCormick·Schmitz 2001). 그리고 제조업자들은 입찰한 낮은 가격에 맞추기 위

해 장소를 옮기면서 필요한 때에만 적절한 공급자 혹은 하청계약자들을 구하고 일을 주문하여 재무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이에 따라 공급자 혹은 하청업체 역시 낮은 가격으로 제조업의 계약을 따내고, 가격에 맞춰 가내노동자를 고용해 품삯에 따라 낮은 임금을 제공한다. 계약시의 낮은 가격을 맞추기 위해 임금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고리의 악순환으로 인해 봉제 산업에서는 유연한 생산과 비정기적 노동이 만연하게 되는 것이다.

봉제 산업 노동자들은 비단 유연한 계약과 비정기적 노동만이 아니라 노동과 관련한 건강과 안전 문제에서도 고통을 받는다. 가내노동자들은 가정에서 노동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출근하는 노동자보다 적절한 보호 장비와 안전지침을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게다가 봉제 산업 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신체적 부담을 겪고, 옷감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염료 혹은 유독 화학물질에 노출 되는 등 여러 건강 위험에 노출된다(Laungaramsri 2005). IEMS(WIEGO, 2014; Joann Vanek·Martha A. Chen·Govindan Raveendran, 2012)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해당 연구에 참여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봉제 노동자들은 요통과 눈의 혹사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 ③Worker's Guide to Health and Safety (Todd Jailer·Miriam Lara-Meloy·Maggie Robbins, 2015)

제일러, 멜로이, 로빈스(Jailer, Meloy, Robbins)가 저술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가이드북에서는 봉제 노동자들은 봉제 작업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낮은 임금과 생산 가속을 위한 빠른 작업, 안전성이 떨어지는 노동조건, 노조의 부족 등으로 인해 더욱 위험에 노출되고 고통 받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 문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봉제노동자들은 옷감에서 발생하는 여러 화학물질과 염료로 인해 피부와 호흡기에 자극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자극을 방지하려면 손을 자주 씻어 청결을 유지하는 동시에 로션과 핸드크림을 사용하여 손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또한 긴 소매의 옷을 입고 마스크 등의 적절한 보호 장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옷감에서 나오는 먼지로 인해 천식 등 호흡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소 환기시설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 후에는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유지해야 한다. 먼지는 국소 환기시설을 가동하고 정기적으로 치워주어야 한다. 옷감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발진이나 호흡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고용주에게 증상과 원인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며, 원인이 되는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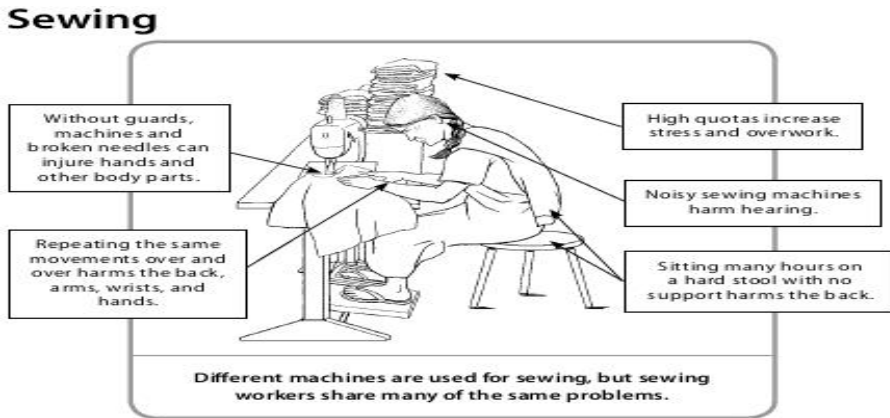
인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주에게 이런 주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 본인이 다루는 화학물질에 대해 이해하고 안전하게 다루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안전을 위화 보호 장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계와 환기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봉제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과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제시된다. 첫째, 좋은 환기시설과 올바른 보호장구가 갖춰져야 한다. 둘째, 화재 비상구, 스프링클러와 소화기를 포함한 화재 예방 시설을 준비하고 재난 발생 시 비상 대피 계획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셋째, 노조를 조직하고 나아가 건강 및 안전 위원회를 조직할 자유를 노동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넷째, 건강과 안전에 대한 노동자 관리 훈련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안전을 위한 장비를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법이 요구하는 사회보험급여를 포함한 정당한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을 달성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공장에서 쉽지 않은 일이고 여러 곳에서 봉제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봉제 노동자들의 대우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여타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이 함께 연결되어 조직할 필요가 있고, 국제적인 연합을 도모하여 정부의 협약을 끌어내야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봉제 노동자들은 봉제 업무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근무 형태는 다양하지만 비슷한 문제들을 공유하며 건강 문제 역시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림 II-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봉제 노동자가 유사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근육을 사용하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II-1] 봉제 노동자(재봉사)의 건강 문제 (Jailer et al, 2015)



먼저, 기계로 인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작은 문제로는 기계에서 튀어나온 바늘로 손가락 혹은 손을 찔릴 수 있다. 또한 바늘이 부러지는 경우, 부러지면서 눈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리고 기계가 움직이는 중에, 부품 들 사이로 머리카락이 말려 들어갈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봉제기계에 보호 장치들을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노동으로 인한 신체적 혹사가 존재하며,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봉제기계를 돌리는 노동자들은 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육 혹은 관절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복작업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업무 중간 중간 휴식시간을 가지며, 작업을 교대하고 스트레칭과 근육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작업대 자세를 개선하여 노동자의 신체를 지지하도록 바꾸고, 기계를 돌리는 과정에서 적은 힘으로 운용 가능하도록 발전시킬 수 있다.

세 번째로 소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봉제 기계와 리벳 기계는 매우 시끄러운 소리를 발생시킨다. 봉제 작업장의 경우, 여러 대의 기계들이 동시에 작동되는데, 이 경우 기계로 인한 소음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동시다발적 소음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청력에 손상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소음 수준을 측정하고,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청력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명 역시 노동자가 작업하는 중에 눈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좋은 조명을 사용한다면, 노동자가 눈을 혹사하지 않으면서도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불충분한 조명은 시야를 방해하여 눈을 찡그려 보게 하고 노동자가 작업물에 점차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조명을 보강해야하며, 작업 중간에 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며 긴장을 풀어주는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재의 위험이 존재한다. 기계사용을 위한 전기배선이 잘못된 경우, 화학물질의 지속적 발생, 과다한 먼지, 작업장 내에서의 흡연 등 봉제 산업 현장에는 화재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봉제 작업장은 옷감 등이 많아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그러므로 스프링클러나 재난 시 활용할 비상구 등을 제대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상술한 내용과 같이 노동자를 위한 지침서에서는 봉제노동자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건강상의 문제와 이를 야기할 수 있는 작업환경에 대한 경고와 개선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공되고 있다. 이는 체계화된 지침을 일상적인 작업공간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함을 드러내는 내용이기도 하다.

## (2) 봉제노동자의 건강문제와 관련한 요인

봉제노동자의 건강문제를 다루는 연구의 대부분은 아무래도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영향요인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 영향요인은 크게 개인적 특성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작업환경 특성인 작업요인으로 분류된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하나는 노동자들의 나이이다. 나이의 경우, 특이하게도 Wang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30세 미만이 더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Westgaard et al(1992)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근골격계 문제가 더 많았다. 두 연구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조사한 지역의 노동환경이나 노동자 특성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는 나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Wang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나이라는 요인 외에도 여성, 히스패닉, 미혼, 진단받은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봉제공으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근골격 질환 유병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Westgaard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나이 외에 이전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경우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근골격계 문제가 많음을 보고하였다. Kebede Deyyas(2014)의 연구에서는 16년 이상 일한 경우, 신체활동을 평소에 많이 하지 않는 경우에 각각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5배 정도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작업환경 특성으로는 한 가지 봉제기계를 써온 경우, 큰 가게에서 일하는 경우, 노동-휴식 비율이 높은 경우, 신체적 부담이 큰 작업을 할 경우, 비슷한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 작업 요구량이 큰 경우, 직업 만족도가 낮은 경우(Wang et al, 2007)가 근골격계 유병률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Wang et al(2005)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폼샷 방식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나이, 성별, 인종을 보정하고도 목, 어깨, 등, 엉덩이, 상지, 하지의 근골격계 질환 호소율이 2-3배 더 높았고, 단조로운 반복 작업을 하는 경우 등과 엉덩이 통증이 2-3배 더 심했다. 또한 결정권이 낮은 경우에도 상지 통증을 3배 정도 더 호소하였고, 신체적 요구량이 많은 일을 하는 경우 상지 통증 호소율이 2배 높았다고 밝혔다(Wang et al, 2005). 또한 Kebede Deyyas (2014)의 보고에서 나타나듯이 폼샷 방식(객공)으로 일하는 경우가 시간당 봉급을 받는 경우보다 근골격계 문제를 호소할 확률이 약 두 배 정도로 높다. 즉, 폼샷 방식이 노동자에게 신체적 부담을 더 많이 주는 방식임을 의미한다.

### (3) 봉제노동자들에 대한 인간공학적 중재의 효과

봉제노동자들은 오래 앉아서 단조로운 작업을 하며 좋지 않은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호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주로 이들에 대한 중재로 인간공학적 방법을 도입한 작업환경 개선을 시도한 연구들이 일부 있다(Herbert et al, 2001; Rempel et al, 2007). 해당 연구는 자세에 맞게 조정 가능한 의자, 높이 조절이 되는 곡선형 의자를 썼을 때 도입 전과 후, 그리고 도입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근골격계 통증의 완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의자나 보호대와 같은 노동의 물리적 조건이 아닌 노동시간, 보상방식 등의 구조적 조건을 변화시킨 중재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는 국내와 에서 다른 맥락에서 수행되었다. 국내에서는 봉제산업과 노동시장의 특성 분석, 여성 중심 노동 부문에서의 건강관리에 대한 조사가 주로 이루어졌다. 해외 연구에서는 봉제노동자의 작업 과정, 업무 환경, 질환, 건강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직업질환을 유발하는 의학적인 소견과 인간공학적인 개선방식 등 전문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 차원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효과 전망은 상대적으로 국내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 2. 봉제 산업 현황

### 1) 현황

본 연구는 봉제 노동자의 작업 환경과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건강에의 위협이 존재하는 배경으로 '산업'으로서의 봉제업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지만, 봉제업체 사업자와 노동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산업적 배경에 그 원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봉제 산업의 특성은 업계 전체를 구속하는 구조적인 한계이자, 모든 종사자의 생활양식을 규정하는 배경인 동시에 생계를 맡길 수 있는 일종의 '생태계'이기도 하다. 즉, 봉제산업의 특성과 사업체가 처한 상황은 봉제노동자의 건강안전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봉제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에서 인력난은 두드러지는 문제로, 열악한 작업환경과 높은 업무 강도는 인력 수급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작업환경과 업무강도의 압박은 국제적 산업 구조에서의 봉제산업의 위치나 내수시장의 형태의 영향을 받는 주요 문제이기도 하다.

이 절에서는 봉제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성을 검토한다. 기존 자료를 통해 봉제업의 규모와 사업체 분포를 확인하고, 대표성을 띠는 집적지를 실태조사의 대상으로 설정할 것이다.

본 연구 과제를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는 봉제산업의 개황과 특성을 밝히는 데에도 사용되겠지만, 한정된 범주의 실태조사로 전체 현황을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 따로 다루도록 한다. 본 절에서는 공신성이 높은 조사 자료를 주된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이며, 활용할 자료는 2013년 한국의류산업협회에서 발간된 봉제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통계와 201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2014년 기준 지역별고용조사의 통계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산업 규모와 경향을 제시할 것이다.

#### (1) 산업 규모: 사업체 및 종사자

지역별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기준 전국 의복제조업 종사자수

는 26만 5천명이며, 남성은 9만4천명, 여성은 17만 명으로 여성비율이 60%를 상회한다. 그 중, 의류봉제업 종사자는 22만 6천명(남성 7만9천명, 여성 14만8천명)이며, 서울의 의복제조업 산업 종사자는 15만2천명으로 전체 봉제 산업 취업자의 57.3%에 이른다.<sup>14)</sup>

〈표 II-2〉 의복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천명)

		남성	여성	전체
전국	제조업	3,062	1,299	4,361
	의류제조업	94	170	265
	의류봉제업	79	148	226
서울 의류제조업		성별에 따른 취업자 수 자료 없음		152

출처: 지역별고용조사 2014 하반기; 통계청(KOSIS)

〈표 II-3〉 서울시 봉제업체와 종사자

(단위: 개, 명)

		업체 수	종사자 수
제조업 전체		58,551	272,972
의복제조업		13,962	90,017
	봉제의복 제조업	11,518	76,698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3	1,524
	편조의복 제조업	1,043	6,446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168	5,349

출처: 전국사업체조사 2013, 통계청(KOSIS)

2013년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의류봉제업체는 11,518개, 종사자는 76,698명으로 집계된다. 이는 서울 제조업 전체 업체의 약 23.8%, 전체 종사자의 약 32.9%에 달한다. 봉제업의 규모는 서울시의 다른 주요 제조업과 비교함으로써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4대 도시형 제조업 중 하나인 인쇄업은 사업체 7,997개, 종사자 27,913명으로, 서울 제조업체 전체의 약 13.6%, 제조업종사자 전체의 약

14) 의복제조업은 산업분류 상 C14 코드에 해당된다. 의류봉제업은 의복제조업의 속하는 하위분류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 지역 자료는 의류제조업 취업자만 공개되어 있으며, 성별에 따른 취업자 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10.2%를 차지한다. 의류봉제업 종사자는 인쇄업 종사자의 3배 정도로, 봉제 산업이 서울시의 경제적 기반이자 시민 다수의 생계수단으로써 중요한 위상을 지닐 수 있다.

조사별 상세 수치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조사 대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업종 분류상 문제<sup>15)</sup>, 사업체의 영세성, 폐업과 이전이 잦은 업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봉제산업의 위축과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개별 사업체가 장기적 운영이 어려워지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사업자 미등록 비율도 높게 추정되기 때문에, 개폐업 현황과 실질 운영 업체의 파악이 어려운 편이다.

2013년 한국의류산업협회의 전국의류제조 집적지 실태조사는 ‘실شم조사’로써 실상과 통계치 간극을 줄이고, 종사 인력과 사업체의 실질 규모를 가늠하는 데에 적합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의류산업협회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업체 3,724개를 집계하였고, 6.5%의 폐업률을 제시하면서도 폐업여부와 이전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한국의류산업협회, 2013b).<sup>16)</sup>

사업자 등록률 저조와 높은 개·폐업 빈도는 봉제산업 노동자와 사업체가 직면하는 고용 및 기업운영의 불안정성을 방증한다. 더불어 정확한 봉제 산업의 규모 측정이 어려운 한편, 서울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제조업 중 봉제업의 실질 비중이 계측치보다 더 높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서울은 전국 의류제조 집적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역으로, 중랑구, 성북구, 중구, 동대문구, 종로구 5개구에 사업체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sup>17)</sup> 5개구에 분포하는 사업체는 2011년 통계청 사업체조사 기준 서울시 봉제업체의 56.2%에 이

15) 조사 성격상, 지역별고용조사와 전국 사업체 조사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별고용조사의 경우, 의복제조업은 C14 코드로 분류되지만, 하위 분류에 따르면, 봉제 의복 제조업은 C141코드로 분류되고,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142), 편조의복 제조업(143), 액세서리 제조업(144)도 의복제조업의 하위분류에 속한다. 이들을 모두 포함한 서울의 의류제조업 종사자는 87,017명(2013기준, 전국사업체조사)에 이른다.

16) 이러한 특징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업주와의 면담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우리의 정의는 쉬워요. 100개를 처리잖아요. 10년 이내에 90개는 망해요. 10개는 남아요. 3개는 돈을 벌어요. 나머지는 버티는 거죠. 90개가 문을 닫으면 또 70개는 또 해요. 할 게 없잖아요. 뭘 해요.”(I, 사업주)  
 “거의 70%정도..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이 없어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어. 그런데 밀바탕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C, 사업주)

17) 봉제산업의 지역별 분포와 집적지역의 실태는 기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파악하였다. 서울 봉제업계의 전체 규모와 산업의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실시된 현장 실측조사 결과물인 “서울시 의류제조 집적지 실태분석 보고서”의 실شم결과를 참조했다.(산업연구원, 2005)

른다. 통계 조사에서 누락된 업체 현황을 고려하면, 5개 구의 비중은 조금 더 늘어 서울시 봉제업체의 60.1%를 차지한다.

〈표 II-4〉 서울 봉제업 집적지 5개구 사업체 현황(2013)

	사업체(통계치)	사업체(실체치)	비율(통계치/실체치)
종로구	911	1,640	9.4% /15.4%
중랑구	1,427	1,362	14.7% /12.8%
성북구	1,162	1,270	11.9% /11.9%
중구	986	1,211	10.1% /11.3%
동대문구	977	940	10.0% /8.8%
소계	5463	6,423	56.2% /60.1%
서울 전체	9,728	10,676	100% /100%

출처: 서울시 의류제조 집적지 실태분석 보고서 실شم조사(2013)

봉제산업의 집적지역으로써 종로구, 중랑구, 성북구, 중구, 동대문구 5개구의 종사자는 55%에 이른다. 봉제업 집적지역 5개 구에는 각각 중심지가 존재하며, 이는 종로구 창신동(54.2%)과 송인동, 중랑구 면목동(55% 밀집), 성북구 장위동(39.6% 밀집), 중구 신당동(73%), 동대문구 장안동(57.2%)이다(한국의류산업협회, 2013b). 이 지역의 업체의 운영 상황은 서울 봉제업체의 일반적인 특성과 상통한다.

구별 특징으로는 생산 품목의 상이성과 유통 경로의 차이가 있는데, 이어 서술하는 지역별 특성은 한국의류산업협회에서 발간한 서울시 의류제조 집적지 실태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중랑구는 캐주얼 웨어 중 니트 생산과 유아동복, 레저스포츠웨어 등의 최대생산지이다. 성북구의 최대 생산품은 니트이며, 장위동을 중심으로 월곡동 등 인접지역에 업체가 분포되어있다. 종로구는 영세성, 객공과 동대문시장 상권이라는 특수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지역이다. 중구도 동대문시장과 남대문 시장 상권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니며, 정장 생산 비중이 높다. 동대문구는 장안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산품목을 두루 생산하는 지역이다.

각 집적지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위 5개구는 공통적인 특성을 지닌다. 대기업, 내셔널브랜드 업체와 연계된 생산시설이 입지한 소수의 서남부지역 봉제업체(이상욱·김경민, 2014)에 비해, 5개구에 입지한 업체의 전형적인 특성은 규모의 영세성,

높은 수준의 사업장 임차 비율, 저조한 사업자 등록률이다.

## ② 사업체 형태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서울 봉제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5개 집적지의 실태에 봉제산업의 대표성이 반영될 것으로 가정했다. 봉제 산업에 대한 연구조사에서 드러난 전반적인 문제점은 5개구의 전형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5개 구를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5개구가 대표하는 특성 중, 사업체의 형태는 ‘소공인’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제조업 전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5대 집적지의 봉제업체는 대체로 소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라는 특수성을 보인다. 봉제업체의 영세성은 사업체의 형태를 통해 검증되는 사항인 동시에, 이어 서술할 2항 산업의 특성에서 강조할만한 지점이기도 하다. ‘다수의 작은 사업체’는 개황의 의미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봉제업체의 노동환경을 제약하는 주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봉제 사업체의 영세성은 아래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 의복제조업체 중 13,585업체, 봉제업체 중 11,196 대다수는 단독업체의 형태로 존재한다. 단독업체, 즉 단독사업체는 1기업 1사업체를 의미하는 말로, 별도의 본사, 공장, 본점,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이다.<sup>18)</sup> 의복제조업 분류(C14)에 속하는 사업체 중에서는 13,585개의 단독업체에서 66,3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의복제조업 전체 종사자의 70%이상(약 73%)과 전체 사업체의 97%에 해당한다. 단순계산에 의하면 1업체당 4.89명이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복제조업의 하위분류 중 하나인 봉제의복 제조업으로 국한하여 볼 경우에도, 11,196개의 단독업체에서 55,556명이 근무하고 있고, 단순계산을 통해 1업체 당 종사자가 4.96명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8) 통계청. (2013).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조사표.” <[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ZTITLE&listid=K22](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ZTITLE&listid=K22)>

〈표 II-5〉 서울시 봉제업 사업체 형태

(단위: 개, 명)

	단독업체	종사자	본사,본점	종사자	공장,지사	종사자
제조업 전체	56,730	218,172	1,121	42,295	700	12,505
의복제조업	13,585	66,354	291	20,670	86	2,993
봉제의복 제조업	11,196	55,556	248	18,416	74	2,726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23	994	10	530	0	0
편조의복 제조업	1,028	5,533	12	874	3	39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138	4,271	21	850	9	228

출처: 전국사업체조사 2013, 통계청(KOSIS)

수출 감소 등 판로가 한정되고 시장의 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영세한 업체 다수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봉제사업체는 운영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고, 영세업체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제의 마련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 2) 산업적 특성

현재 봉제업의 산업적 특성은 산업화 초기와 고도성장기의 봉제산업의 성격과 차이를 보인다. 봉제 산업의 쇠퇴는 향후 사양 산업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sup>19)</sup>

### (1) 공간재정립에 따른 산업 쇠퇴 (생산기지 재배치)

의류 봉제 제조업은 세계경제체계의 흐름에 따라, 생산비용이 저렴한 해외지역으로 재배치되어왔다. 봉제산업은 1970년대~8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주력산업이었다. 생산기지의 이동은 선진국에서 저임금과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호기

19) 사업주 노동자 인터뷰 녹취록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드러나는데, 봉제산업의 중흥을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사양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제 정립이 미비한 제3세계 국가로 이루어져왔다(피터 커스터스, 2015). 의류 생산지는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적 여건에 따라 ‘이동과 재이동’의 반복으로 변동을 경험했다. 한국 봉제업의 성장과 쇠퇴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 한국으로 의류봉제업이 국제적 이동을 할 당시, 국내 봉제업 노동자의 저임금은 봉제산업의 생산기지로써의 성장 배경이 되었다. 수출 중심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하던 봉제산업은, 이후 국제적인 차원의 산업이동과 국내적 중공업의 비중이 급증이 맞물리면서 경쟁력과 규모가 점차 줄어들어 왔다. 특히 90년대 이후 중국과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이 세계의류산업의 ‘하청업자’가 되어 의류봉제업의 생산기지 재이동이 명백해지며 한국 봉제산업은 위축 국면에 들어섰다. 저임금을 통한 가격우위를 경쟁력으로 지니는 중국, 방글라데시로의 생산지 이동은 한국 의류봉제산업이 생산단가 경쟁에서 우위를 잃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오트 쿠티르’(haute couture) 중심의 하이패션, 뉴욕 가먼트 디스트릭트에 거점을 둔 ‘하이 퀄리티’(high quality) 브랜드 생산 등과 같은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는 한, 봉제산업의 중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서울디자인재단을 비롯해, 의류봉제산업과 관련된 협회, 협동조합은 봉제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추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의 노력은, 현재 봉제산업 종사자의 일의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대책으로써 고부가가치화와 새로운 판로 개척 등이 논의 되는 배경에는 제 3세계 내에서의 재이동으로 인한 변화가 있는 것이다. 국제적 생산기지 재배치는 현재 ‘세계의 공장’역할을 맡고 있는 아시아 지역 봉제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지속시키는 한편, 국내 봉제업계의 종사자의 주변적 지위도 강화하였다.

해외 수출 비중이 급감하며 국내 업계는 좁은 내수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유지되고 있다. 봉제산업 규모가 축소와 수출 비중 감소는 함께 진행되었다. 동시에 브랜드 보유율이 낮은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면서, 영세한 다수의 봉제업체는 낮은 공임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었다.

## (2) 가치사슬 속 약자 : 한정된 판로

봉제업체를 비롯한 의류생산의 주체는 국제적인 차원과 국내적인 차원의 가치사슬에서 제조를 담당해왔다. 국제적 가치사슬은 제 3세계 지역의 생산과 선진국의 소비로 이어지는 형태이며, 국내의 가치사슬은 생산과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내수

상권의 형태로 나타난다.

내수상권에 편중된 생산·판매 방식은, 봉제업체는 생산물량의 변동성과 노동강도의 심화를 야기한다. 동구권 및 서구로의 수출이 활발했던 80년대까지와 달리, 현재 봉제업체의 일감은 내수시장에 70%이상 의존하고 있다. 한정된 판로에서 봉제업 종사자는 급박한 납기와 낮은 공임에 맞추어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 봉제업의 부가가치는, 수출을 위한 생산이 다수를 차지할 때와 비교하여 개선되지 않았다. 물가의 변동을 고려하면, 오히려 가치가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유럽의회는 아시아의 의류제조업 현장의 열악성을 검토하는 리포트에서 유럽 수출 비중은 다른 아시아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sup>20)</sup> EU27의 봉제제품 수입 비중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0.05%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6〉 서울 봉제 집적지 5개구 제조업체 판로

단위 (%)

구분	직접내수 판매 (브랜드)	직접수출 (브랜드)	자기판매 (노브랜드)	주문-직접납품 (노브랜드)	프로모션 업체	수출밴더 (에이전트 업체)	기타
종로구	3.1	0.2	1.8	89.8	2.9	1.0	1.2
중랑구	9.9	0.0	1.7	68.6	18.7	1.3	0.0
성북구	1.6	0.0	1.4	94.9	1.8	0.4	0.0
중구	10.6	0.3	0.7	86.1	1.7	0.3	0.3
동대문구	5.8	1.4	2.4	84.9	3.4	1.7	0.3

출처: 서울시 의류제조 집적지 실태분석 보고서, 한국의류산업협회 p.14

낮은 수출비중과 서울의 제조업체 판로를 검토해보면, 대체로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낮은 공임과 패션의류사업의 가치사슬 내에서 약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집적지인 종로구, 성북구, 중구, 동대문구에서 주문-직접 납품(노브랜드) 판로의 비중은 모두 80%이상이었고, 중랑구에서는 68.6%에 이르렀다. 이러한 한정된 판로 때문에 봉제업체와 봉제업 종사자는 수주과정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이기 쉬우며, 주문에 맞춘 생산을 위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이라는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가치사슬 내

20) European Parliament Briefing “Workers’ conditions in the textile and clothing sector: just an Asian affair? Issues at stake after the Rana Plaza Tragedy”(Aug. 20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 약자인 봉제업체의 위상은, 봉제업체가 영세성과 불안정한 경영상 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봉제업 종사자들이 비공식부문-영세업체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노동환경 및 건강상의 어려움과 직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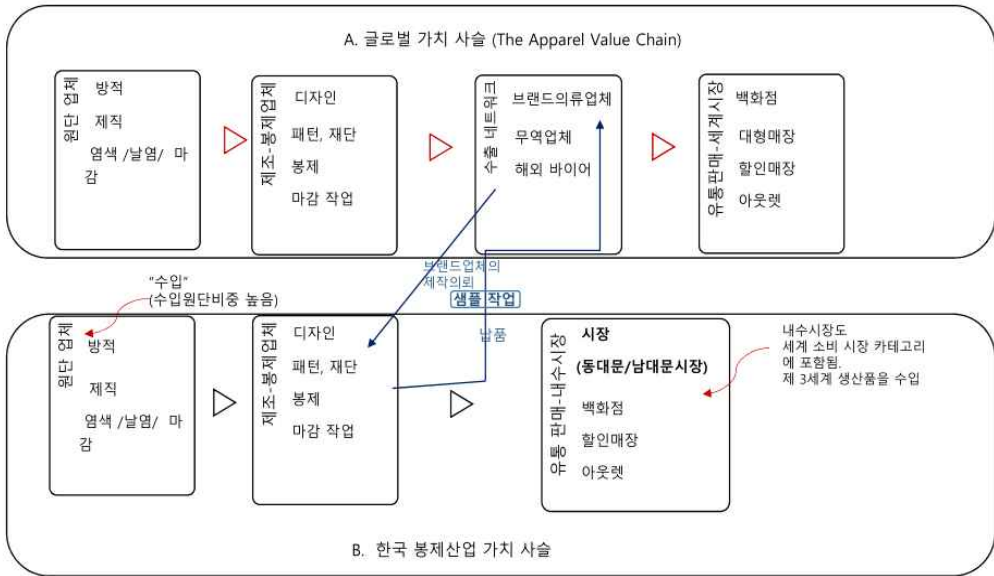
의류산업의 가치사슬을 살펴보면, 원단가공부터 유통까지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진다. 섬유를 원단으로 가공하는 단계, 의류 제조(디자인, 재단, 봉제 등) 단계, 유통 단계로 나누어지고, 각 지점마다 수입, 수출, 계약 관계가 얽혀 있다. 의류산업은 제3세계에서의 1차, 2차 공정을 거쳐 세계시장으로 유통되는 형태로, 글로벌 분업의 형태가 비교적 명확한 분야이다.

90년대 이전 한국의 봉제업체가 주요 의류봉제 생산기지로서 상품 사슬의 도식에 위치했다면, 현재는 국내 내수 중심의 상품-가치사슬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내수 시장의 브랜드와 시장 상권의 주문에 따른 생산, 납품을 중심으로 각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브랜드와 직결된 생산 공장도 존재하지만, 다수의 영세업체는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권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품을 납품한다. 혹은, 글로벌 생산기지를 보유한 중·대규모 브랜드 상품의 샘플 의뢰를 받아 샘플을 제조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샘플은 대체로 해외 생산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어 국내 시장이나 해외 시장으로 유통되곤 한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도식화한 것이 아래의 그림 [II-2]이다. Martin (2013)은 Gereffi와 Memedovic(2003)의 가치사슬 모형을 참고해 의류산업의 가치사슬을 도식화했다. 아래의 그림은 해당 도식의 국제적인 생산-판매 루트를 국내 의류봉제산업이 ‘국내’ 및 ‘해외’ 시장과 생산과정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것이다.<sup>21)</sup>

21) 이는 서울 봉제업체가 내수 중심 생산·유통구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간혹 해외 수출을 위한 샘플작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힌 인터뷰 내용 바탕으로 도식을 간략화 한 것이다. 이러한 가치사슬의 구조는 사업주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구성 시 반영하였다. 일반적 구조를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수입, 수출 형태의 다각성, 세계 패션의류 시장 구조의 복잡성을 세세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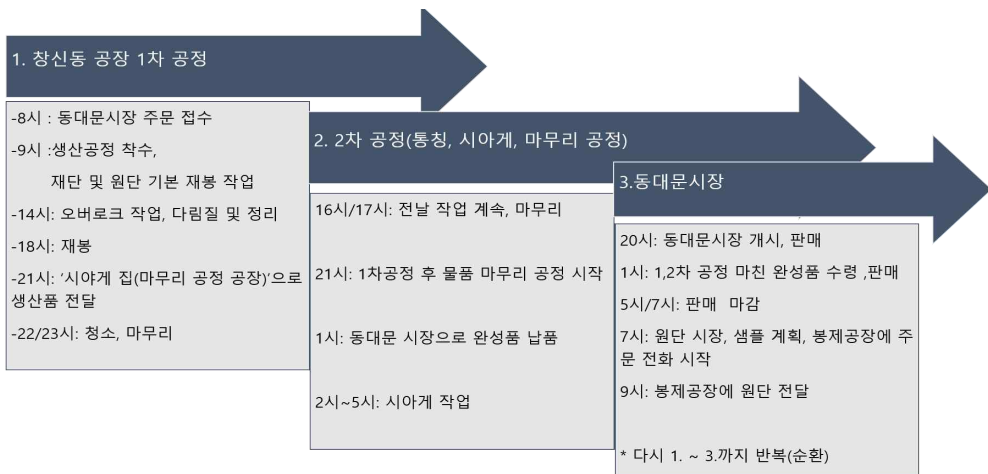
[그림 II-2] 봉제산업 가치 사슬과 한국 봉제산업 판로



출처: 의류산업 글로벌상품사슬(Martin, 2013; Gereffi and Memedovic, 2003)을 재구성

위 그림 II-2의 B. 한국 봉제산업 가치사슬을 살펴보면, 신속하고 압축적인 생산과 주문 과정이 드러난다. 이는 아래 그림 II-3의 생산-판매 네트워크에 드러나는 시장상권의 상징적인 유통구조(당일 주문-당일 출고 시스템)이다.

[그림 II-3] 창신동 봉제공장 생산-판매 네트워크(장미진, 양승우, 2015)



시장상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봉제업체의 ‘당일출고’는 1일 24시간을 단위로 주문과 1,2차 공정, 판매가 연쇄·중첩되며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창신동’의 사례는 전형적이고 상징적인 봉제업 생태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주문에 알맞은 생산공정을 1일 내에 마무리하여, 시장상권 중심의 제조 사이클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통주체 중심’의 경쟁적 산업 구조는 봉제업체에의 업무 부담의 심화를 야기한다. 더불어 봉제업 종사자의 휴일, 임금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기도 하다.

### (3) 봉제산업의 위기: 일감부족과 인력난

봉제산업 종사자가 인식하는 가장 큰 위기는 꾸준한 일감부족과 인력난이다. 일감부족은 지속성이 담보된 수주와 판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 즉, 내수 중심의 유통구조에서 비롯된다. 해외 수출 비중이 급감함에 따라, 봉제업계 종사자는 국내 시장에 의존하여 정기적이지 않은 주문에 맞추어 생산을 해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의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임금보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이는 영세한 각 업체가 운영난을 겪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은 신규인력의 유입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강화하는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인력난은, ‘신규 인력’의 유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발생하는 문제로, 산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인력’의 문제는 기술자의 양성이라는 장기적 목적을 위해서 중요한 동시에, 봉제산업 노동자의 위상의 현주소와 전망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제조공정의 진행을 결정짓는 인력 문제로 이주노동자 고용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도 발견된다.

“어떻게 해주려고 해서 해줄 수도 없는 게 그러면 별로 도움이 되는게..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 내가 봐도 사람을 주는 게 더 좋거든요.”(F, 사업주)

한국의류산업협회(2013a)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봉제산업 집적지인 서울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력수급문제와 일감 부족, 열악한 작업환경 문제 등이다.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지원, 작업환경 개선 지원, 의류봉제산업지원센터 설치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대안이다. 서울시의 클린작업장 지원과 서울디자인재

단의 사업인 의류봉제 아카데미는 환경개선과 기술 인력 교육이라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관하여 의문을 개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미치는 범주와 효과를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장에서는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작업환경이나 노동시간, 수입(낮은 공임) 등 여러 조건에서, 봉제업이 타 산업분야에 비해 어렵고 힘든 직종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근골격계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등 건강문제는 종사자 자신이 경험하는 ‘불편’이자 신규인력이 취업을 ‘기피’하는 원인이라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 봉제산업 종사자는 장시간 노동과 휴식의 부족을 신규 인력의 취업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젊은 애들은 노동시간이 가장 크고. 노동시간을 하루에 시스템적으로 주 40시간은 솔직히 우리는 곤란하고 하다못해 격주라도 토요일만 쉴 수 있는 시스템만 되더라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B, 사업주)

인력문제, 한정된 판로와 일감 부족으로 사업체의 경영 지속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현 상황은, 국내 봉제산업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의류산업협회의 실شم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는 국내 제조업에서 봉제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제 진흥 정책으로써의 봉제산업 육성·지원<sup>22)</sup>은 도시형 제조업으로써 봉제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봉제 노동자의 건강, 휴식, 생활이란, 서울시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하는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 BOX. 이주노동자 고용 요구와 검토에 앞서서

이주노동자 불법 고용 단속이 강화되며, 봉제업계의 이주노동자 비율은 현저히 줄었다. 그러나 수년 간 인력난 해결을 위한 이주노동자 고용에 대한 요구가 커져온 것도 사실이다.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인건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고용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고용에 대한 요구는 봉제업계에서도 존재한다. 특히 세계 의류제조시장에서 인건비에서의 상대적 열위가 산업의 위기와 직결된다고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고용의 합법화와 이들에 대한 처우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22) 서울시에서는 4대 제조업(봉제, 인쇄, 귀금속, 기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봉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봉제산업의 점차적인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기술인력의 고령화와 산업규모 축소 등의 문제도 완화시킬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장에 즉시 수급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고용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인다. 시급하고 증대한 사안으로 여겨지는 만큼 이주노동자의 고용 형태와 처우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주노동은 여러 번 제도를 변경하면서 지금은 고용허가제로 안착되어 있다. 정부는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내년에 필요한 이주노동 분야 인력을 결정한다. 2015년에는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하는 외국 인력을 고려해서 55,000명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고용허가제를 알고 있는 사업주들도 이주노동자 고용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신청서류가 만만치 않아 곤혹스러운 형편이다.

영세한 봉제산업 대부분 사업주들은 (미등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행정 처리는 불가능) 미등록 노동자를 선호하게 되고, 불법적인 고용이라도 원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 대대적인 단속 이전에는 법망 밖의 이주노동자 고용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영세사업주들은 상당한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는 이주노동자 고용이 위축된 편이다. 사업주들은 '합법적인 고용'이 용이하도록 규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북한이탈주민(한국국적자가 되었음에도 취업시장에서는 주변적 위치에 있다고 평가된다.) 와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을 봉제업 인력수급 지원의 맥락에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서 주로 다룰 국내 봉제 노동자가 경험하는 건강문제와 안전문제는 무리한 작업, 작업부담을 높이는 산업 구조적인 측면의 영향 하에서 심화된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신규인력의 유입이 저조한 편이며, 노동자의 삶의 질과 봉제 산업의 성장 역량 모두가 '주변적 위치'에 놓여있는 형편이다. 인력난 해결의 방향에는, '값싼 노동력의 확보'라는 단순하고 단기적인 방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현재 봉제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이후 유입이 기대되는 신규노동자 모두가 개선의 여지를 체감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즉, 인력난타개책으로 '이주노동자 유입'이 이루어질 때, 이주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밑바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나쁜 환경을 '인내'하는 삶의 기준으로 여겨지게 된다면, 봉제산업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한 시도가 되고 말 것이다. 노동자의 건강, 안전, 생활수준의 보장을 추구하는 것은, 봉제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며, 작은 것부터 조금씩 나아지는 움직임과 함께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이야기를 담은 [보론]을 눈여겨 봐야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 3. 소결

국내에서 봉제산업 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건강·안전 문제는 산업문제 논의 전반에서 주변부에 위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간과되거나 무시되어 온 편이다.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다양한 산업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질환에 관한 연구와 지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봉제산업 종사자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에는, 주로 봉제산업의 경제성과 전망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본 조상에서는 봉제 노동자의 삶과 건강, 안전을 주제로 이들의 노동환경과 생활환경이 어떠한 상황이며, 체감하는 건강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건강상태와 질환, 휴식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는 후술할 3장과 4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나, 2장에서 확인한 봉제산업의 개황과 구조적 문제는 대안의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봉제산업이 비공식부문의 특성을 유지하고, 개선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약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산업 쇠퇴가 봉제업의 ‘생산-유통생태계’에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배경인 것은 분명하다. 봉제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노동자와의 면담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의식은 봉제산업이 쇠퇴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인력난과 자금난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양 측이 강조하는 봉제업의 문제는 지속적인 일감 부족, 인력난이다. 봉제업의 존속과 생계에 대한 고민을 표출했는데, 인력수급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공임인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종사자 당사자들은 근골격계 통증이나 피로, 작업환경(분진) 등 건강문제에 대한 우려는 인력유입을 막는 요인으로써 언급되는 한편, 노동자와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감내해야하는 어려움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컸다.

### Ⅲ. 봉제노동자 건강안전 실태 분석

2장에서 살펴본 봉제산업의 현황과 특성, 위기는 봉제업 종사자들의 생활과 노동 양식을 제약하는 거대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세계경제의 변화와 궤를 함께 하며 진행된 봉제산업 규모와 생산양상의 변화는 각 업체가 마주하는 문제-운영난, 가치 사슬 및 유통 구조 내에서의 주변적 위상 등-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낮은 공임과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봉제업 종사자의 처우 전반이 악화되는 문제의 배경이며, 종사자들이 생활의 불안정성을 느끼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봉제산업의 구조에 긍정적 변화가 추동될 때, 비로소 봉제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문제의 극적인 개선이 가능함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산업지원은 국제 분업에 따른 봉제산업의 위상 변화와 연동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적절한 지원을 통해 봉제산업의 전망과 새로운 노동자 유입을 기대하는 정책 집행 주체는 이러한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산업진흥책에 개별 봉제 노동자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추구를 반영함으로써, 봉제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종사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서술할 노동자 건강과 휴식, 안전문제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시적 대안으로써 노동자가 효력을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지향해야 한다. 실질적인 건강 및 생활의 질 향상을 가시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반영한 거시적 정책방향 수정은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을 완화하는 효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봉제노동자의 건강향상을 목표로 한 미시적인 노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파악에 초점을 둔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봉제 노동자의 노동 환경 및 강도, 건강상태와 휴식, 구체적 질환(호흡기 질환, 근골격계질환) 경험에 관한 데이터를 설명한다. 설문 결과 데이터와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노동 현장의 실제 수요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5장의 대안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전술했듯이, 설문조사는 당사자가 체감하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이어지는 절에 서술하는 건강 상태, 질환 경험은 후속 연구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말미에서 제시하는 대안과 더불어, 의료 전문가와 여러 주체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후속 사업들이 전개된다면, 봉제업계의 노동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봉제 노동자의 일과 휴식을 결정짓는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예방·재활사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1. 봉제 노동자 실태조사 개요

노동자의 건강안전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봉제업종 종사자의 삶과, 건강,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더불어 봉제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생활실태는 봉제산업의 인력문제 및 생산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조사는 유의미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절에서 다룰 봉제노동자 실태조사의 개요는 후술할 봉제산업 종사자의 건강문제와 노동양상의 특성을 상세히 확인하기 전에 파악해야하는 정보이다. 응답자들의 답변에서 도출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을 살펴보고, 유의미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경향을 읽어내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봉제 노동자의 일과 여가에 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적절한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조사에 응한 봉제노동자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산업현황과 맥락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 봉제업 종사자의 위상과 근로조건이 불안정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봉제산업의 구조적인 특성을 검토한, 2장의 내용은 이러한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산업의 특성과 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봉제노동자의 건강 문제와 대책 요구의 경향을 비교함으로써, 조사결과가 서울시 봉제노동자 일반적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다.

### 1) 응답자 특성

#### (1) 성별, 연령, 직무

<표 III-1> 응답자 성별 분포

성별	인원 (명)	비율 (%)
여성	334	71.7
남성	120	25.8

본 실태조사에 응답자 466명 중 여성은 33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1.7%를 차지했고, 남성은 120명으로 25.8%였다. 무응답자 12명(2%)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응답자의 성별분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성응답자의 높은 비중은 봉제업체 노동자의 60%이상이 여성이라는 기존 공식 통계와 유사한 맥락으로, 봉제업체의 특성을 여성노동자 중심의 산업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는 건강 증진을 위한 논의에서 여성 특성을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가 된다.

봉제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특성 중, 다른 제조업에 비해 여성 비중이 높은 점은 기존 산업연구에서도 주목하는 특징이다. 상술했듯이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여성노동자의 높은 비중과 동시에 봉제산업 종사자의 특성으로 고려되는 것은 중고령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본 조사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표 III-2>과 같다.

<표 III-2> 응답자 연령 분포

연령 구간	인원(명)	비율(%)
20-29세	5 (1.1%)	1.1
30-39세	20 (4.3%)	4.3
40-49세	186 (40%)	40
50-59세	186 (40%)	40
60세 이상	47 (10.1%)	10.1
평균연령 (표준편차)	49.7세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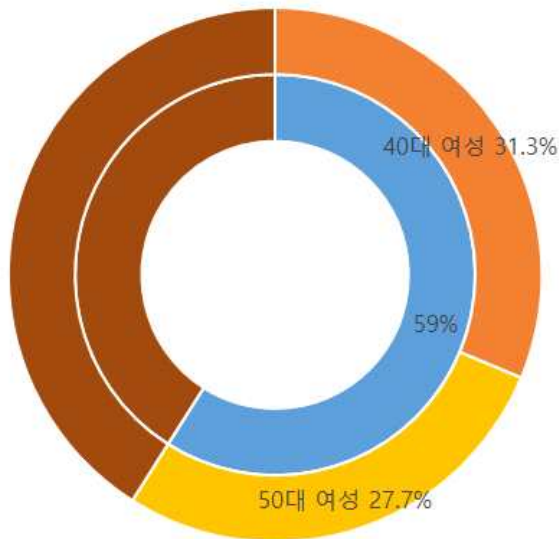
무응답자가 22명으로 4%를 차지했지만, 역시 설문조사에 응답한 노동자들의 연령분포 경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0대와 50대 노동자 비중은 전체의 80퍼센트에 이르고, 평균 연령은 49.7세로 드러났다. 면접조사와 간담회에서 들은 발언에 따르면, 50대 노동자의 비중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이거나<sup>23)</sup>, 본 실태조사에서는 40대와 50대의 비중이 유사하고 평균연령은 예상보다

23) 재봉사 중 젊은 기술자의 나이에 대한 대답에서도 중고령화 현상이 관찰된다.  
 “40, 거의 40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은 없는데. 젊은 사람은 없어요.”(C,사업주)  
 “예를들어 삼십대만 봐도 진짜 젊네 그러지 않아요. 아예. 안보여요 안보여. 평균 한 50대 되신 분들만.”(F,사업주)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본 설문조사가 소규모 샘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조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고령인 노동자일수록, 번거로운 설문에 응답하는 것을 기피하였고, 연령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설문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경향과 같은 맥락에서, 봉제업 노동자의 건강안전 실태 파악과 개선 및 예방을 위해 ‘중고령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특징이다. 실태조사 응답자 중, 중고령 여성의 비중은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났다. 40대 여성은 전체 응답자의 31%, 50대 여성은 전체 응답자의 27.7%로, 40대~50대 여성노동자는 59%에 이른다.

[그림 III-1] 40대~50대 중고령 여성 응답자



종사자의 직무 구분에 따르면, 실태조사 응답자의 54.7%가 봉제사, 보조(시다) 23.2%로 나타난다. 재단사는 대부분 남성, 봉제사와 보조(시다)는 대부분 여성이 맡는 직무인 것은 봉제업에 존재하는 성별 분업적 요소이다. 이를 고려하면, 실태조사 응답자 중,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봉제사의 비중과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표 III-3> 직무별 응답자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봉제사	255	54.7
재단사	59	12.7
보조(시다)	108	23.2
기타 <sup>24)</sup>	24	4.3
무응답	20	4.3

(2) 근무지 분포

본 설문에서는 봉제업 집적지 중 비중이 가장 높은 5개 구를 선정하여, 봉제업 노동자의 처우와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계획하는 시점에서는 종사자 및 업체 비율에 따라 설문지 분량 배분을 조절하고자 했으나, 시간적 제약과 물리적 제약으로 접근성 위주로 응답을 받았다.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된 5개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샘플링에서는 불가피하게 편향이 생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개구의 특성을 모두 파악하여 비교하기보다는, 공통된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시장상권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그 외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생산-유통 단계와 같은 구조적 차원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심화될 개연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본 조사의 응답자(466명)가 근무하는 지역 분포는 다음과 같다. 동대문구와 중구를 개별적인 권역으로 상정하고 분석하기에는 절대 수가 부족한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양자와 연계성이 높고, 상권이나 납품처의 유사성이 보이는 구를 확인했으며, 더 넓은 범위에서의 3개 권역(종로-중구, 성북구, 중랑-동대문구)으로 2차적인 분류를 행했다. 3개권역 분류는 시장상권과 그 외 지역을 구분한 분석 방향에 적용하기에 유용한 카테고리이다.

24) 4.3%를 차지하는 기타에는 '검사-포장, 경리, 관리, 대표, 디자이너, 사무, 영업, 오바르크, 왁기, 완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lt;표 III-4&gt; 근무지역 분포

근무지역	인원(명)	비율 (%)
종로구	166	35.6%
중구	35	7.5%
성북구	109	23.4%
중랑구	118	25.3%
동대문구	38	8.2%

## (3) 경력 및 근속기간

응답자의 봉제업 종사 경력과 현 회사 경력기간은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봉제업 종사한 기간을 보면, 11년~20년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의 수가 가장 많았고, 21년~30년의 경력을 지닌 응답자가 두 번째로 많았다. 응답자 중 11년 이상의 경력자의 비율은 61.6%이며, 10년 이하의 경력을 지닌 응답자는 27%였다. 이는 본 실태조사에 응한 노동자들은 전반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경력자임을 시사한다. 반면,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5년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61.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현 회사에서 근속한 기간이 6년~10년 급간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18.7%로, 이직이 잦음을 추측할 수 있다.

&lt;표 III-5&gt; 봉제업 종사기간과 현 회사 근속기간

봉제업 종사기간	인원(명)	비율(%)	현 회사 근속기간	인원(명)	비율(%)
5년 이하	61	13.1	5년 이하	288	61.8
6-10년	65	13.9	6-10년	87	18.7
11-20년	127	27.3	11-20년	25	5.4
21-30년	109	23.4	21-30년	12	2.6
31년 이상	51	10.9	31년 이상	3	0.6
무응답	53	11.4	무응답	51	10.9
평균 종사기간 (표준편차)	19년 (±11)		평균근속연수 (표준편차)	5.6년 (±6.2)	

잡은 이직은 일자리의 안정성, 일감의 지속성의 취약함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경력기간의 평균이 19년인 반면, 현 소속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 기간이 5.6년이라는 것은 숙련된 기술자들이 특정한 공장에서 꾸준히 일하지 않고 여러 이유로 직장을 옮기는 경향이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경력과 근속기간 간의 불일치의 배경으로 업계 불황에 따라 영세업체들의 운영난이 반복되고, 폐업도 적지 않은 상황을 들 수 있다. 근속 중인 업체에서 충분히 수주하지 못해 일감이 없을 때, 노동자는 일거리가 있는 다른 업체로 소속을 옮길 수 있다. 영세업장이 대부분인 봉제업계에서 종사자들은 ‘일감이 있는 기간’ 동안 기대되는 임금 등을 고려해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업주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공장)100개를 차리잖아요. 10년 이내에 90개는 망해요. 10개는 남아요. 3개는 돈을 벌어요. 나머지는 버티는 거죠. 90개가 문을 닫으면 또 70개는 또 해요. 할 게 없잖아요. 뭘 해요.” (J, 사업주)

위의 인터뷰 내용에는 공장의 개업과 폐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장기적 운영과 유지가 어려움을 반영되어 있다. 아래에 이어지는 사업주의 설명은 장기적 고용이 어려운 이유가 개폐업, 불안정한 일감수급이라는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분들(각 사업체의 노동자)이 일이 있어서 2달 정도 쉬게 되잖아요. 월급을 못주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은 당장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일이 없으면 다 가버려요. 그러다가 한두 달 쉬었다가 일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오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지를 못해요.” (H, 사업주)

#### (4) 근무환경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11.2시간이고, 점심식사와 저녁식사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각각 48.2분 33.2분으로 나타났다. 평일 여가시간은 평균 1.6시간으로, 봉제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짧은 식사시간, 휴식 시간 부족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봉제업의 제조 공정과 유통 과정에서 비롯되는 특징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다. 이전 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비공식부문’, ‘영세업체’가 지니는 불가피한 문제로도 인식할 수 있을 것이

다. 아래는 설문조사 결과 중, 작업인원 규모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표 III-6> 작업인원규모

업체 총 인원 구간	인원(명)	비율(%)
1-2명	52	11.2
3-5명	110	23.6
6-10명	143	30.7
11-20명	49	10.5
21명 이상	6	1.3
무응답	107	23
평균	7.2	100

작업인원 규모는 6명~10명 구간에 속하는 경우가 30.7%로 가장 많았고, 작업자 수가 3명~5명 구간에 속하는 경우가 23.6%였다. 1명~2명 구간까지 포함하면, 10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장을 꾸려간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65.5%에 이른다. 반면, 작업인원이 21명 이상인 작업장에서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소수의 작업자로 이루어진 작업장의 비율이 높은 것은, 영세사업장이 다수인 봉제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봉제업 종사자들이 직면하는 근무 환경상의 문제는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위험과 불편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5) 임금형태와 임금수준

봉제산업은 일반적인 임금노동 범주와 구조적으로 차별적인 특수한 고용방식을 취하고 있다. 직무와 임금 지급 방식, 노동시간에 따라, 업계 내에서 암묵적으로 합의된 방식으로 임금수준이 결정된다. 일반적인 고용형태인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되기보다, 봉제업에서 통용되는 임금형태별로 고용형태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구체적으로는 월급제, 시간제(일당), 실적급(객공)으로 나뉜다. 월급제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이고, 일당(시간제)은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객공(실적급)은 생산 실적에 따라 수입이 정해지는 형태의 고용방식이다.<sup>25)</sup> 봉제업계 내에서 시간제 노동자와 객공 고용은 지속적인 일감이 부족한

25) 아래는 사업자 면담 녹취록 중 고용방식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업계의 현실과 맞물려 있으며, 지속적인 고용이 어려운 불안정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인력수급의 변동성과 고용형태에 관한 사업주의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이다. 26) 본 조사의 응답자 466명의 임금별 고용형태는 다음과 같다.

<표 Ⅲ-7> 5개 지역 봉제노동자 임금형태

구분	인원(명)	비율(%)
월급제	274	58.8
시간제	29	6.2
실적급	116	24.9
기타	9	1.9
무응답	38	8.2
계	466	100

466명의 응답자 중, 월급제가 58.8%로 가장 많고, 실적급(객공)이 24.9%로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임금형태별 비율은 각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 ‘창신동’을 대표적인 거점으로 삼는 종로구는 객공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 본 조사 결과에도 이러한 경향은 반영되어, 종로구를 제외한 4개 지역에서는 월급제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비해, 종로구에서는 객공(48.8%)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월급제(41.0%)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임금수준 분포는 다음과 같다. 장시간 노동(평균 11.2시간)에 비해, 임금수준은 높은 편이 아니다. 낮은 공임이 봉제업계 전반의 문제로 인식되는 점을 고려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

“객공뿐만 아니라, 객공은 매수 떼기잖아요. 일당은 시간제, 아침 9시면 나와서 7시면 7시, 10시면 10시, 수당처리 다 해주고, 이걸 일당이라고 하죠.” (F, 사업주)  
 “쉽게 말해 일용직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필요할 때까지만 쓰는 거죠.” (J, 사업주)  
 26)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잖아요. 공급 물량이 일정하면, 우리가 필요한 사람만 쓰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인력이 10명이야. 그럼 어떻게 해서든 10명을 맞춰나가겠지. 그런데 어쩔 때는 20명이 투입되어야 하고, 어느 때는 5명이 투입되어야 되고, 이게 (변동이)심하다보니까, 사장들이 융통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다보니 사람은 갈수록 힘들어지고”(J,사업주)  
 영세업체의 특성상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미등록업체가 많으며, 성수기와 비수기 간 일감의 차이가 큰 점 등 다양한 제약이 사회보험 및 안전망의 부재로 연계된다.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 수령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lt;표 III-8 &gt; 임금 수준 분포

임금 구간	인원(명)	비율(%)
100만원 미만	33	7.1
100-150만원	110	23.6
150-200만원	178	38.2
200-250만원	84	18
250-300만원	29	6.2
300만원 이상	19	4.1

## (6) 사회보험

일반적으로 봉제업계에서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은 낮다.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lt;표 III-9&gt; 5개 지역 봉제노동자 4대 보험 가입 현황

	가입자 수(명)	가입 비율(%)
고용보험	81	17.4
국민연금	152	32.7
건강보험	303	65.0
산재보험	78	16.7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17.4%, 국민연금 가입률은 32.7%, 건강보험 가입률은 65.0%, 산재보험 가입자 비율은 16.7%였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가장 높아, 두 번째로 높은 가입률을 보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의 2배에 이른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국민연금과 같은 가입 루트가 다양하지만, 사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추진해야만 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확률은 낮다.

봉제 노동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은 사회보험의 성격에 따라 편차가 있다. 가족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자격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건강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다른 사회보험 가입률은 낮은 편이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 이는 사업자 등록율의 저조와 연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고용과 경영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업계 관행 상 4대 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아래의 인터뷰 내용은 사업자 등록과 4대보험 가입 비율이 매우 낮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일단 사업자 등록이 없는 곳이 80%가 됩니다.” (B, 사업주)

“4대 보험을 다 들어드릴게요 해도 안 한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사실 들어줘도 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렇잖아요.” (E, 사업주)

4대보험 가입의 미진함은 노동자의 생활이 불안정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동시에, 봉제산업의 특수한 임금체제와 봉제산업 생태계가 작동하는 구조와 연동되는 사안이다.

**<표 III-10> 5개 지역 봉제노동자의 4대 보험 가입 비율(상세 유형)**

		인원(명)	비율
고용보험	가입	81	17.4
	미가입	336	72.1
	무응답	49	10.5
산재보험	가입	78	16.7
	미가입	351	75.4
	무응답	37	7.9
국민연금	직장	80	17.2
	지역	72	15.5
	미가입	265	56.8
	무응답	49	10.5
건강보험	직장	86	18.5
	지역	152	32.6
	피부양자	65	13.9
	미가입	123	26.4
	무응답	40	8.6

## 2) 설문 의 한계(무응답자)

본 설문조사는 문항구성과 조사대상 선정의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접근성의 문제가 있었다. 개별 노동자에게 무작위 조사가 불가능한 봉제업 노동조건 의 특성상 응답을 받을 때, 조사원이 접근할 수 있는 업체와 노동자 범주에 편향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다른 문제는, 설문 문항 설계와 배치에서 발생했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각 노동자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에 비해 설문 문항이 길고, 응답에 필요한 시간이 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더불어 노동자들이 성수기에 업무에 집중하는 중에 설문에 응답해야하는 상황에서, 문항에 사용된 용어 일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와 같은 취약점은 응답자 기본사항에서의 일부 응답 누락과 생소한 용어가 사용된 문항에서의 높은 무응답 비율로 발현되었다.

본 연구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인적 구성 및 특성은, 상술한 산업적 특성과 위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써 의미를 지닌다. 면접조사는 봉제업 종사자의 목소리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산업 연구에서 집계된 공식 통계와도 유사한 경향을 띠는데, 이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건강문제와 작업환경 문제를 안전보건관리의 전문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조사·관찰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2. 봉제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

1절은 봉제노동자의 건강과 작업환경에 대한 부분이다. 응답자들의 대답을 바탕으로 1)항에서는 봉제노동자의 전반적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2)항에서는 건강상태, 3)항에서는 봉제노동자의 특수한 노동환경의 상황에 대해 다룬다.

본고에서는 봉제노동자와 전체 직종의 노동자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1 근로환경조사」에서 비교 가능한 문항을 발췌하였다. 또한 봉제노동자 대다수가 40대 이상의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근로환경조사에서 40대 이상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근로환경조사와의 비교 분석은, 봉제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상의 문제(진동, 소음, 냄새), 직업성 질환 경험, 만성적 건강 문제가 평균적인 노동자에 비해 얼마나 심각한지를 추측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본 조사에서 실시한 설문 중, 근로환경조사와 비교할 수 있는 문항은 아래와 같다.

<표 III-11> 봉제노동자조사 중 근로환경조사(2011)와 비교 가능한 문항

문 항
15. 귀하가 일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발생되니까? 1) 수공구, 기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 2)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목청을 높여야 할 정도의 심한 소음 3) 신나, 나염천 등의 냄새
19. 지난 1년 동안(2014)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을 한 날은 모두 며칠이었습니까?
22. 지난 1년 동안(2014) 귀하는 다음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1) 청력문제, 2) 손상 (사고로 다침), 3) 고혈압, 4) 당뇨, 5)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 6) 소화불량, 7) 두통, 8) 눈의 피로, 8) 전신 피로
23. 작업과 관련하여 피부염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이 절에서는 설문 결과 분석 시, 총 세 가지 범주로 응답률을 비교했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비율을 살펴보고 전체 응답자 집단이 인지하는 봉제노동자의 건강문제를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다음으로, 응답자 집단을 시장상권과 그 외 지역 응답자로 나누어 각각의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비교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비정기적 노동 · 특정 시기의 집중노동’이라는 특성과 ‘폼샐 방식’이 건강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둔 것이다. 시장상권 중심 납품 업체들이 위치한 지역의 봉제업체는 당일 주문-당일출고 생산시스템과 객공·하청 위주의 고용형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작업환경과 노동자의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이후 서술 분량 중, ‘전체’와 ‘A지역’, ‘B지역’ 구분은 이러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전체’는 응답자 전체를 의미하며, ‘A지역’은 시장상권, ‘B지역’은 그 외 지역(비시장상권)이다.

### 1) 전반적인 노동환경 인식과 건강·안전 문제

#### (1) 전반적인 노동환경 인식

이번 항은 전반적인 노동환경에 대한 노동자의 인식을 측정하여, 심각성을 보이는 항목을 가려내는 데에 목적을 둔다. 노동시간, 작업환경, 질환, 산업재해,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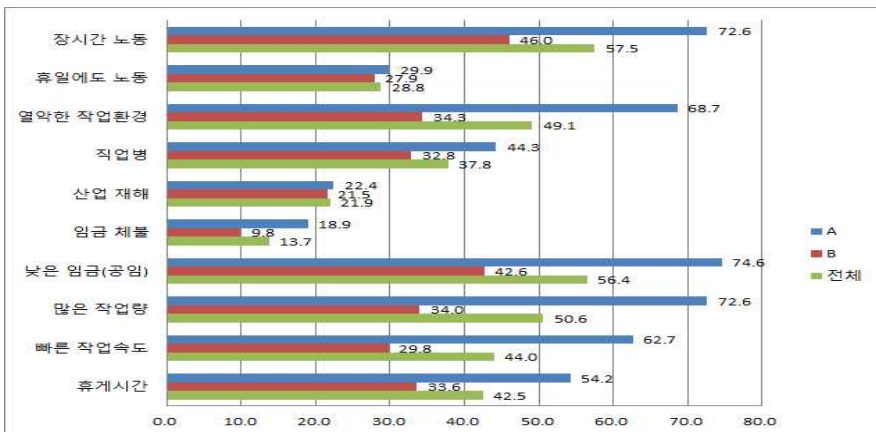
작업량 등 항목을 제시하고, 노동자의 선택 비율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과 휴일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직업병, 산업재해, 임금체불, 낮은 공임, 많은 작업량, 작업속도 부담, 휴게시간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은 [그림 Ⅲ-2]과 같다.

이 설문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4개의 척도로 나누어 물었고, 각 선택지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다소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였다. [그림 Ⅲ-2]에서는 4개 척도 중 ‘다소 심각한 편이다’와 ‘매우 심각하다’로 응답한 경우를 합하여 심각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았다. [그림 Ⅲ-2]의 그래프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들이 인식하는 심각한 문제는 장시간 노동(57.5%), 낮은 임금(56.4%), 많은 작업량(50.6%) 순서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서울지역 봉제노동자들은 노동환경에서 긴 노동시간, 낮은 임금, 열악한 작업환경, 많은 작업량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림 Ⅲ-2]에 따르면 A지역과 B지역 간 차이는 비교적 분명하게 관찰된다. 전반적으로 A 지역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A지역에서는 낮은 임금(74.6%), 많은 작업량과 장시간 노동(72.6%), 열악한 작업환경(68.7%) 순으로 심각도가 높고, B 지역은 장시간 노동(46.0%), 낮은 임금(42.6%), 열악한 작업환경(34.3%), 많은 작업량(34.0%) 순으로 심각도가 높았다. 휴일노동과 산업재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두 지역의 응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그림 Ⅲ-2] 전반적인 노동환경 중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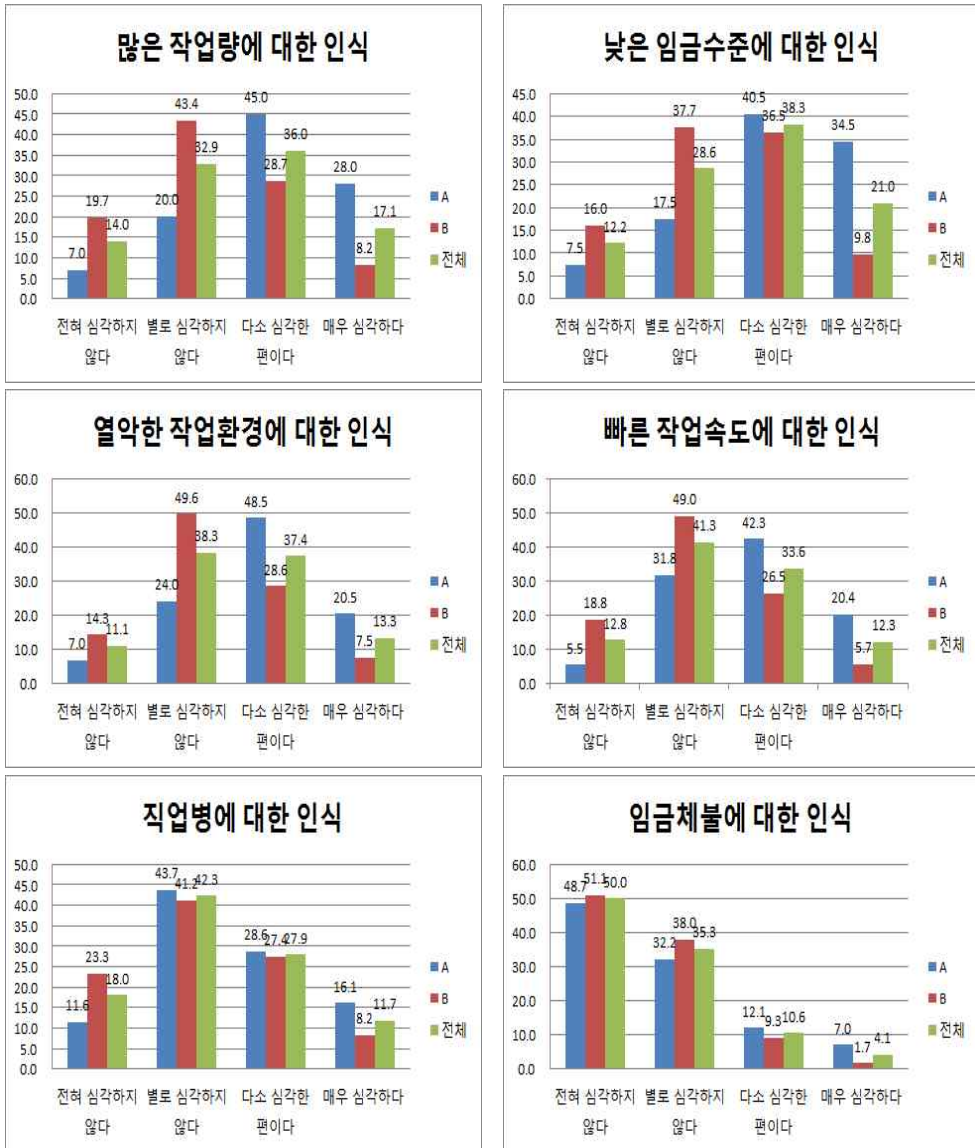
<표 Ⅲ-12> 전반적인 근로환경 중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항목

(단위: 명)

구분		A지역	B지역	전체	p-value
장시간 노동	빈도	146	122	268	0.000
	%	72.6%	46.0%	57.5%	
휴일에도 노동	빈도	60	74	134	0.649
	%	29.9%	27.9%	28.8%	
열악한 작업환경	빈도	138	91	229	0.000
	%	68.7%	34.3%	49.1%	
직업병	빈도	89	87	176	0.012
	%	44.3%	32.8%	37.8%	
산업재해	빈도	45	57	102	0.820
	%	22.4%	21.5%	21.9%	
임금 체불	빈도	38	26	64	0.005
	%	18.9%	9.8%	13.7%	
낮은 임금(공임)	빈도	150	113	263	0.000
	%	74.6%	42.6%	56.4%	
많은 작업량	빈도	146	90	236	0.000
	%	72.6%	34.0%	50.6%	
빠른 작업속도	빈도	126	79	205	0.000
	%	62.7%	29.8%	44.0%	
휴게시간	빈도	109	89	198	0.000
	%	54.2%	33.6%	42.5%	
합계	빈도	201	265	466	
	%	100%	100%	100%	

각각의 항목의 응답자 수, 비율, 유의확률은 <표 Ⅲ-12>에 나타내었다. 휴일 노동,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전반적으로 작업량이 많고 빠르게 작업하며 노동시간이 길지만 임금수준이 낮은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각 항목별로 A 지역과 B 지역을 비교할 때 휴일노동과 산업재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의 다른 수준으로 응답했다.

[그림 Ⅲ-3] 전반적인 노동 환경 인식(%)



노동환경에 대한 봉제노동자의 전반적 인식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살펴본 결과는 [그림 Ⅲ-3]과 같다. 많은 작업량에 대한 인식,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인식, 직업병에 대한 인식,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 낮은 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 빠른 작업 속도에 대한 인식 4개 척도 중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Ⅲ-2]에 포함되었던 휴게 시간, 장시간 노동에 대한 응답은 4장 봉제노동자의 일과 휴식에서 다시 다룬다. 장시간 노동과 휴식시간에 대한 인식은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의 배치를 가늠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림 Ⅲ-3]에 삽입하지 않았다.

지역 간의 수치 차이와 심각도 순위 차이는 있으나, 긴 노동시간과 작업량, 낮은 임금 문제 항목은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해당항목에 대한 A지역 노동자의 응답률은 70%를 상회하여, B지역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제의식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56% 응답률을 보인 ‘낮은 수준의 공임 문제’에 A지역에서는 74%, B지역에서는 42.69%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지역의 노동자의 업무강도, 수익구조의 심각성이 B지역보다 더 심각한 경향을 지녔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제시된 B지역 노동자의 인터뷰 내용은 봉제노동의 높은 강도와 낮은 공임 수준이 업계의 공통된 문제임을 보여준다.

“아주 조금 주는 건 아니잖아, 노동이 심한 거지”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노동의 대가가. 솔직히 야근이 많잖아”

(N, O, 노동자)

이러한 노동자들의 언술을 통해 업무부담, 노동강도를 감내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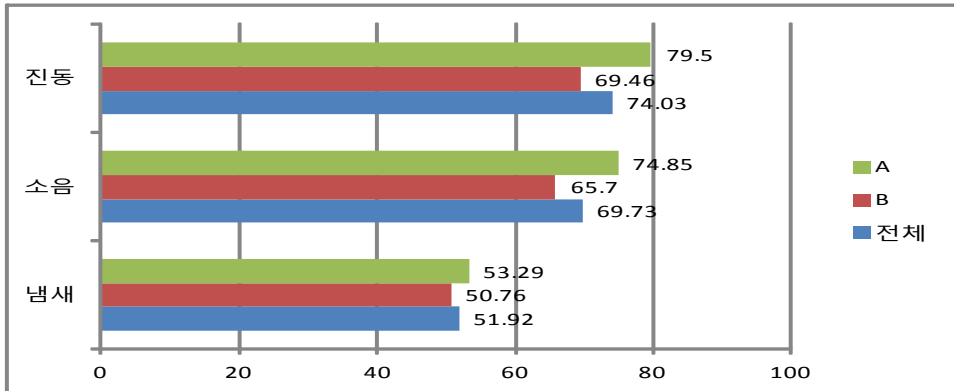
## (2) 근무 중 위험요인 노출에 대한 인식

근무 중 위험요인 노출에 대한 인식은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4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응답 분석은 4개의 응답범주 중 ‘근무시간 내내’와 ‘근무시간절반’으로 응답한 경우를 합하여 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고 진행하였다. [그림 Ⅲ-4]는 봉제노동자가 자주 노출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정도를 보여준다.

“진동”, “소음”, “냄새” 중 가장 많이 노출되는 위험요인은 진동이었으며 전체 응답률은 74.03%였다. 그러나 이 항목에서 지역차이는 드러난다. 진동에 관한 문항에서 A지역은 79.5%, B지역은 69.46%가 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소음에 대해서는 A지역이 74.85%, B지역이 65.7% 응답률을 보였다. 냄새에서는

A지역이 53.29%, B지역이 50.7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A지역이 B지역에 비해 각 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4] 지역별 근무 중 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고 인식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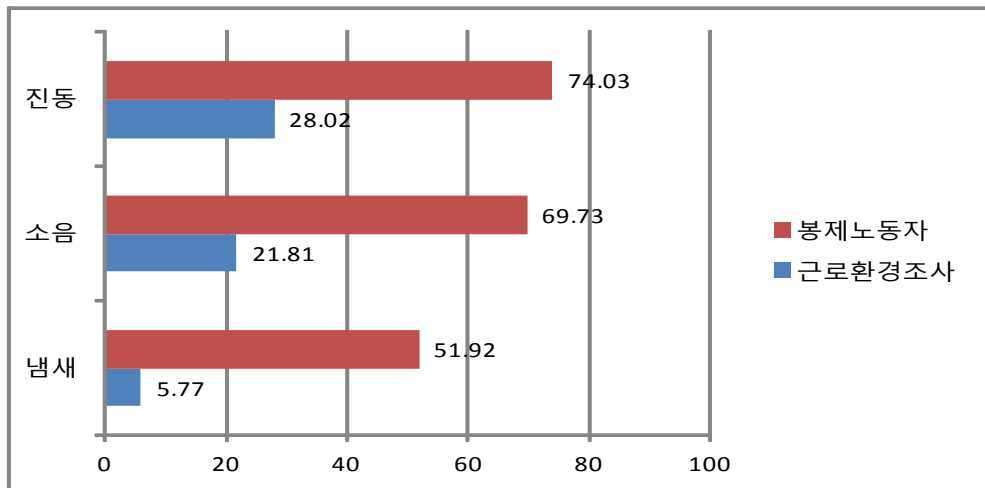


〈표 III-13〉은 봉제노동자들이 노출된다고 인식되는 위험요인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진동”에서는 95% 유의수준에서 A지역과 B지역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음”에서는 90% 수준에서 A와 B지역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냄새” 위험요인에서도 A지역이 B지역에 비해서 노출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A지역이 B지역에 비해 각 위험요인에 노출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Ⅲ-13> 근무 중 위험요인 노출에 대한 지역별 인식 비교

		A지역	B지역	전체	p-value
수공구, 기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	노출됨	빈도	159	166	325
		%	79.5%	69.46%	74.03%
	노출되지 않음	빈도	41	73	114
		%	20.5%	30.54%	25.97%
	합계	빈도	200	239	439
		%	100%	100%	100%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목청을 높여야 할 정도의 심한 소음	노출됨	빈도	122	136	258
		%	74.85%	65.7%	69.73%
	노출되지 않음	빈도	41	71	112
		%	25.15%	34.3%	30.27%
	합계	빈도	163	207	370
		%	100%	100%	100%
신나, 나옴 등의 냄새	노출됨	빈도	89	100	189
		%	53.29%	50.76%	51.92%
	노출되지 않음	빈도	78	97	175
		%	46.71%	49.24%	48.08%
	합계	빈도	167	197	364
		%	100%	100%	100%

[그림 Ⅲ-5] 조사별 근무 중 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고 인식하는 비율(%)



&lt;표 Ⅲ-14&gt; 근무 중 위험요인 노출에 대한 조사별 인식 비교

		봉제노동자		근로환경조사	p-value
수공구, 기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	노출됨	빈도	325	14,019	0.000
		%	74.03%	28.02%	
	노출되지 않음	빈도	114	36,013	
		%	25.97%	71.98%	
	합계	빈도	439	50,032	
		%	100%	100%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목청을 높여야 할 정도의 심한 소음	노출됨	빈도	258	10,911	0.000
		%	69.73%	21.81%	
	노출되지 않음	빈도	112	39,121	
		%	30.27%	78.19%	
	합계	빈도	370	50,032	
		%	100%	100%	
신나, 나염천 등의 냄새	노출됨	빈도	189	2,885	0.000
		%	51.92%	5.77%	
	노출되지 않음	빈도	175	47,147	
		%	48.08%	94.23%	
	합계	빈도	364	50,032	
		%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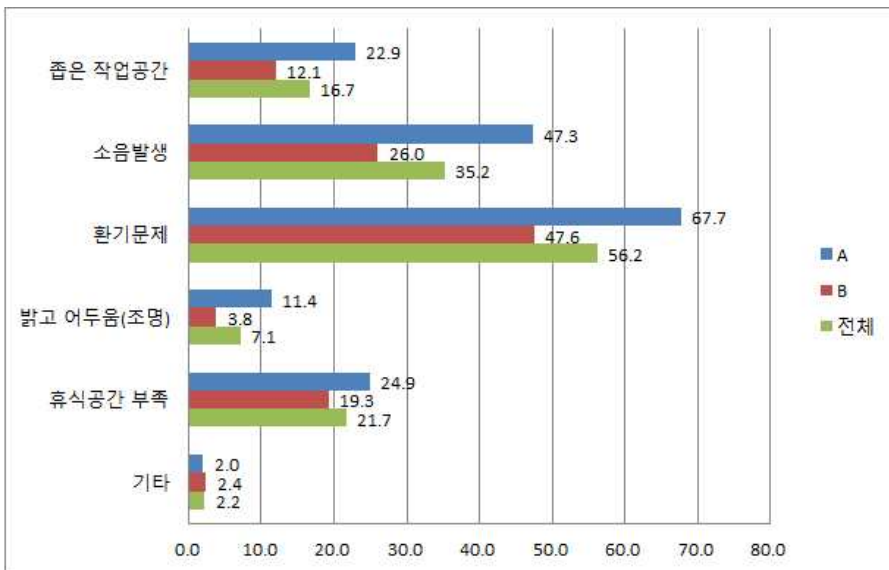
[그림 Ⅲ-5] 와 <표 Ⅲ-14> 는 봉제노동자조사와 근로환경조사에서 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진동’, ‘소음’, ‘냄새’ 모든 항목에서 봉제노동자가 근로환경조사의 40대 이상 여성들보다 노출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Ⅲ-14>의 결과를 보면 두 조사를 비교했을 때 세 항목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봉제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로환경조사에서도 작업장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진동(28.02%), 소음(21.81%), 냄새(5.77%) 순으로 나타났다.

### (3)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인식

[그림 Ⅲ-6]과 <표 Ⅲ-15>를 보면 봉제일이 노동자의 건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을 환기문제(56.2%), 소음발생(35.2%), 휴식공간 부족(21.7%), 좁은

작업공간(16.7%) 등을 순으로 꼽고 있다. A지역과 B지역에서 인식하는 주요 요인은 동일한 순위로 나열할 수 있으나, A지역에서의 인식 수준이 B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휴식공간과 기타요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정도였다. 기타 의견으로 먼지, 스트레스, 반복되는 작업, 불편한 의자 등도 언급되었다.

[그림 Ⅲ-6]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주요 작업 요인(%)



&lt;표 III-15&gt; 일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A지역	B지역	전체	p-value
좁은 작업공간	빈도	46	32	78	0.002
	%	22.9%	12.1%	16.7%	
소음발생	빈도	95	69	164	0.000
	%	47.3%	26.0%	35.2%	
환기문제	빈도	136	126	262	0.000
	%	67.7%	47.6%	56.2%	
밝고 어두움(조명)	빈도	23	10	33	0.001
	%	11.4%	3.8%	7.1%	
휴식공간 부족	빈도	50	51	101	0.144
	%	24.9%	19.3%	21.7%	
기타	빈도	4	5	9	0.550
	%	2.0%	2.4%	2.2%	
합계	빈도	201	265	466	
	%	100%	100%	100%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1순위인 환기 문제는 면접조사에서도 불편을 야기하는 주된 요소로 꼽혔다. 작업장 환기 문제와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먼지는 호흡기 질환 유병률, 증상 호소율과 맞닿아 있기에 더욱 주시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은 아래와 같이 먼지 발생 문제에 대한 불편감을 호소했다.

“먼지가 너무 많아서 눈썹에까지 하얗게 앉아. 먼지가 제일 많지, 콧구멍이 새카매편요.”(M, 노동자)

“목이 마르고 깔깔해, 목소리 킁킁해지고 이상하다니까”(P, 노동자)

봉제 공장의 내부에는 업무효율을 위한 동선 때문에 통로마다 옷감이 쌓여있고, 염색약품 냄새와 다량의 먼지가 발생하는 편이다. 또한 자재 사용의 편리성과 수납 용이성을 고려하여 고안된 정리 수단 및 공간이 없기 때문에, 환기는 업계 종사자에게 고질적인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지상에 위치한 작업장에 비해 건물 특성상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반지하-지하에 위치한 작업장의 환기

문제가 심각하며, 심각한 상황에 놓이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봉제산업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언급했듯이, 영세업체와 노동력 집약적 제조업의 특성을 지닌 봉제업계에서는 고용된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제조기술자로 동일한 강도의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서술한 다양한 건강문제 경험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겪는 어려움이다. 작업 중 먼지 발생과 환기문제는 봉제업 종사자(사업주, 노동자)들이 노출되는 위험요인이라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래는 작업공간의 공기와 증상에 관한 사업주의 설명이다.

“기침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스크를 쓴다는 것도 답답하고, 1층이나 2층 환경 좋은 데서 하면 세  
 가 비싸니까 지하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A, 사업주)

여기에서는 작업장의 환기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임이 확인되고 작업공간의 질에 따라 환기 수준이 달라짐이 드러난다. 임대료 부담 때문에 반지하 등 열악한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환기 문제의 심각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작업장 위치뿐만 아니라 계절적 요인이 있다. 여름철에는 각 봉제업체가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가 용이한 편이다. 취급 직물과 제품 형태에 따라 먼지의 양과 성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고 모직물과 솜 등의 재료를 사용하는 겨울철 작업이 여름철 작업에 비해 호흡기에 악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됨을 추측할 수 있다. 다음은 겨울철 노동환경과 질환에 관련된 인터뷰 내용이다.

“기침은 거의 달고 살아요. 겨울에는. 겨울에는...”  
 “(비염을 앓는) 그런 분도 있어요.” (D, 노동자)

작업장의 대기 상태는 계절적 요인과 작업장 공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층위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적 측정을 추진하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에 대한 영향력을 밝히기 위해서는 계절과 공간 요소의 조합에 따라 반복적인 측정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소음문제는 47.3%의 응답률을 보여 환기문제에 이어 두 번째 주요 요인으로 인식된다. 소음으로 인한 불편감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지만, 면접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재봉틀 사용이 필수적인 직무특성을 고려해서 감내한다고 다음과 같이 답하였

다.

“일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다 커, 어쩔 수 없어, 기계 돌아가면 안 들리니까”(Q, 노동자)

“(기계가) 탈카닥하고 쳐준다고. 그게 좀 소음이 심해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 정도야 우리가 일하면서 넘길 수 있죠.”(D, 노동자)

#### (4) 14세 미만 자녀의 작업장 출입

이 항목은 봉제노동자가 경험하는 전반적 노동환경의 측정하는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작업장의 안전문제의 일환으로 함께 이해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건강안전 상의 위험요인에 미성년 자녀 역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다.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응답자가 전체의 49.1%인 상황에서, 14세미만의 어린이가 작업장에 출입할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동안 머무는 경우가 있음은 눈여겨볼 만하다. 작업환경의 열악함을 지적하는 인식은 작업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일터에 14세 미만의 자녀가 머무는 상황이 발견되는 것은 ‘더 나은 작업공간의 추구’와 연관해 이해할 수 있다. 안전한 작업공간에서는 아동이 작업장 내에 머무는 동안,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을 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환경 요건의 향상은 자녀뿐만 아니라 노동자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모두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작업장에 14세 미만의 아동이 머무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A지역에서 7.1%, B지역에서는 1.6%로 나타났다. A지역에서는 아동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3.4회 정도 방문하며, 1회 방문 시 평균 2.2시간 정도 머문다고 응답하였다. B지역에서는 한 달에 2.7회, 1회 방문 시 평균 2.5시간을 머문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14세미만의 자녀들이 작업장에 머문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이 문항은 돌봄 문제와도 연계되는 문제로 중요성을 지닌다.

여성 봉제 노동자는 공장에서의 노동을 통해 생계를 책임지며, 가정에서는 돌봄을 거의 전담하는 이중부담에 노출되었다. 작업장 환경 개선 문제를 넘어, 봉제노동자의 일과 휴식, 건강을 개선하자는 본 보고서의 궁극적인 연구목적에 고려하면, 봉제공장 속의 ‘일하는 엄마’의 건강과 휴식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가사노동

을 비롯한 돌봄 노동을 작업장 내 노동과 동시에 수행하는 여성 봉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의 고안이 필요할 것이다.

## 2) 봉제노동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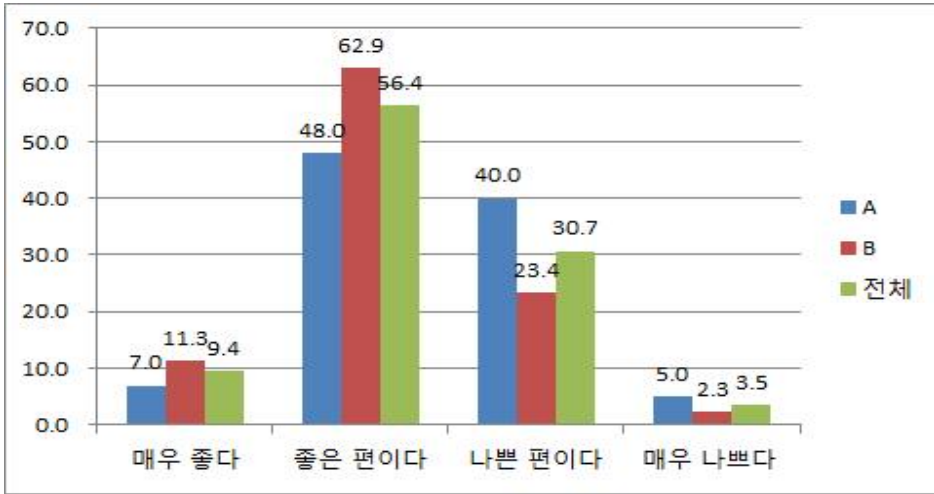
1항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봉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이다. 2항에서는 건강상태에 대한 노동자 자신의 평가 결과를 분석한다. 먼저 전반적인 건강상태 인식과 건강검진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고, 다양한 건강 문제와 증상의 정도를 확인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상세한 항목은 청력, 고혈압, 수면장애, 손상, 당뇨, 소화불량, 피로 등을 포함한다.

### (1) 주관적인 건강평가

[그림 Ⅲ-7]를 살펴보면 봉제노동자의 주관적인 건강평가 결과는 약 66%가 ‘좋다’라고 응답하고, 약 34.3%가 ‘나쁘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좋은 편이다’와 ‘나쁜 편’이다와 같은 중간태도의 응답률이 월등히 높다. 대개의 경우 주관적인 건강평가는 5점 척도로, 본 조사에서 수행한 4점 척도의 가운데에 ‘보통이다’가 추가되며 이렇게 조사한 경우 대개 ‘보통이다’가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곤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응답은 ‘보통이다’에 해당하는 응답이 ‘좋은 편이다’와 ‘나쁜 편이다’에 분산되어 들어가 있다고 추정되며, 다른 연구들에서의 수치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또한 지역별 비교를 했을 때에는 A지역 노동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B지역 노동자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정도로 차이가 났다.

결과를 분석할 때 다른 한편으로 고려해야할 점은 ‘건강한 노동자 효과(healthy worker effect)’이다. 일정 정도의 건강함이 취업의 요건이 되며, 취업자 중에서 불건강해진 경우 일을 그만두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실태를 조사하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왜곡 현상을 뜻한다. 이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실태를 조사할 때 유의할 부분이며, 본 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Ⅲ-7] 봉제노동자 주관적 건강상태(%)



<표 Ⅲ-16> 봉제노동자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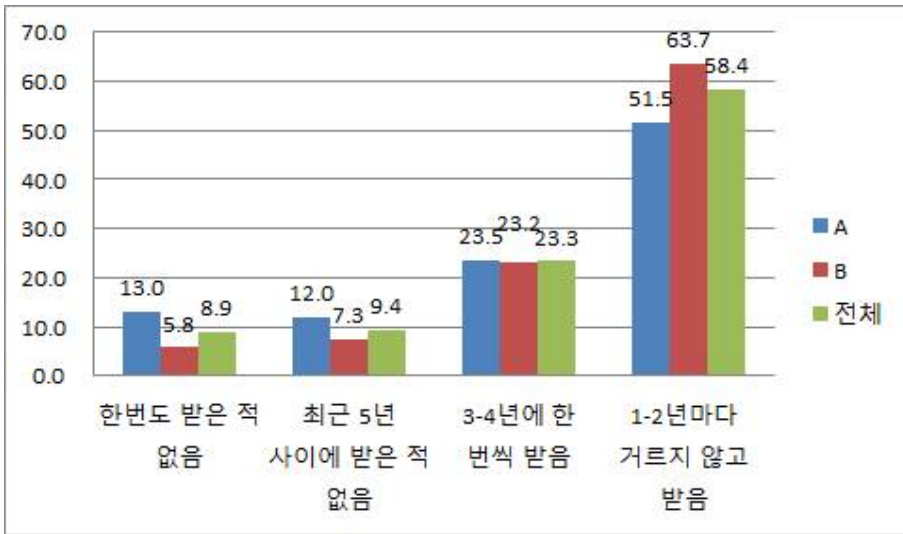
구분		A지역	B지역	전체	P-value
매우 좋다	빈도	14	29	43	0.000
	%	7%	11.3%	9.4%	
좋은 편이다	빈도	96	161	257	
	%	48%	62.9%	56.4%	
나쁜 편이다	빈도	80	60	140	
	%	40%	23.4%	30.7%	
매우 나쁘다	빈도	10	6	16	
	%	5%	2.3%	3.5%	
합계	빈도	200	256	456	
	%	100%	100%	100%	

(2) 건강검진 여부

건강검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림 Ⅲ-8], 과 같이 응답이 이루어졌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수검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1-2년마다 거르지 않고 받는

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 설문조사 응답자 중 다수가 만 40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는 점도 높은 검진 수검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지역 별 비교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B 지역이 A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건강검진을 더 자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8] 건강검진 여부(%)



<표 Ⅲ-17> 건강검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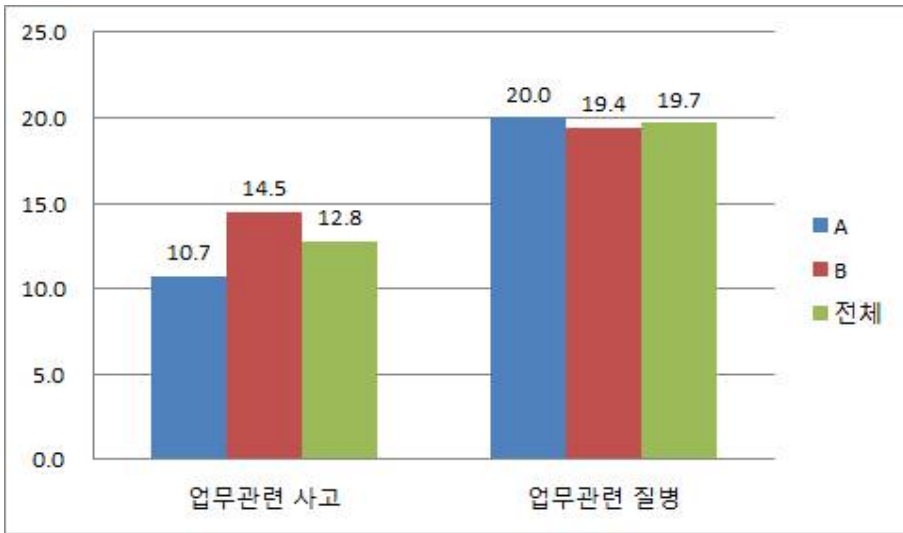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A지역	B지역	전체	P-value
한번도 받은 적 없음	빈도	26	15	41	0.007
	%	13.0%	5.8%	8.9%	
최근 5년 사이에 받은 적 없음	빈도	24	19	43	
	%	12.0%	7.3%	9.4%	
3-4년에 한 번씩 받음	빈도	47	60	107	
	%	23.5%	23.2%	23.3%	
1-2년마다 거르지 않고 받음	빈도	103	165	268	
	%	51.5%	63.7%	58.4%	
합계	빈도	200	259	459	
	%	100%	100%	100%	

(3) 지난 1년 동안(2014), 업무와 관련한 결근 여부

지난 1년 동안 업무와 관련한 사고나 질병으로 직장을 나오지 못한 정도는 아래 그림 [그림 Ⅲ-9]과 같이 나타났다.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결근 비율은 전체 12.8%로, 업무 관련 질병으로 결근한 비율 19.7%이 약 두 배 정도로 높았고 이 항목은 두 지역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림 Ⅲ-9] 지난 1년 간 업무와 관련하여 결근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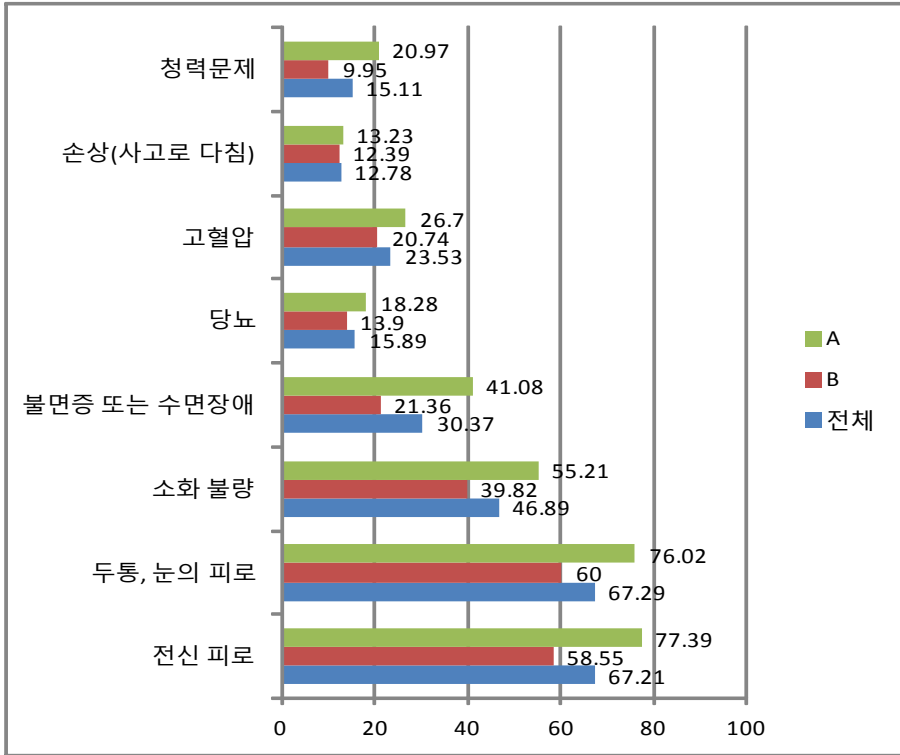
이 항목의 결과는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 결근으로 이어지는 심각도를 판단하는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업무와 질병 관련 내용 중,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때에 출근한 경우, 즉 프레젠테즘(presenteeism) 사례에 해당하는 응답은 4장 중 휴식관련 대안을 다루는 부분에서 언급할 것이다.

(4) 지난 1년 동안(2014) 경험한 건강상의 문제

봉제노동자들에게서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건강상의 문제를 보면 8개의 항목 중 두통, 눈의 피로(69.29%), 전신 피로(67.2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 항목은 소화불량(46.89%),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30.37%), 고혈압(20.74%)이었다. A지역이 B지역에 비해 경험한 건강상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1년간 경험한 건강문제의 비중은 A지역과 B지역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Ⅲ-10]은 A지역과 B지역의 봉제노동자가 경험한 건강상의 문제 여부에 대한 전체 응답 비율과 지역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Ⅲ-10] 지난 1년(2014)간 경험한 건강상의 문제 비율



상세 항목 중, ‘청력문제’,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 ‘소화불량’, ‘두통·눈의 피로’, ‘전신피로’에서 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를 해석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다. 첫째, 전반적으로 A지역이 B지역에 비해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둘째,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건강문제 항목이 손상, 고혈압, 당뇨 등 봉제노동이라는 특수성과 연령에서 기인하는 질병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문제였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A지역이 B지역보다 노동 환경이 열악하며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27)

27) 여기에서 노동환경은 다음 문단에서 드러난 추정 방식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광의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작업장 내부의 환경만을 뜻한다고 상정하기보다 종사자들의 노동실태를 결정짓는 환경적 요인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기타 변수 통제 작업이 없었던 점을 미루어, 작업장 내부 환경 외의 요인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A지역이 시장 상권중심의 유통시스템과 업무 부담이 두드러지는 곳이기 때문에, A지역이 높은 수준의 건강문제 체감비율과 경험비율을 보이는 배경에 생산의 구조적 측면, 일의 방식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엄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보다 과학적인 조사를 설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표 III-18> 지난 1년(2014)간 경험한 건강상의 문제 비율 상세

(단위: 명)

			A지역	B지역	전체	p-value
청력문제	있음	빈도	39	21	60	0.002
		%	20.97%	9.95%	15.11%	
	없음	빈도	147	190	337	
		%	79.03%	90.05%	84.89%	
	합계	빈도	186	211	397	
		%	100%	100%	100%	
손상(사고로 다침)	있음	빈도	25	27	52	0.800
		%	13.23%	12.39%	12.78%	
	없음	빈도	164	191	355	
		%	86.77%	87.61%	87.22%	
	합계	빈도	189	218	407	
		%	100%	100%	100%	
고혈압	있음	빈도	51	45	96	0.156
		%	26.7%	20.74%	23.53%	
	없음	빈도	140	172	312	
		%	73.3%	79.26%	76.47%	
	합계	빈도	191	217	408	
		%	100%	100%	100%	
당뇨	있음	빈도	34	31	65	0.228
		%	18.28%	13.9%	15.89%	
	없음	빈도	152	192	344	
		%	81.72%	86.1%	84.11%	
	합계	빈도	186	223	409	
		%	100%	100%	100%	

			A지역	B지역	전체	p-value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	있음	빈도	76	47	123	0.000
		%	41.08%	21.36%	30.37%	
	없음	빈도	109	173	282	
		%	58.92%	78.64%	69.63%	
	합계	빈도	185	220	405	
		%	100%	100%	100%	
소화 불량	있음	빈도	106	90	196	0.002
		%	55.21%	39.82%	46.89%	
	없음	빈도	86	136	222	
		%	44.79%	60.18%	53.11%	
	합계	빈도	192	226	418	
		%	100%	100%	100%	
두통, 눈의 피로	있음	빈도	149	141	290	0.000
		%	76.02%	60%	67.29%	
	없음	빈도	47	94	141	
		%	23.98%	40%	32.71%	
	합계	빈도	196	235	431	
		%	100%	100%	100%	
전신 피로	있음	빈도	154	137	291	0.000
		%	77.39%	58.55%	67.21%	
	없음	빈도	45	97	142	
		%	22.61%	41.45%	32.79%	
	합계	빈도	199	234	433	
		%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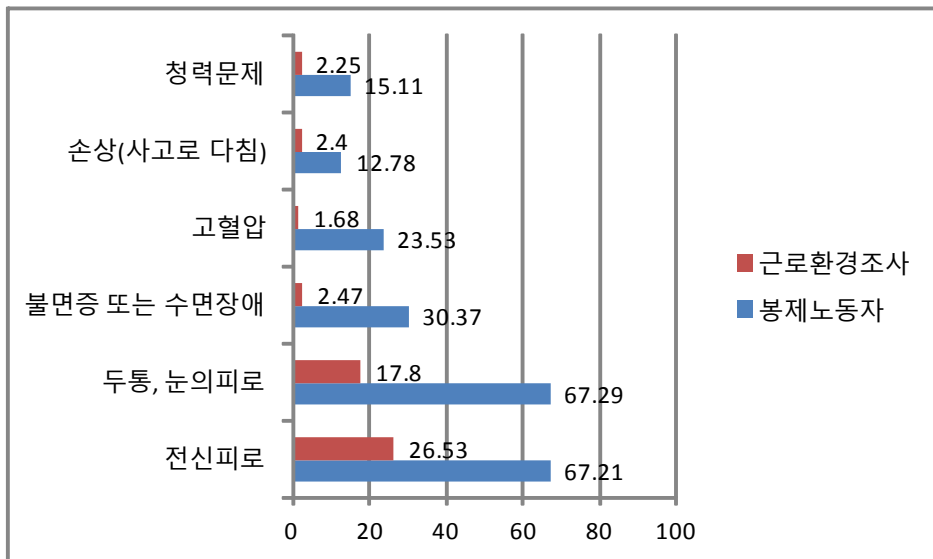
봉제산업 노동자가 건강상 문제를 경험한 비율을 바탕으로 그 수준의 심각성을 판단하기 위해 비교분석을 시도했다. 근로환경조사의 40대 여성 노동자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본 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봉제 노동자의 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봉제노동자와 근로환경조사 대상자에게서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모든 건강문제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봉제노동자에게서 건강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봉제노동자의 건강 수준이 일반 다른 노동자에 비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봉제노동자와 근로환경조사에서 40대 여성의 응답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건강문제의 모든 항목에서 봉제 노동자의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봉제노동자의 응답률이 전신피로 67.21%, 두통·눈의 피로 67.29%,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 30.37%에 이르는 반면, 근로환경조사는 각 항목에서 전신피로 26.3%, 두통·눈의 피로 17.8%,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 2.47%의 응답률을 보였다.

면접 조사에서 봉제노동자들은 전신피로의 증상을 체감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눈의 피로를 호소했다. 노동자들이 경험한 증상은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나타난다.

- “집에 가면 그때부터 녹초가 되는 거야”
- “너무 피곤하니까 자 버리는 거야”
- “눈이 다들 빨간데 피곤도 하고, 먼지도 들어가고, 한 군데만 쳐다보잖아, 멀리 보는 게 아니꼬” (M,N,P, 노동자)

[그림 III-11] 지난 1년(2014) 건강상의 문제 경험한 비율 조사별 비교



&lt;표 III-19&gt; 지난 1년(2014) 경험한 건강상의 문제 여부 조사별 비교

			봉제노동자	근로환경조사	p-value
청력문제	있음	빈도	60	1,128	0.000
		%	15.11%	2.25%	
	없음	빈도	337	48,904	
		%	84.89%	97.75%	
	합계	빈도	397	50,032	
		%	100%	100%	
손상(사고로 다침)	있음	빈도	52	1,202	0.000
		%	12.78%	2.4%	
	없음	빈도	355	48,830	
		%	87.22%	97.6%	
	합계	빈도	407	50,032	
		%	100%	100%	
고혈압 <sup>28)</sup>	있음	빈도	96	841	0.000
		%	23.53%	1.68%	
	없음	빈도	312	49,191	
		%	76.47%	98.32%	
	합계	빈도	408	50,032	
		%	100%	100%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	있음	빈도	123	1,236	0.000
		%	30.37%	2.47%	
	없음	빈도	282	48,796	
		%	69.63%	97.53%	
	합계	빈도	405	50,032	
		%	100%	100%	
두통, 눈의 피로	있음	빈도	290	8,906	0.000
		%	67.29%	17.8%	
	없음	빈도	141	41,126	
		%	32.71%	82.2%	
	합계	빈도	431	50,032	
		%	100%	100%	
전신 피로	있음	빈도	291	13,271	0.000
		%	67.21%	26.53%	
	없음	빈도	142	36,761	
		%	32.79%	73.47%	
	합계	빈도	433	50,032	
		%	100%	100%	

### 3) 봉제노동자의 특수한 근로환경 현황

#### (1) 작업용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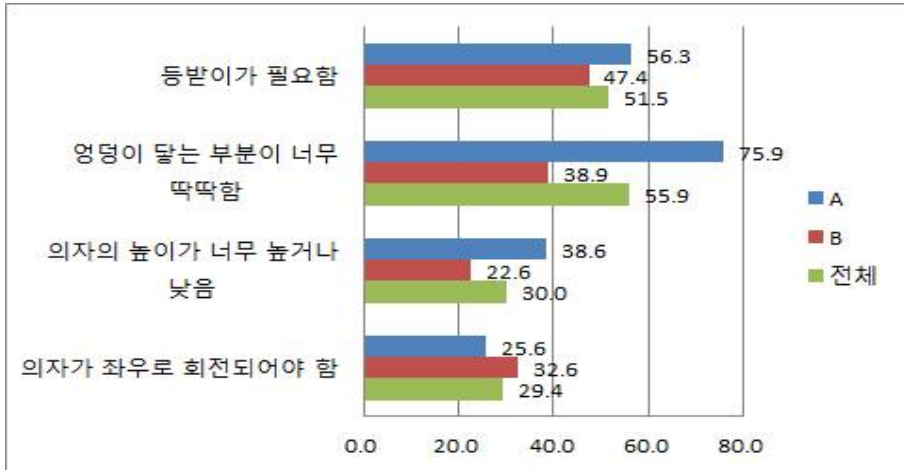
봉제노동자들은 오랜 시간을 앉아서 반복 작업을 해야 하는 작업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업의자는 작업할 때의 자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엉덩이 부분의 받침이 딱딱하고 등받이가 없다는 데에 절반가량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A지역에서 특히 B지역에 비해 의자에 대한 불만인식이 엉덩이부분의 딱딱함과 높낮이 조절이 안 된다는 부분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작업공간에서 의자는 작업 자세와 근골격계 질환의 심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10시간에서 때로는 12시간 이상을 앉아서 작업하는 봉제사에게 작업용 의자란 작업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작업 시, 의자의 편리성과 개선에 관한 설문 문항에, 51.5%의 응답자가 등받이의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엉덩이가 닿는 의자의 윗면이 너무 딱딱하다는 응답 비율은 55.9%에 이르렀다. 의자의 높낮이의 불편함을 호소한 비율은 30%, 좌우 회전 가능한 의자를 원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은 29.4%였다. 전체 응답자의 반수 이상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의자의 등받이와 의자의 ‘앉는 면’의 문제는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 응답자들이 호소한 불편감은 근골격계의 부담과 직결되며, 작업대 및 작업의자의 인간공학적 개선을 통해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면접 조사에서 의자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낸 종사자들은 적절한 등받이를 이용하여 허리 등을 쪽 펴는 스트레칭을 할 수 있기에 유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앉는 면’인 의자의 윗면이 딱딱해 작업 시 불편감을 느끼는 봉제사들은 작업장에서 방석 등을 묶어 활용하는 등 자체적인 해결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9) 작업용 의자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그림 Ⅲ-15]와 같이 답했다. <표 Ⅲ-20>에는 각 문항에 해당하는 응답의 빈도와 유의확률을 기재하였다.

28) 근로환경조사에서는 고혈압이 아닌 심혈관질환의 유무로 측정되었다.

29)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기존 체봉틀 의자는 본보고서의 부록 중, 작업장 답사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자 위에 방석을 덧대어 사용하므로 높낮이 조절이 다소 어려운 편이다. 또한 봉제사의 오랜 작업시간으로 인해 방석이 헤어지므로 잦은 교체가 필요하다.

[그림 Ⅲ-15] 일하는 의자에 대한 생각



<표 Ⅲ-20> 일하는 의자에 대한 생각

(단위: 명)

구분		A지역	B지역	전체	p-value
등받이가 필요함	빈도	112	111	223	0.066
	%	56.3%	47.4%	51.5%	
엉덩이 닿는 부분이 너무 딱딱함	빈도	151	91	242	0.000
	%	75.9%	38.9%	55.9%	
의자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음	빈도	76	51	127	0.000
	%	38.6%	22.6%	30.0%	
의자가 좌우로 회전되어야 함	빈도	51	75	126	0.113
	%	25.6%	32.6%	29.4%	
합계	빈도	199	234	433	
	%	100%	100%	100%	

면접 조사에서 각 노동자가 밝힌 작업용 의자의 문제점 역시 설문 결과와 일치한다. 피면접자들은 ‘의자의 앉는 면이 딱딱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설문조사에서 전체 노동자의 55.9%가 선택한 항목이다.

“의자가 제일 불편해요, 딱딱해서” (N, 노동자)

“첫째, 의자가 몸이... 어깨 아파, 허리 아파, 등받이 있고 편안한 의자면 좋지... 비싸잖아요.” (P, 노동자)

“의자를 어떻게 폭신하게 한다든지. 이런 의자. 등받이를 하고.”  
 “사람이 일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 등받이에 최악 썰 수도 있잖아요.  
 만날 미싱사들이 그래요. 만날 들었던 것이 그거야. 등받이가 있으면 좋  
 겠다.” (A, 사업주)

상술한 피면접자들의 대답은, 의자의 불편함과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호소를 담고 있다. 봉제노동자 당사자의 증언뿐만 아니라 재단 작업을 주로 맡는 사업주의 시각에서도 딱딱한 판자 형태의 의자에 대한 문제의식이 드러난다. 더불어 등받이의 필요성도 언급되는데, 피면접자의 설명을 통해, 등받이는 허리를 쭉 펴는 일종의 스트레칭 동작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등받이기 필요함’은 설문에서 51.5%의 응답률을 보인 항목이다. 응답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작업장이 각각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봉제사가 사용하는 재봉틀이 표준화된 형태로 보급됨을 감안하면, 작업용 의자의 개선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것이 봉제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비용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선에서, 일하기에 적합한 작업용 의자를 고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디자인 및 인간공학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봉제사들이 지니고 있는 아이디어를 반영해 제시할 수요자 중심의 개선안은 본 보고서 부록에 실어 소개한다.

## (2) 작업관련 피부염 발생 여부 및 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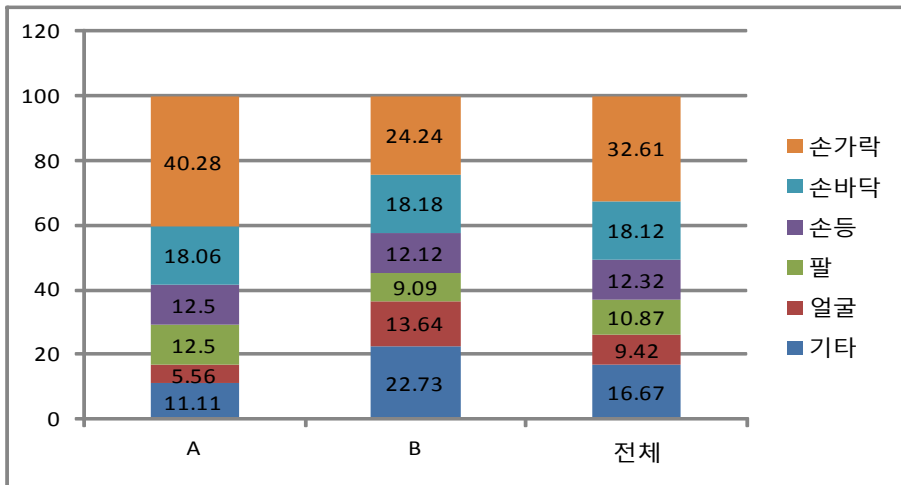
봉제노동자의 특수한 근로환경관련 건강문제 중 피부염을 겪는 비율을 보면 A 지역에서는 30.05%, B지역에서는 14.65%, 전체가 22.25%의 봉제노동자들이 작업으로 인한 피부염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 두 지역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지역보다 A지역에서 작업으로 인한 피부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21> 지역별 피부염 발생 여부

		A지역	B지역	전체	p-value	
피부염	있음	빈도	58	29	87	0.000
		%	30.05%	14.65%	22.25%	
	없음	빈도	135	169	304	
		%	69.95%	85.35%	77.75%	
	합계	빈도	193	198	391	
		%	100%	100%	100%	

[그림 Ⅲ-16]은 피부염이 발생한 봉제노동자들에게서 어떤 부위에 주로 피부염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준다. A지역과 B지역 모두 가장 많은 피부염을 겪은 부위는 손가락(A지역 40.28%, B지역 24.24%)이었다. 다음으로 A지역에서는 손바닥(18.06%), B지역은 기타(22.73%)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카이검정을 해본 결과 두 지역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Ⅲ-16] 작업관련 피부염 발생 부위



<표 Ⅲ-22>은 봉제노동자와 근로환경조사에서 작업관련 피부염 발생 정도를 보여준다. 살펴보면 봉제노동자건강실태조사에서는 22.25%의 노동자가 작업으로 인한 피부염을 겪는 반면 근로환경조사에서는 2.37%의 노동자만이 피부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유의수준에서 두 조사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봉제노동자가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비해 작업관련 피부염이 많이 발생함을 보여준다.

<표 III-22> 조사별 피부염 발생 여부

			봉제노동자	근로환경조사	p-value
피부염	있음	빈도	87	1,187	0.000
		%	22.25%	2.37%	
	없음	빈도	304	48,845	
		%	77.75%	97.63%	
	합계	빈도	391	50,032	
		%	100%	100%	

면접을 통해, 손의 피부질환 발생은 봉제업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면접자는 자신의 손가락 끝 피부가 벗겨져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염색된 원단이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손도 갈라져, 염색된 거 잘못 만지면” (Q,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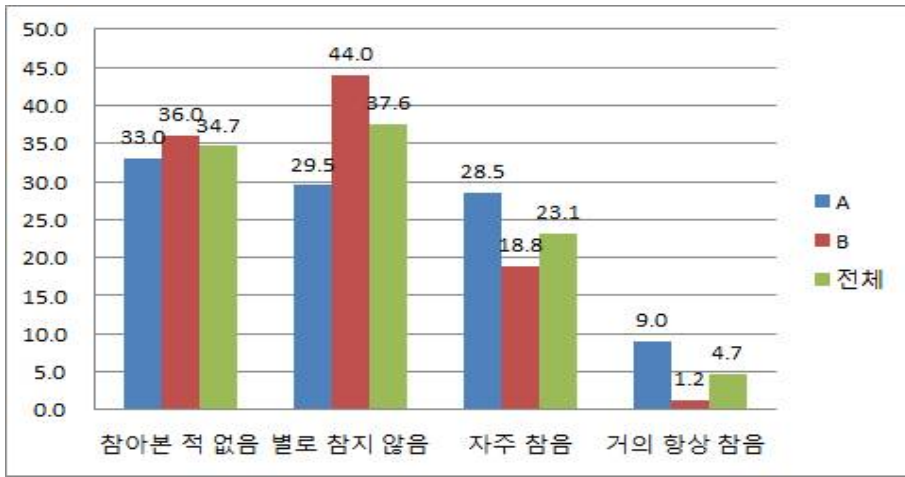
“내가 아는 사람은 손 때문에 이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P, 노동자)

피부질환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일을 그만 두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함을 알 수 있다. 기술자인 봉제업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손끝의 감각이 중요하며 작업 시의 적절성 문제 때문에 피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 장구 착용은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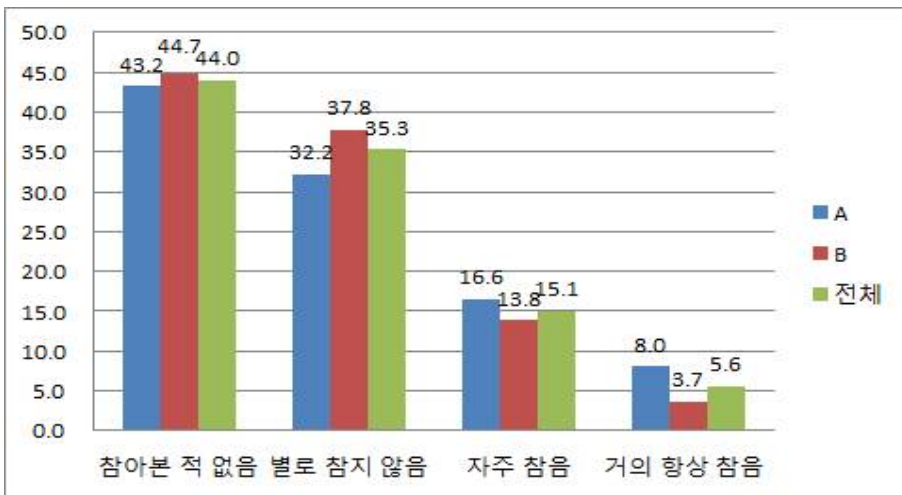
### (3) 작업관련 방광염 위험 노출 현황

봉제노동자들 중 방광염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21.2%였다. A지역에서는 20.7%, B지역은 21.6%로 두 지역의 경험정도는 거의 비슷했다. 오랜 시간을 앉아서 일하는 직업적 특성상 방광염의 위험요인을 질문한 결과는 [그림 III-17], [그림 III-18] 에 나타나 있다. A지역이 B지역에 비해 근무시간에 일 때문에 소변을 참는 경우가 유의하게 더 많았으나 물이나 음료를 마시지 않고 참는 것에는 두 지역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림 III-17] 근무시간에 일 때문에 소변을 참는지의 여부



[그림 III-18]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될까봐 물이나 음료수를 참는지의 여부



이와 관련된 면접조사 시, 질문에서 각 노동자는 업무량이 몰리는 시기, 작업에 집중하는 노동자들이 소변을 참고 작업을 마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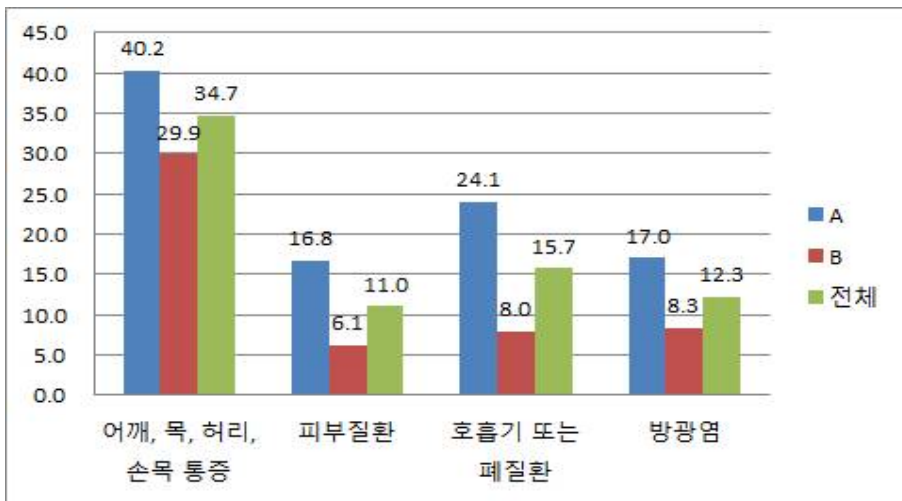
“휴식시간 없이,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M, 노동자)

(4) 직업 특수적 건강문제의 심각도

최근 3년 간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둔 동료의 있다는 응답에는 근골격계 질환이 3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호흡기나 폐질환이 15.7%로 많았다. A지역이 전반적으로 B지역보다 응답률이 높았으며 순위는 전체 순위와 비슷하였으나 B지역은 호흡기질환과 방광염으로 인한 휴직이 거의 비슷한 정도였다.

일을 그만 둔 동료 중 지금 다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에서 33.4%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고 A 지역이 41.3%로 25.7%인 B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A 지역이 B지역보다 일을 그만둔 정도도, 다시 시작한 경우도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항목은 각각 두 지역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9] 최근 3년 사이 동료의 일을 그만둔 이유



<표 III-23> 직업 특수적 건강문제로 인한 퇴직자의 복귀율

분류		A지역	B지역	전체	p-value
위의 문제로 일을 그만두었던 동료의 복귀하여 근무 중	빈도	62	39	101	0.004
	%	41.3	25.7	33.4	

### 3. 근골격계 질환

앞의 절에서 봉제 노동자의 건강문제 전반을 살펴본 결과, 봉제 작업 과정에서 근골격계 통증과 질환 문제가 지니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 절에서는 직업성 질환으로서의 근골격계 질환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 1) 질환 증상 호소 수준

봉제업종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2014년) 다음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귀하가 하시는 일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62.8%가 ‘허리통증’을, 74.1%가 ‘어깨, 목, 팔 등의 상지 근육통’을, 58.6%가 ‘엉덩이, 다리, 무릎, 발 등의 하지 근육통’을 호소했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상지나 하지, 허리 한 곳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자가 경험한 건강문제가 일 때문에 발생하였냐고 묻는 질문에는 건강문제를 경험한 응답자만 업무 관련 여부에 답하여야 한다. 건강문제 3개 항목에 각각 ‘있다’라고 대답한 노동자-허리통증 경험자 265명, 어깨,목,팔 등의 근육통 경험자 320명, 엉덩이, 다리, 무릎, 발 등의 근육통 경험자 249명-이 각 항목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총 수와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표<Ⅲ-24>이 보여주듯이, 각 항목의 업무관련 여부에 대하여 답한 응답자가 ‘건강문제가 있다’고 선택한 응답자보다 많다.

<표 Ⅲ-24> 봉제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경험

		건강문제		업무 관련 여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허리통증	응답자(명)	265	157	223	157
	구성비(%)	<b>62.8</b>	37.2	<b>58.7</b>	41.3
2) 어깨, 목, 팔 등의 근육통	응답자(명)	320	112	263	122
	구성비(%)	<b>74.1</b>	25.9	<b>68.3</b>	31.7
3) 엉덩이, 다리, 무릎, 발 등의 근육통	응답자(명)	249	176	215	172
	구성비(%)	<b>58.6</b>	41.4	<b>55.6</b>	44.4

이러한 응답상의 모순은 피설문자들이 해당 문항의 ‘건강 문제 경험 여부’와 ‘응답자가 경험한 건강 문제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오독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건강문제 여부’와 ‘업무관련성 건강문제 경험 여부’라는 독립적인 질문으로 이해하여, 건강문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고 업무관련성 여부에도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방법과 과정에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건강문제 경험을 선택한 응답자가 1)허리 통증 58.7%, 2)어깨 목 팔 등의 근육통 68.3%, 3) 엉덩이, 다리, 무릎, 발 등 근육통 55.6%에 이른 점은 주목할만하다. 적어도 해당 문항에 답한 응답자 중에 55% 이상은 3가지 건강문제를 업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에 서술할 업무의 위험성과 다양한 영향 요소에 관한 관심이 필요함을 환기시키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 2) 업무의 위험성

근골격계질환 통증이 수행 업무와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11개 근골격계 부담작업”<sup>30)</sup> 중 봉제업종 노동자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질문을 5가지 채택하였다. 11개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처방은 ‘즉시 개선’ 대상이 된다. 이 고시는 ‘중노동’에 해당되는 항목들뿐이며 다양한 업무 방식을 모두 수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본 실태조사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를 수용하여 적용하였다.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제1조(근골격계부담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

30)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근골격계 부담작업고시 개정전문(2014.8.1.시행)”

(<http://www.moel.go.kr/search/search.jsp>) 검색일 2015.4.20.

본문에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11개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1호부터 11호까지를 의미한다.

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제2조 생략.

출처: 근골격계 부담작업고시 개정전문(2014.8.1.시행)

설문 문항 구성 시 “11개 근골격계 부담작업”보다 적합성이 높은 질문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설문응답자에 대한 접근성과 응답회수율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봉제업계의 성수기에 해당하는 기간에 상세한 문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작업에 몰두하는 노동자들에게 제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술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 목록 11개 중 5개 호-2호, 4호, 5호, 8호, 9호-를 활용하였다. 객관적인 유해요인 판별 기준을 반영한 상세한 설문조사 등은 후속 연구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과업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설문지에 반영한 5가지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이다. 먼저, “평소 업무 중 다음과 같은 일이 있는지를 체크해주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

서는 ‘상지의 반복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실상 약 86%가 ‘즉시 개선’ 대상이 되고 있다. ‘상지의 부적절한 자세’ 문제도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약 68%가 ‘즉시 개선’ 대상이 된다. ‘하지의 부적절한 자세’에 해당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지만, ‘예’라고 응답한 35% 또한 ‘즉시 개선’ 대상이 된다. 중량물 작업 수행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16~17%선을 보이며, 이는 ‘즉시 개선’ 대상이 된다.

<표 Ⅲ-25> 봉제업종 노동자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수행 여부

작업 내용		예	아니오
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응답자(명)	384	64
	구성비(%)	<b>85.7</b>	14.3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응답자(명)	298	141
	구성비(%)	<b>67.9</b>	32.1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응답자(명)	154	281
	구성비(%)	<b>35.4</b>	64.6
4)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응답자(명)	71	358
	구성비(%)	<b>16.6</b>	83.4
5)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응답자(명)	69	358
	구성비(%)	<b>16.2</b>	83.8

### 3) 통증에 영향을 주는 요소

절대 다수의 노동자가 상지에 큰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하지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표 Ⅲ-16>에서 드러난 통증호소자 비율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 항에서는 응답자들의 통증 호소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살펴볼 것이다.

“제일 봉제에서 심한 것이 뭐냐하면 디스크. 허리 디스크...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이 많고.” (B,사업주)

다른 40대~50대 집단에 비해 봉제산업 노동자가 특별히 경험하는 건강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피면접자는 허리 디스크라고 응답했다. 이 응답자는 2절의 ‘작업용 의자 개선’에서, 요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 수 있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지적한 바 있다.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비율이 전체 근골격계 질환자 중 압도적 비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요소는 특별한 변별력을 지니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상지, 허리, 하지에 대한 통증 유무를 물었지만 이 항에서는 상지와 하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만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상지와 하지의 근골격계 질환 통증 호소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유효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 (1) 어깨 등 상지 통증에 영향을 주는 요소

상지통증과 관련된 작업자 위험요인으로는 다음의 내용들을 들 수 있다.

먼저, 근골격계 부담 작업 2호, 즉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상지통증을 경험하는 집단의 비율은 79.0%로 나타났다. 해당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집단 중, 통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6%이다. 양자 간에는 35.4%만큼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근골격계부담작업 2호의 수행 여부가 통증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추론할 수 있다.

<표 III-26> 상지 통증과 근골격계부담작업 2호 수행

어깨 등 상지 통증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합계
		예	아니오	
있다	응답자(명)	290	24	314
	구성비(%)	79.0%	43.6%	74.4%
없다	응답자(명)	77	31	108
	구성비(%)	21.0%	56.4%	25.6%
합계	응답자(명)	367	55	422
	구성비(%)	100%	100%	100%

\* p<0.05

근골격계부담작업 4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수행도 상지통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응답자 중, 통증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83%이며, 해당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집단에서 통증을 호소한 집단은 54.3%로 나타났다. 양자 간에는 28.7%만큼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이다. 즉, 부적절한 작업자세인 근골격계부담작업 4호는 상지통증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II-27> 상지 통증과 근골격계부담작업 4호 수행

어깨 등 상지 통증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합계
		예	아니오	
있다	응답자(명)	239	70	309
	구성비(%)	83.0%	54.3%	74.1%
없다	응답자(명)	49	59	108
	구성비(%)	17.0%	45.7%	25.9%
합계	응답자(명)	288	129	417
	구성비(%)	100%	100%	100%

\* p<0.05

근골격계부담작업 5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집단에서 통증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84.0%이다. 해당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통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8%로 16.2%만큼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5호의 수행여부에 따라 통증유무도 영향을 받는 것이다. 5호 작업의 경우, 하지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지에 부하가 큰 작업 수행 여부와 노동자의 상지 통증 호소율 간의 관계이다. 하지에 부담이 큰 작업 수행이 위와 같이 설명력을 가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봉제노동자 중 상지작업만 하고 하지 작업만 하는 노동자는 거의 없으며, 대다수는 상지·하지 중심 작업을 함께 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지 통증 호소자의 실태를 논의할 때, 상지 위험작업과 위험작업의 영향력을 모두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lt;표 III-28&gt; 상지 통증과 근골격계부담작업 5호 수행

어깨 등 상지 통증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합계
		예	아니오	
있다	응답자(명)	126	179	305
	구성비(%)	84.0	67.8	73.7
없다	응답자(명)	24	85	109
	구성비(%)	16.0	32.2	26.3
합계	응답자(명)	150	264	414
	구성비(%)	100	100	100

\* p&lt;0.05

근골격계 부담작업 8호와 9호, 즉, 중량물 작업 수행이 상지통증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수행하고 있는 업무별로 상지 통증 수준을 파악해 보면 대동소이하지만 보조(시다)의 호소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봉제사, 재단사 순으로 나타난다. 모두 70%~80%에 이르는 호소율을 보이고 있다.

&lt;표 III-29&gt; 업무별 상지통증 호소 수준

어깨 등 상지 통증		봉제사	재단사	보조(시다)	기타
있다	응답자(명)	181	43	77	10
	구성비(%)	76.7%	72.9%	77.0%	45.5%
없다	응답자(명)	55	16	23	12
	구성비(%)	23.3%	27.1%	23.0%	54.5%
합계	응답자(명)	236	59	100	2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 p&lt;0.05(0.000)

상지통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근골격계부담작업 2호, 4호, 5호 등의 ‘위험 작업’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볼 수 있다. 분석 결과, “많은 작업량”, “빠른 작업 속도”, “휴일노동”, “부적절한 작업용 의자”도 통증 유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0> 상지통증과 작업량 간의 관계

어깨 등 상지 통증		많은 작업량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다소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있다	응답자(명)	30	96	121	61
	구성비(%)	53.6%	72.2%	78.6%	85.9%
없다	응답자(명)	26	37	33	10
	구성비(%)	46.4%	27.8%	21.4%	14.1%
합계	응답자(명)	56	133	154	7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 p<0.05

<표 III-31> 상지통증과 작업 속도 간의 관계

어깨 등 상지 통증		빠른 작업 속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다소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있다	응답자(명)	28	124	114	44
	구성비(%)	53.8%	72.9%	80.3%	83.0%
없다	응답자(명)	24	46	28	9
	구성비(%)	46.2%	27.1%	19.7%	17.0%
합계	응답자(명)	52	170	142	5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 p<0.05 (0.000)

<표 III-32> 상지통증과 휴일노동 관계

어깨 등 상지 통증		휴일에도 노동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다소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있다	응답자(명)	103	106	76	24
	구성비(%)	65.6%	79.1%	79.2%	85.7%
없다	응답자(명)	54	28	20	4
	구성비(%)	34.4%	20.9%	20.8%	14.3%
합계	응답자(명)	157	134	96	2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 p<0.05

<표 III-33> 상지통증과 의자 등받이 부실과의 관계

어깨 등 상지 통증		의자에 등받이 필요	
		그렇다	아니다
있다	응답자(명)	165	135
	구성비(%)	79.7%	68.5%
없다	응답자(명)	42	62
	구성비(%)	20.3%	31.5%
합계	응답자(명)	207	197
	구성비(%)	100.0%	100.0%

\* p<0.05

<표 III-34> 상지통증과 의자 바닥 부실 간의 관계

어깨 등 상지 통증		의자에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 너무 딱딱하다	
		그렇다	아니다
있다	응답자(명)	188	114
	구성비(%)	80.7%	66.7%
없다	응답자(명)	45	57
	구성비(%)	19.3%	33.3%
합계	응답자(명)	233	171
	구성비(%)	100.0%	100.0%

\* p<0.05

아래의 인터뷰는 불편한 작업용 의자와 상지 통증에 관한 노동자의 경험을 담고 있다. 어깨,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작업용 의자와 작업 공간의 문제가 이를 심화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의자가 제일 불편해요, 의자가 딱딱해서. 첫째, 의자가 몸이... 어깨 아파, 허리 아파, 등받이 있고 편안한 의자면 좋지... 비싸잖아요, 의자가 가격차이가 있는데, 의자 놓을 자리가 있을까? 자리 안 차지하고, 오래한 사람들이 몸에 병나는 이유가 의자부터, 공간 때문에, 좁다고” (O, 노동자)

앞서 언급한 위험 요인들은 노동자들의 통증호소율과의 교차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항목이다. 더욱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요소

들이 통증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고려해 항목화한 후,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하고, 각 변수들이 지니는 설명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기반으로 노동자들이 겪는 근골격계 질환이 ‘작업관련성질환’으로 분류되는지와 그 심각성을 보건 분야의 기준을 적용하여 엄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엉덩이 등 하지 통증에 영향을 주는 요소

전술했듯이, 봉제노동자들이 상지작업 혹은 하지 작업 중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각 노동자들이 상·하지 작업을 모두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지의 통증 호소자가 상지 위험작업에도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바탕을 두고, 하지통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상지에 부담이 되는 작업도 함께 살펴보았다.

아래 표에서는 근골격계부담작업 2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의 수행 여부에 따라 통증유무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 중, 하지통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9%이다. 반면, 근골격계부담작업 2호를 수행하지 않는 작업자 중 하지통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1%이다. 양자 간에 25.8%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이다. 상지의 작업 부하가 큰 노동자가 하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이유는 앞의 분석 내용과 유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표 III-35> 하지 통증과 근골격계부담작업 2호 수행

엉덩이 등 하지 통증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합계
		예	아니오	
있다	응답자(명)	227	18	245
	구성비(%)	62.9%	32.7%	100.0%
없다	응답자(명)	134	37	171
	구성비(%)	37.1%	67.3	100.0%
합계	응답자(명)	361	55	414
	구성비(%)	100	100	100

\* p<0.05

근골격계부담작업 4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 중, 통증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62.9%이다. 해당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집단에서 통증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32.7%에 그쳐, 양자는 30.2%만큼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상지의 작업 부하가 큰 노동자가 하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이유는 앞의 분석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다.

<표 III-36> 하지 통증과 근골격계부담작업 4호 수행

영덩이 등 하지 통증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합계
		예	아니오	
있다	응답자(명)	198	45	243
	구성비(%)	69.5%	34.9%	58.7%
없다	응답자(명)	87	84	171
	구성비(%)	30.5%	65.1%	41.3%
합계	응답자(명)	285	129	414
	구성비(%)	100%	100%	100%

\* p<0.05

근골격계부담작업 5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수행하며 하지통증이 있는 경우는 69.5%이며, 해당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 중, 통증을 느끼는 비율은 34.9%로 나타났다. 양자 간에는 34.6%만큼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업무 중 하지에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자세)는 하지 통증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표 III-37> 하지 통증과 근골격계부담작업 5호 수행

영덩이 등 하지 통증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합계
		예	아니오	
있다	응답자(명)	107	130	237
	구성비(%)	73.8	49.2	57.9
없다	응답자(명)	38	134	172
	구성비(%)	26.2	50.8	42.1
합계	응답자(명)	145	264	409
	구성비(%)	100	100	100

\* p<0.05

중량물 작업 관련해서는 통계적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업무수행 집단별 통증 호소의 비율은 <표 III-30>과 같이 나타났다. 하지통증은 봉제사 집단이 63.8%로 가장 높은 호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조(시다)의 통증호소율은 58.3%이다. 이 결과는 직무별 상지통증 호소자 분포에 비해 하지통증 호소율은 전반적으로 10%p 가량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봉제사의 경우 보조보다 하지 작업을 더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작업환경 및 건강상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I-38> 하지 통증과 업무 간의 관계

영덩이 등 하지 통증		봉제사	재단사	보조(시다)	기타
있다	응답자(명)	150	29	56	6
	구성비(%)	63.8%	50.0%	58.3%	28.6%
없다	응답자(명)	85	29	40	15
	구성비(%)	36.2%	50.0%	41.7%	71.4%
합계	응답자(명)	235	58	96	2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 p<0.05

A: “(발이) 많이 붓죠. 미싱사들은 거의 뒷 80~90% 붓죠. 미싱사들 거의 뒷, 다들 보약 먹고 약 먹고.” (C, 사업주)

위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봉제사들의 하지 부종은 작업특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봉제사들의 작업 자세와 작업 방식이 하지에 부담을 주는 편임을 추측할 수 있다.

연령과 통증과의 관계는 아래의 <표 III-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하지통증 호소자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이다. 노동자의 연령이 높은 경우 근속연수도 높을 가능성이 높고, 개별 노동자의 노화도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령이 하지통증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III-39> 하지통증 호소자와 연령 간 관계

영향이 등 하지 통증		20대	30대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있다	응답자(명)	2	6	40	56	61	47	24	7
	구성비(%)	40.0%	33.3%	50.0%	58.9%	63.5%	63.5%	75.0%	77.8%
없다	응답자(명)	3	12	40	39	35	27	8	2
	구성비(%)	60.0%	66.7%	50.0%	41.1%	36.5%	36.5%	25.0%	22.2%
합계	응답자(명)	5	18	80	95	96	74	32	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p<0.05

전술한 ‘위험 작업’ 수행 외에도 하지통증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존재하는데, “많은 작업량”, “빠른 작업 속도”, “휴일노동”, “부적절한 의자제공”이 모두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부적절한 의자제공” 문제의 상세 내용 중 ‘높낮이 조절이 안 되는 문제’가 추가로 제기된 점은 특징적이다. 이를 제외한 전반적인 하지통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상지통증 호소자에 대한 분석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 III-40> 하지통증과 작업량 간의 관계

엉덩이 등 하지 통증		많은 작업량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다소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있다	응답자(명)	20	66	97	55
	구성비(%)	38.5%	49.6%	63.8%	77.5%
없다	응답자(명)	32	67	55	16
	구성비(%)	61.5%	50.4%	36.2%	22.5%
합계	응답자(명)	52	133	152	7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 p<0.05

<표 III-41> 하지통증과 작업속도 간의 관계

엉덩이 등 하지 통증		빠른 작업속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다소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있다	응답자(명)	20	88	94	40
	구성비(%)	40.8%	52.1%	66.2%	75.5%
없다	응답자(명)	29	81	48	13
	구성비(%)	59.2%	47.9%	33.8%	24.5%
합계	응답자(명)	49	169	142	5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 p<0.05

<표 III-42> 하지통증과 휴일노동 간의 관계

엉덩이 등 하지 통증		휴일에도 노동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다소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있다	응답자(명)	78	83	58	22
	구성비(%)	50.3%	62.4%	61.7%	75.9%
없다	응답자(명)	77	50	36	7
	구성비(%)	49.7%	37.6%	38.3%	24.1%
합계	응답자(명)	155	133	94	2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 p<0.05

<표 III-43> 하지통증과 의자 등받이 필요성

엉덩이 등 하지 통증		의자에 등받이가 필요하다	
		그렇다	아니다
있다	응답자(명)	137	97
	구성비(%)	65.9%	50.0%
없다	응답자(명)	71	97
	구성비(%)	34.1%	50.0%
합계	응답자(명)	208	194
	구성비(%)	100.0%	100.0%

\* p<0.05

<표 III-44> 하지통증과 의자 착석감

엉덩이 등 하지 통증		의자에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 너무 딱딱하다	
		그렇다	아니다
있다	응답자(명)	153	79
	구성비(%)	66.5%	47.0%
없다	응답자(명)	77	89
	구성비(%)	33.5%	53.0%
합계	응답자(명)	230	168
	구성비(%)	100.0%	100.0%

\* p<0.05

<표 III-45> 하지통증과 의자 높이 간의 관계

엉덩이 등 하지 통증		의자의 높이가 너무 낮거나 높다	
		그렇다	아니다
있다	응답자(명)	89	138
	구성비(%)	73.6%	51.1%
없다	응답자(명)	32	132
	구성비(%)	26.4%	48.9%
합계	응답자(명)	121	270
	구성비(%)	100.0%	100.0%

\* p<0.05

#### 4) 질환 관리 관련 규제

현행법에서는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관리의무를 무겁게 부여하고 있다.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은 노동자들이 겪는 직업성 질환 중 가장 광범위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통상 업무상 질병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중 관련 규정을 보면, 관리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유통산업에서는 중량물 관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영역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의 자료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시한 것이다.<sup>31)</sup> 산업안전보건법 중, 근골격계질환 관리의무 조항은 제 24조 중,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1862호)” 제 24조 보건조치

##### 제24조(보건조치)

-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

31)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18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15.6.15.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undefined>)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1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15. 6.15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6089&efYd=20150101#0000>)

는 건강장해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본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통상 한 사업장 인력은 7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사업주가 존재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지 않으며 또한 그럴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의류 제조 분야에서의 작업에 허리 통증이 뒤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러한 인식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저해하는 제약요소로 작용한다. 이처럼, 업체의 영세성과 종사자 전체의 인식에서 드러나는 한계를 고려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작업 환경 개선 시도와 작업 관련성 질환의 완화 대책을 모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사업주의 의식개선을 요구하는 시도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사업주와 고용된 노동자가 공통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인내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업계 분위기와 이를 지속되게 만드는 산업구조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거시적 차원의 대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는 조망 속에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야할 것이다. 의자개선, 작업대 높낮이 조절, 적정 업무량 배분 등을 서울의 의류봉제업 현장에서부터 시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과업이 될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 177호) 중 근골격계질환 관련 규정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65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 제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라목 및 제6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①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659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65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제658조에 따른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략...

###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64조(작업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취급빈도·운반거리·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

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제666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 4. 호흡기질환

호흡기 관련 질환은 주로 폐결핵, 폐열, 기관지염, 기침, 감기, 기관지천식 등을 일컬으며 그 원인은 대단히 다양하다. 바이러스와 같은 직접적인 질환 발병 요인이 존재하는가 하면 환경-온도, 습도, (실내)공기질 등-에 의한 요인도 있다. 본 조사에서는 그러한 유해요인에 대한 진단을 진행하지는 않았고 아래 주요 세 가지 호흡기질환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증상호소율을 살펴보았다.

본 조사에서는 작업장의 ‘먼지’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인의 신체나 건강 특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조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지난 한 해(2014년) 봉제 일을 하면서 <보기>의 호흡기 증상으로 불편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진행했고 그 결과 응답자의 약 37%는 증상이 없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63%에서는 ‘숨막힘’, ‘가래 없는 기침(마른 기침)’, ‘가래를 동반한 기침’, ‘비염(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 하나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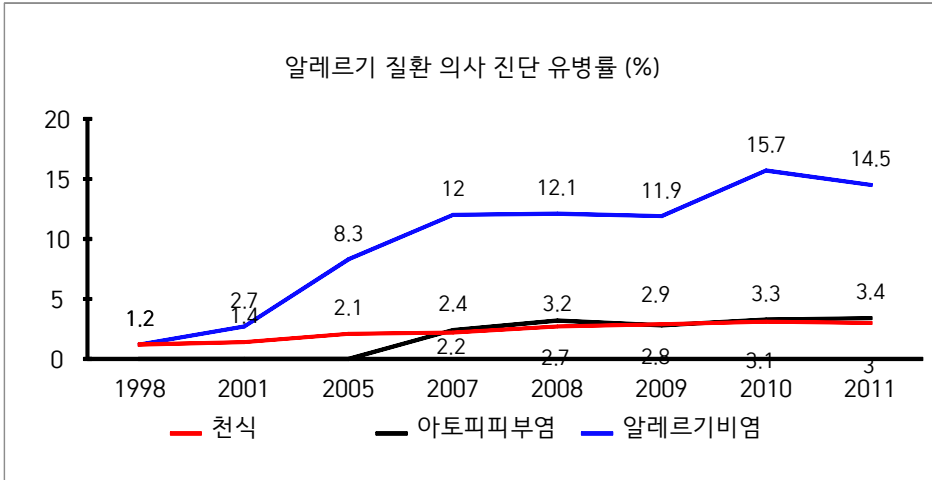
##### 1)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직업성 천식은 직업상 취급하는 물질이나 작업 과정 중에 생산되는 중간 물질 또는 최종 산물이 원인으로 관여하는, 즉 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천식으로 정의한다. 최근에는 직업과 관련하여 새로 생기는 천식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천식이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악화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직업성 천식은 산업화된 국가에서 직업성 호흡기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서, 근로 연령에 속한 성인 천식 환자의 9~15%가 직업성 천식이라는 보고도 있다. 국내에서 보고된 작업장에서의 직업성 천식 유병률은 이소시아네이트 취급 공장 1.5~13%, 반응성 염료공장 6~14.3%, 사료공장 14% 및 제빵공장 5%였다.<sup>32)</sup>

뿐만 아니라 환절기에 찾아오는 감기는 소아와 성인 천식환자 모두에서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관지 천식의 증상 악화를 가져오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 또, 황사나 꽃가루 등은 알레르기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32)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네이버 지식백과, “직업성 천식.”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7083&cid=51007&categoryId=51007>>

[그림 III-20]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국민건강통계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천식 유병률은 2011년 3%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비염은 2007년 12%였지만 2011년 14.5%까지 늘었다.

본 조사에서 천식 질환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숨막힘, 가래 없는 마른 기침) 호소자의 수준을 평가해 보았다. ‘숨막힘’을 호소하는 응답자 수는 30명이었고 전체 응답자의 6.4%였다. ‘가래 없는 마른 기침’ 증상 호소자는 91명이었고 전체 응답자의 19.5%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만성화된 수준으로 살펴보면 약 60%는 ‘2~3달에 한 번 이상’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만성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1달에 1번 이상’의 증상 호소자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466명 응답자 중 10명이 만성적인 수준의 숨막힘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증상 호소율은 2.2%가량으로 나타나 국민 전체 유병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봉제작업을 하면 더 심해지거나 일이 없으면 증상이 완화된다는 사람이 증상호소자 중 30% 내외로 나타나 직업 관련성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숨막힘 증상의 완화와 심화 수준을 구체화한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현 설문 결과를 반영한 추측은 취약한 주장으로 그칠 수 있다. 이후 질환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얻어 증상의 심각성을 측정해야하며,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추론을 시도해야할 필요가 있다.

&lt;표 III-46&gt; ‘숨막힘’ 증상의 빈도

	1달에 1번 이상	2-3달에 1번 이상	6개월에 1번 이상	1년에 1번 정도	합계
응답자(명)	10	6	8	3	27
구성비(%)	37.0%	22.2%	29.6%	11.1%	100.0%

&lt;표 III-47&gt; ‘숨막힘’ 증상의 변화

	일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증상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봉제 작업을 하면 증상이 심해진다	일을 하지 않는 날에는 증상이 없어지거나 완화된다	합계
응답자(명)	11	9	8	28
구성비(%)	39.3%	32.1%	28.6%	100.0%

‘가래 없는 마른 기침’은 천식을 우려해볼 수 있는 증상으로, 연구설계 시 호흡기질환의 경험을 판단하기 위해 이 문항을 선택하였다. 응답자 466명 중 91명(표 3-40에 따르면, 85명, 26번문항인 경험 증상 체크 인원은 91명, 26-1 증상경험 빈도 체크에는 6명이 무응답한 것으로 보임)이 마른 기침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19.5%의 증상 호소율을 보였다. 그러나 ‘1달에 1번 이상’의 만성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응답자가 36명으로 최대한 증상 호소율로 추정할 수 있는 규모는 7.7% 수준으로 그리 높지는 않았다.

&lt;표 III-48&gt; ‘가래 없는 마른 기침’ 증상의 빈도

	1달에 1번 이상	2-3달에 1번 이상	6개월에 1번 이상	1년에 1번 정도	합계
응답자(명)	36	26	16	7	85
구성비(%)	42.4%	30.6%	18.8%	8.2%	100.0%

<표 III-49> ‘가래 없는 마른 기침’ 증상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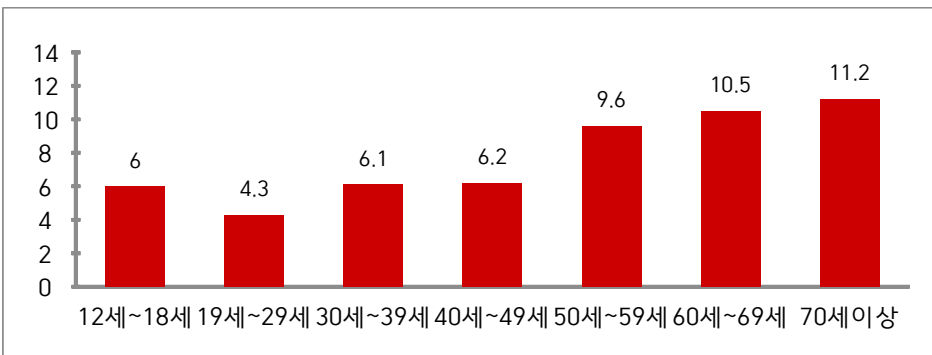
	일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증상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봉제 작업을 하면 증상이 심해진다	일을 하지 않는 날에는 증상이 없어지거나 완화된다	합계
응답자(명)	24	21	40	85
구성비(%)	28.2%	24.7%	47.1%	100.0%

응답자 85명 중 봉제작업을 할 때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답한 사람과 일이 없으면 증상이 완화된다는 사람의 비율은 각각 24.7%, 47.1%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증상의 작업관련성을 의심해볼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설문을 후속적으로 진행하여 확보해야한다. 업무 수행 여부에 따른 증상의 완화와 심화에 대한 응답은 본 보고서에 삽입된 대부분의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봉제업체의 작업환경이 호흡기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한 측정하기 위해, 향후 조사는 변수 통제 하에 전문적인 설문 문항을 도입하여 추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2) 코 질환: 부비동염, 비염

축농증으로 알려진 부비동염의 유병률은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발표결과를 참조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비동염의 증상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봉제노동자와 유사한 연령 그룹인 50대에서의 유병률은 9.6%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II-21] 연령별 부비동염 유병률(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본 조사에서는 비염의 증상 호소율은 ‘1달에 1번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집단으로 한정했을 때 49명(10.5%)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인구집단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봉제작업 시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일이 없으면 증상이 완화된다는 사람이 증상호소자 중 35% 내외로 나타나 상당 부분이 직업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표 III-50> ‘비염(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 증상의 빈도

	1달에 1번 이상	2-3달에 1번 이상	6개월에 1번 이상	1년에 1번 정도	합계
응답자(명)	49	46	32	17	144
구성비(%)	34.0%	31.9%	22.2%	11.8%	100.0%

<표 III-51> ‘비염(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 증상의 변화

	일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증상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봉제 작업을 하면 증상이 심해진다	일을 하지 않는 날에는 증상이 없어지거나 완화된다	합계
응답자(명)	42	49	55	146
구성비(%)	28.8%	33.6%	3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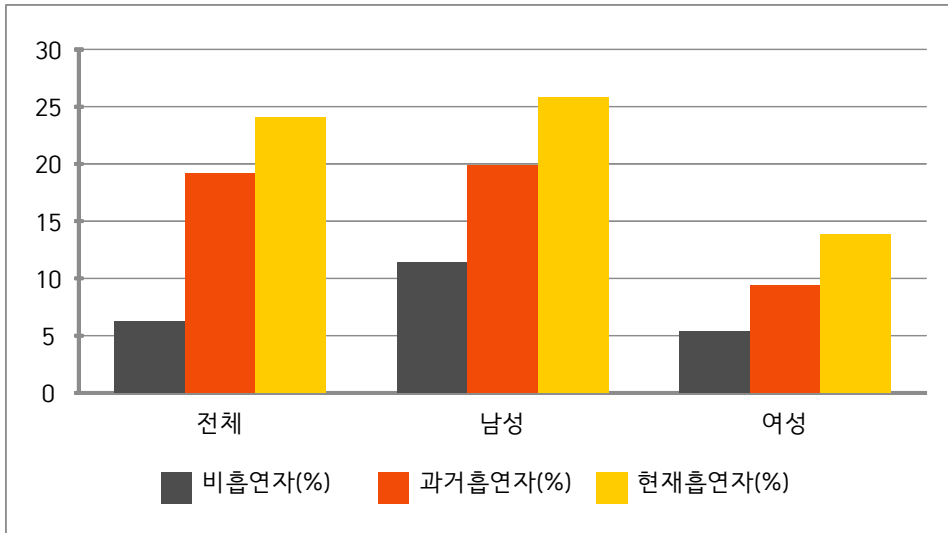
### 3) 만성폐쇄성폐질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40세 이상 성인에서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 (2009-2013)’ 보고서에서 2013년 만 40세 이상 성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은 13.5%이며, 여자(6.8%)에 비해 남자(20.6%)가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은 2009년 10.5%에서 2013년 12.8%로 2.3%p 증가하였으며, 남자의 경우 2009년 17.1%에서 2013년 20.7%로 3.6%p 증가하였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자에서 더 두드러진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란 흡연이나 대기 중 오염물질 등에 의해 기도에 비정상적인 만성염증반응이 반복되면서 폐실질 조직이 파괴되어 기도의 염증으로 인하여

기도가 좁아지는 질환이다.

[그림 III-22] 40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2009~2013)



\* 출처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질병의 진행에 따라 만성적인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운동능력 저하, 잦은 호흡기 감염 등의 문제로 발전하는 심각한 질환이지만 질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별다른 자각증상이 없다. 최근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꾸준히 10대 사망원인에 포함되고 있으며, 2013년 사망원인 순위 중 만성하기도 질환이 7위를 차지하는 중한 질환이다. 본 조사 결과를 가지고 만성폐쇄성폐질환자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다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증상인 ‘1달에 1번 이상’ ‘가래를 동반한 기침’을 호소하고 있는 응답자는 22명(4.7%)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평균 유병률과 비교하면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상호소자의 30% 수준에서 ‘업무 시 증상악화’를 호소하고 있어 작업관련성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lt;표 III-52&gt; ‘가래를 동반한 기침’ 증상의 빈도

	1달에 1번 이상	2-3달에 1번 이상	6개월에 1번 이상	1년에 1번 정도	합계
응답자(명)	22	19	16	4	61
구성비(%)	36.1%	31.1%	26.2%	6.6%	100.0%

&lt;표 III-53&gt; ‘가래를 동반한 기침’ 증상의 변화

	일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증상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봉제 작업을 하면 증상이 심해진다	일을 하지 않는 날에는 증상이 없어지거나 완화된다	합계
응답자(명)	19	18	24	61
구성비(%)	31.1%	29.5%	39.3%	100.0%

과거에 앓은 질병 중 호흡기와 관련된 질병을 선택하는 문항에는 30명이 과거에 호흡기 관련 질병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비염과 천식을 주로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집단보다 증상 호소율이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다. 그러나 이 결과를 토대로 봉제업 노동자의 작업과 호흡기 질환 발병 간의 개연성이 낮다고 단순히 해석하기는 어렵다. 인터뷰에서는 ‘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호소가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종사자들이 작업환경과 호흡기 증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본 조사 중 ‘최근 3년 사이 동료 중 호흡기 또는 폐질환으로 일을 그만 둔 경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약 16%가 ‘그렇다’고 응답한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호흡기 질환이 심한 노동자가 이미 일을 그만둔 상태일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바 있는 ‘건강한 노동자 효과’로 인해 호흡기계의 증상이 과소화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응답에서는 호흡기 질환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봉제업 종사자들은, 직급과 무관하게 분진이 많은 작업장에서 일하며 불편을 겪는다고 증언했다.

“(천식이나 기관지염은) 저는 없는데 지하에서 하시는 분들이 공기가 안 좋으니까.. 결핵도 봤어요. 뭐든지 자기 관리 같긴 해요.”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지. 예를 들어

세 싸다고 지하하면 몸 망가지는지 모르고 일하면....작업하면 안되는 환경에서 하시는 분도 많고.” (R, 노동자)

“기침은 거진 달고 살아요. 겨울에는. (비염 등 코 질환을 앓는) 그런 분도 있어요. 겨울에는 문을 닫아 놓잖아요 마스크를 쓰죠.” (D,노동자)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여름에 마나 이런 거 하면 기침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입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스크를 쓴다는 것도 답답하고, 1층이나 2층 환경 좋은 데서 하면 세가 비싸니까 지하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A, 사업주)

설문 결과는, 봉제업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건강상의 위험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건강문제의 심각성을 명백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호흡기 관련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천식 표준설문지를 사용한 후속적 조사와 이학적 검진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면담조사에서 언급된 각 노동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지표화하여야 적절한 정책을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작업성질환의 성격을 지니는 증상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검진 외, 진단과 치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질환에 대한 다양한 조사도 동일한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4) 질환관련 규제

‘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장 내 환기를 충분히 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서 분진에 대한 사업주 예방조치가 이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봉제 작업장은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창문을 통해 전체 환기를 하거나 작은 규모의 환풍기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 공간의 경우는 이조차 없다. 먼지의 밀도에 따라 제한적 혹은 전체 환기를 통해서 빠져나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사 빠져나가더라도 집진시설이 없으면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는 봉제 사업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원성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소음을 최소화한 소형 집진기 또는 집진시설을 설계하여 보급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중 분진에 대한 사업주 예방조치 사항

제4조의2(분진의 흘날림 방지) 사업주는 분진이 심하게 흘날리는 작업장에 대하여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이 흘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2조(후드)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흠(fume), 미스트(mist),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하 "분진등"이라 한다)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發散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후드(hood)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4.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제73조(덕트)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의 덕트(duct)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제74조(배풍기)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정화 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排風機)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빨아들여진 물질로 인하여 폭발할 우려가 없고 배풍기의 날개가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 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75조(배기구)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는 제외한다)의 배기구를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76조(배기의 처리)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는 장치나 설비에는 그 분진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수·연소·집진(集塵)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에 의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7조(전체환기장치)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체환기장치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송풍기 또는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덕트의 흡입구를 말한다)는 가능하면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송풍기 또는 배풍기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 ① 사업주는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분진 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조정판을 설치하여 환기를 방해하는 기류를 없애는 등 그 장치를 충분히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소결

봉제업 노동자들은 작업의 특성상 옷감의 먼지와 실밥, 염색과 가공을 위한 화학물질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오랜 시간을 같은 자세나 관절 등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유지한 채 일을 해야 하는 물리적인 부담을 많이 지고 있다. 산업구조의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노동조건이 열악할 뿐 아니라, 시장의 유통구조 특성상 업무상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당일 주문을 받아 당일 제조와 납품을 마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봉제노동자들은 전반적으로 업무강도와 심리적 압박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고강도 노동과 낮은 임금에 더하여, 봉제업 종사자들은 작업방식과 작업장환경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질환, 피부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을 위험이 더 높다. 봉제노동자는 근로환경조사에서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40대 이상의 일반 여성노동자에 비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조사대상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건강 상 문제에는 연령 변수의 영향이 존재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봉제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 아래 부정적인 건강상태를 경험하고 있음은 개연성이 있는 사실이다. 봉제 노동의 특성과 작업환경에 맞추어 이러한 위험을 완화시켜주어야 한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봉제 노동자들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노동환경은 많은 작업량과 노동시간, 낮은 임금이었으며 열악한 작업환경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봉제노동자들은 잘 환기가 안 되는 작업장, 소음, 좁고 불편한 작업공간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물리적, 심리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업무 중 식사장소인데, 응답자의 2/3 이상이 내부에서 식사를 하지만, 대부분 별도의 공간 없이 작업대 위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저녁식사시간은 30분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는 단순히 작업환경의 열악성을 넘어서, 과도한 업무량과 촉박한 작업시간이 간접적으로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환경과 비교하였을 때, 봉제업 종사자가 진동, 소음, 냄새에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노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작업을 하는 의자 자체에 대한 개선 욕구도 높게 나타났으나, 단순히 조금 더 개선된 규격화된 형태로 작업대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작업대가 작업장 전체 구조와 이미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일부분의 개선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노동자들이 기존 작업대에 익숙한 작

업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비 개선안이 도입 되더라도, 실용적 차원에서 작업자들이 새로운 장비에 익숙해지기까지의 교육과 점진적인 적응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다.

몸이 아파도 근무한 일수는, 근로환경조사 표본의 해당항목 수치의 두 배가 넘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환경으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되지만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 특히 객공제 시스템(작업량만큼 보수가 결정되는)에 맞춰 일하는 경우 건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근로환경조사 표본과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비교하기는 어려웠으나 피로, 불면증, 고혈압, 손상(사고), 청력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건강문제를 호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봉제노동과 관련한 특수 건강문제의 한 예로 옷감 화학물질을 다루면서 나타날 수 있는 피부염은 손 부분을 중심으로 타 직종의 노동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인식된 A지역에서 더 두드러져, 작업량과 강도에 비례하는 문제임을 추정할 수 있다. 급박한 납기 기한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져, 소변을 참는다는 것은 개별 노동자의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휴식과 질환과 관련해 개선되어야 할 상황이다. 상술한 문제들은 개별 노동자가 당연히 감내하는 상황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개선을 시도하는.

봉제노동자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지역 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A지역의 봉제노동자는 피부염 노출뿐만 아니라 작업량과 요구 시간의 압박이 심했으며, 노동환경 인식 심각도와 주관적 건강 인식, 실제 건강 문제도 B지역 노동자에 비해 일관되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지역이 특정 상권을 둘러싸고 빠른 업무수행을 해야 한다는 부담뿐만 아니라 객공제 중심의 생산지라는 점에서 일부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객공의 경우 월급제나 시간제에 비해 더 좋지 않은 건강문제를 갖게 된다는 해외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본 연구에서 조사를 시행한 서울시 내의 봉제업을 살펴보면 대개가 소규모 작업장인 탓에 제대로 된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개별 작업장에 그 역할을 맡겨둔 채 방치되어 있으며, 작업장의 안전 문제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봉제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건강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대안이 필수적이다. Jailer et al(2015)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계에 보조 장치 설치, 반복 작업에서 오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쉬는 시간 갖기, 청력 보호 장구 착용, 적절한 조명 제공, 화재의 위험에 대한 대비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노동환경의 개선은 즉각적으로 노동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물리적 조건인 노동환경 개선과 함께, 노동시간,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봉제노동자들이 건강을 해칠 위험성을 갖고 일하는 까닭은 꾸준한 일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산업 전체의 구조에 내재된 한계를 인지하고, 봉제노동자에게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을 고찰해야 할 것이다.

## IV. 대안과 과제: 건강문제 예방과 개선 방향

4장은 3장에서 분석한 건강 문제와 업무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의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고찰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더불어 현장에 적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봉제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체감하는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을 제고하려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과제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이 호소하는 세세한 증상과 불편을 인지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자원 투입을 용이하게 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3장에서 다른 노동자가 경험하는 ‘건강 안전의 문제’에 대한 1차적인 방침으로 ‘적절한 휴식’의 확보는 중요한 개선안이다. 4장 1절에서는 휴식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이를 위해 봉제업 노동자의 휴식실태와 ‘휴식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것이다.

봉제업 종사자의 노동 패턴은 많은 체력 소모를 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근골격계 및 호흡기 질환에 대한 예방조치가 소홀히 이뤄지고 있다. 건강 문제의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고강도의 노동을 수행하며 질환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을 향상 방법을 추구하기 이전에 이러한 구조적 차원을 인식해야한다.

2장에서 산업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업체의 영세성, 당일 출고·생산시스템이라는 봉제업의 특수성은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건강 악화 문제와 연동된다. 대부분의 영세한 봉제업체가 내수시장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상황에서, 당일 주문-당일출고로 관행화된 작업 패턴에 맞추어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작업량과 작업속도에 따라 모든 생활 패턴을 맞추기 때문에 봉제업계에서 적정 휴게시간과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여가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생활환경과 노동환경 속에서 봉제산업 노동자들은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직업성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며, 적절한 작업환경 개선과 시설 개선 작업 노력이 요구된다.

## 1. 적절한 휴식 보장

### 1) 휴식과 일에 대한 전반적 인식

3장 소결에서도 언급했듯이,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개선안 중에는 ‘적절한 휴식의 보장’이 있다. 노동자에게 질적·양적 측면을 모두 만족시키는 충분한 휴식이 제공된다면, 만성적 피로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문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운동 부족, 혹은 휴식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심화되는 다양한 만성질환은 양질의 휴지를 보장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의 노동 및 휴게 조건과 휴식에 대한 봉제노동자의 인식을 함께 검토한다면 봉제노동자에게 바람직한 휴식의 형태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조사한 휴게관련 문항은 대안을 설정함에 있어 유용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대안으로써의 휴식을 적실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장시간 노동과 휴게시간에 대한 봉제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는데, 휴식 부족의 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것이 면담조사 결과에서 드러난다.

“9시 출근해서 끝나는 시간이 대충이 없어요. (일하는) 시간이 좀 일찍 끝나면 좋겠어.”

“집에 가면 9시가 넘어요, 한 시간만이라도 일찍 (끝나면) 좋겠어요.”

(O, Q, 노동자)

노동자들은 많은 작업량을 소화하기 위해 장시간동안 반복 작업을 수행하며 어려움을 겪는다. 노동자들은 일상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까닭을 부담스러운 작업 여건에서 찾고 있다. 과도한 작업과 부족한 운동 시간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만한 휴식시간의 양과 질을 추구해야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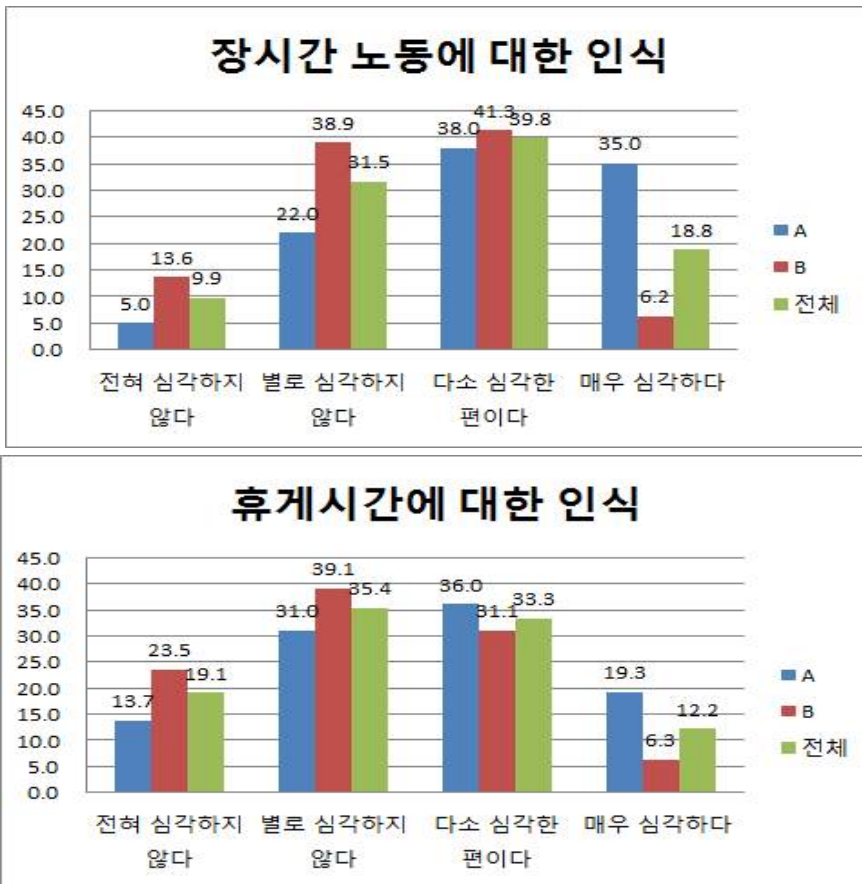
“운동을 못하잖아요, 고지혈증이 많다니까?”

“일 하다가 중간 스트레칭이라도 하면 좋은데 너무 바쁘니까, (작업을)빨리 해야 하나까 30초라도 (스트레칭)할 시간이 없지.” (A, C, 사업주)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시간 노동과 휴게시간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은 [그

림 IV-1]과 같이 드러난다. 이 절에서 일과 휴식 현황, 여가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3 장에서 분석한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이다. 따라서 휴식을 통한 문제의 개선을 논하기 위해 살펴볼 데이터는, 특수한 지역 단위의 결과를 포함한다. 5개구 실태조사 응답자 모두를 아우르는 설문 대상 전체를 비롯해, 앞서 구분하였던 A지역(시장상권)과 B지역(비시장상권)이라는 지역단위는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아래 그래프에서 드러나듯이, 장시간 노동과 휴게시간에 대한 인식에서 심각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은<sup>33)</sup> 각각 58.6%, 45.5%이다.

[그림 IV-1] 전반적인 휴식과 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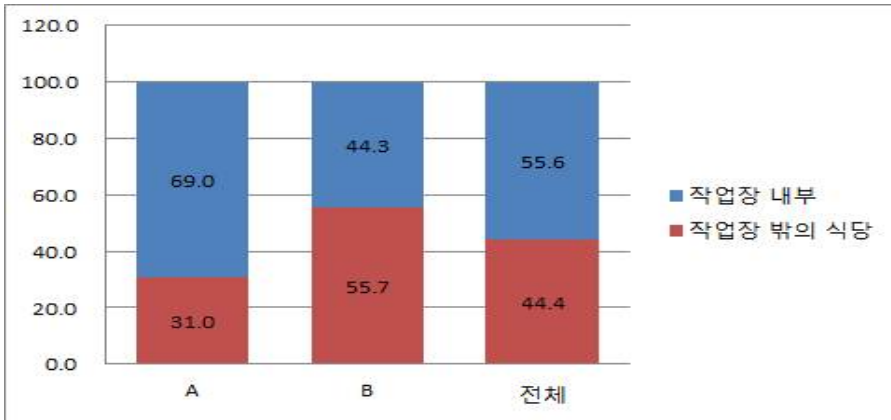
33) '심각하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해당 설문 문항의 선택지 중에서 '다소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 2) 업무 중 식사 현황

업무 중 식사 시간과 식사 장소도 휴게시간과 휴게장소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안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1시간의 유급점심시간은, 작업장이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일터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적절한 척도다. 점심시간과 식사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문제가 부상하는 현실을 비추어보면, 양질의 점식식사 시간의 보장은 적절한 휴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써 충분한 항목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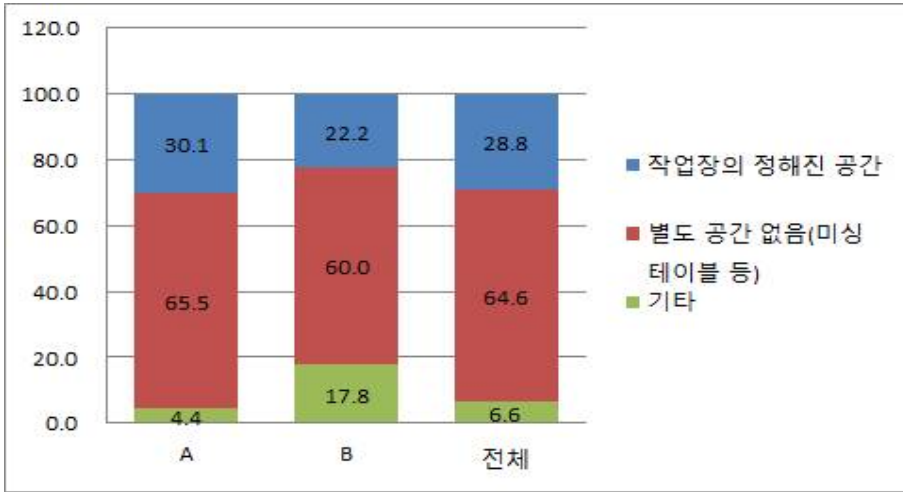
업무 중 식사 장소에 대한 응답은 [그림 IV-2]와 같이 나타났다. A 지역 응답자는 69%가 내부에서 식사를 했고 이들 중 65% 정도가 별도 공간 없이 작업대 등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그대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작업장 환경의 문제 뿐 아니라 불규칙한 식사시간과 짧은 휴게시간이 문제임을 보여주는 수치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다. B 지역은 내부에서 식사하는 비율이 44.3%이면서 이들 중 60%가 별도 공간 없이 작업대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34)기타 응답으로는 보조대나 테이블, 사무실 등이 있었다. 두 지역의 응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그림 IV-2] 업무 중 식사 장소



34) 사전 답사 중에 연구진이 목격한 바에 따르면, 별도의 휴게공간이나 식사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답사한 공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배달된 점심을 먹는 경우가 많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취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림 IV-3] 작업장 내부 식사장소



작업장 안의 작업대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봉제산업 노동자 다수의 응답에는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어려운 상황을 투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업무량을 소화하기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불편한 점심시간을 보내는 경향은, 봉제업체의 공정이 육체적인 부담이 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점심식사 장소는 건강 상태 향상과 악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작업장 내부를 식사장소로 삼는 경우, 건강에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휴게 중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작업공간에서 식사를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동절기와 하절기에 냉난방을 위해 문과 창문을 닫고, 작업과 식사를 하며, 호흡기에 부담이 되는 환경에 종일 노출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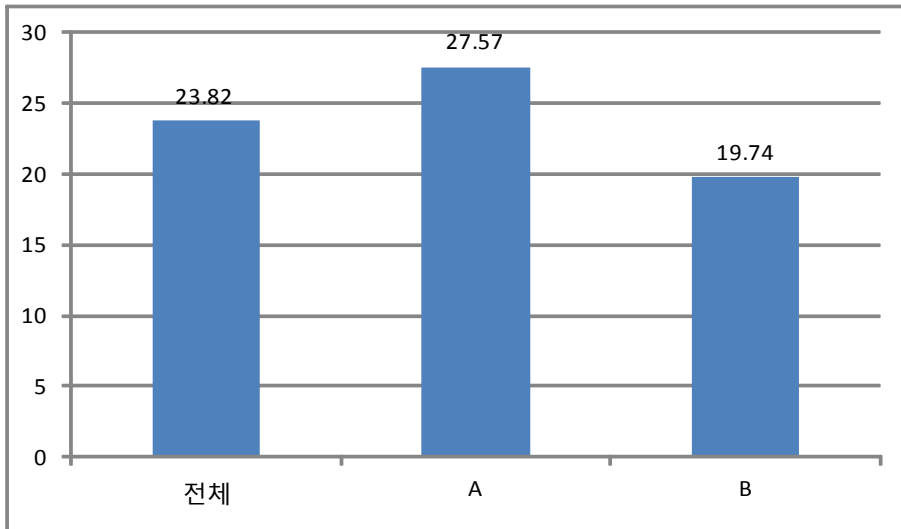
### 3) 프리젠티즘(Presenteeism)

프리젠티즘(presenteeism)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나, 현재 노동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될 때에는 “아픈 상태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인다(Johns, 2010). 존스(Johns, 2010)는 아론슨(Aronsson)과 에반스(Evans)가 정리한 개념을 소개하며, 아픈데도 출근하는 ‘프리젠티즘’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프레젠테이션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휴식과 일의 수준의 정도와 그 적절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sup>35)</sup>

본 연구에서도 지난 1년 동안(2014)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을 한 날을 질문했다. 이 문항에 응답자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봉제노동자들에게서 지난 2014년 1년 간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을 한 날을 보면 지역별 구분 없이 전체에서는 23.82일로 나타났다. A지역에서는 27.57일, B지역에서는 19.74일로 A지역의 노동자가 좀 더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을 한 날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지역 간의 평균차이를 살펴본 <표 IV-1>을 보면 두 지역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 지역별 지난 1년 동안 몸이 아파도 나와서 일을 한 날 수



35)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노동자가 근무를 강행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의미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체력적인 부담을 갖고 근무를 하다보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직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건강하지 않은 노동자가 무리한 근무를 경험하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상황이 생기면, 의료비 부담의 증가와 실업 및 빈곤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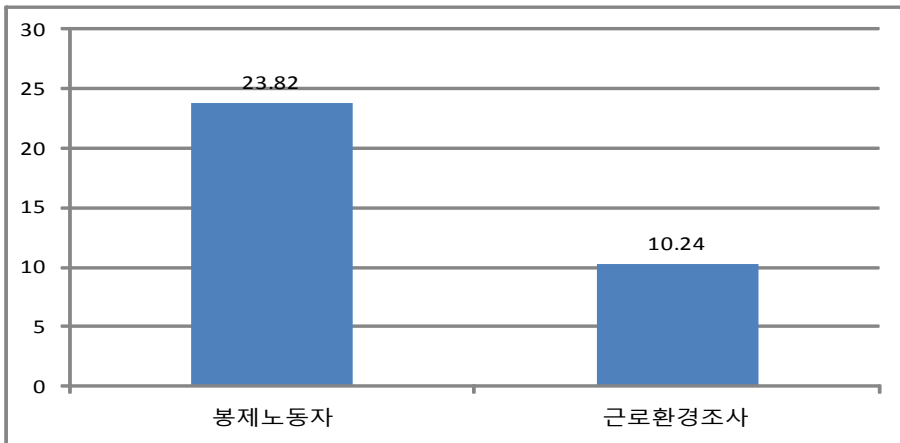
<표 IV-1> 지역별 지난 1년 동안 몸이 아파도 나와서 일을 한 날 수

		A	B	전체	t값
아픈데도 일을 한 날 수	빈도	186	171	357	1.2598
	평균(일)	27.57	19.74	23.82	

40~50대 이상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봉제노동자와 근로환경조사의 40대 이상 여성 집단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봉제노동자는 아파도 나와서 일한 날 수가 23.82일로 나타난 것에 반해, 근로환경조사에서는 10.24일로 드러나 양자 간의 확연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봉제노동자와 근로환경조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높은 유의수준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봉제노동자가 유사한 연령의 다른 여성노동자들에 비해 몸이 아파도 불구하고 일을 한 날이 많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봉제 작업장은 많은 작업량, 신속한 생산과 납품을 통해 운영되는 특수한 공간이다. 개별 노동자의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봉제 업종에서는, 결근을 대체할 인력을 즉각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와 같은 봉제 공정과 유통구조,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할 때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각 업체의 일정과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병가 사용 가능여부가 결정되며, 사업주와 노동자의 경계가 모호한 봉제업계에서는 거의 모든 종사자가 아픈 상황에도 출근하여 할당 작업량을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IV-5] 조사별 지난 1년 간 몸이 아파도 나와서 일한 날 수



&lt;표 IV-2&gt; 조사별 지난 1년 동안 몸이 아파도 나와서 일을 한 날 수

		봉제 노동자	근로 환경조사	t값
아픈데도 일을 한 날 수	빈도	357	4783	8.9775***
	평균(일)	23.82	1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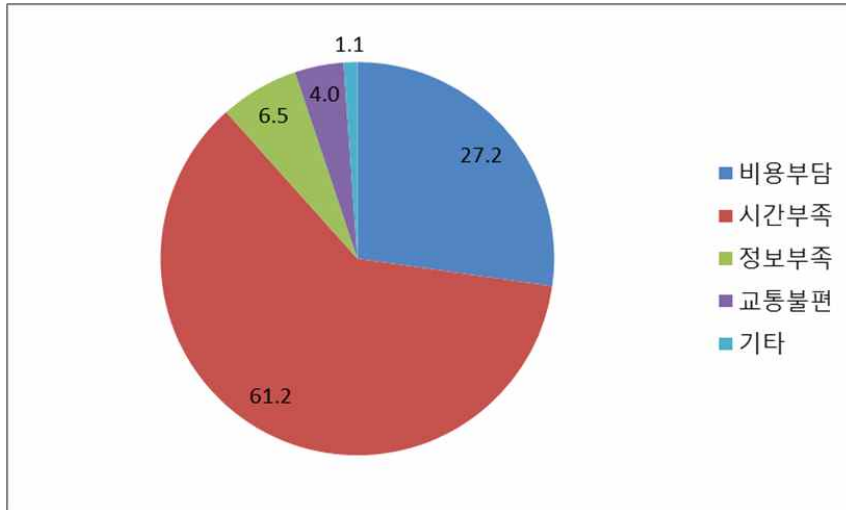
#### 4) 휴식의 질적 측면: 봉제노동자의 여가 수요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적절한 휴식’은 적정 휴식 시간을 의미하는 동시에, 질적 차원에서의 충분한 휴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양질의 휴식을 통해 작업 자세와 환경에서 비롯된 각종 증상과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4항에서는 봉제업 종사자들이 원하는 여가와 휴식을 살펴본다.

건강 문제는 노동시간과 휴식, 사회보장, 경제적 안정, 정서적 안정감 등 다양한 변수와 연관되어 있다. 설문지의 마지막 항목인 봉제노동자의 여가 선용에 대한 수요를 파악 하는 것은 봉제노동자 건강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양질의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자들을 지원할 때, 수요자 중심의 정책은 이 문항의 결과를 통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봉제노동자가 원하는 여가와 문화 활동에 대한 질문은 노동자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단편적으로나마 살필 수 있는 기회이다.

설문 조사와 면담 조사에 따르면, 봉제노동자들은 운동과 문화생활, 여행 등 다양한 방면에 여가를 누리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은 여가를 누릴 시간이 전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가·문화 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466명의 응답자 가운데 58.8%(274명)의 응답자가 시간 부족을, 돈·비용이 들어서 여가·문화 활동을 못한다고 답한 노동자가 26.2%(122명), 관련정보가 부족하다고 한 응답자는 3.9%(18명)였다.

[그림 IV-6] 여가, 문화 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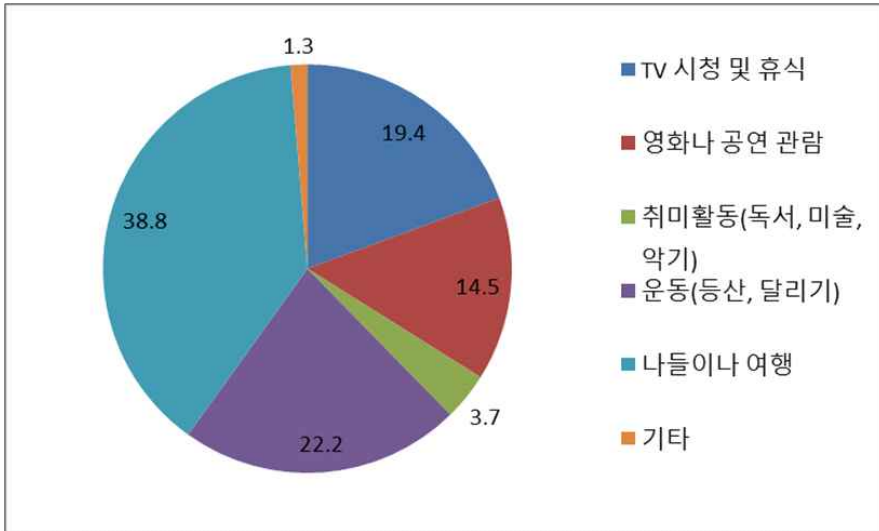
장시간 노동이라는 부담 외에도, 봉제노동자들의 여가 확보가 어려운 배경이 있다. 대부분의 봉제 노동자들은 중년 이상의 여성이며 공장에서의 노동시간 외에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이들 봉제노동자에게 기대되는 성역할은 작업장에서의 성별분업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가사 노동 부담의 과중으로도 연장되기 때문이다. ‘어머니’ 혹은 ‘주부’로서의 역할에 높은 비중을 두고 생활하는 봉제 노동자들은 퇴근 후에 집안일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장 밖에서도 충분히 쉴 수 없다. 가정과 작업장이 여성 봉제노동자들의 일터이기 때문에 여가 시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휴식을 취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가활동을 통해 정서적 스트레스의 해소와 신체 건강의 향상을 중년 여성의 건강 향상과 규칙적이고 꾸준한 여가활동, 이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하루 종일 실밥 따고 컴퓨터 갈 시간이 없어요. (육체 노동 후 음주가 잦은지에 대한 질문)술 먹을 시간도 없는데, 씻고 자기 바쁘다고”(M,노동자)

“집에 가서 식구들 밥 해야지, 쉴 시간이 어디 있나...(중략)...운동도 새벽에 시도는 했어요, 잠 덜 자고, 수영.. 못 일어나서 못가, ” (P, 노동자)

[그림 IV-7] 여가가 생긴다면 하고 싶은 활동



여가가 생기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나들이·여행을 가고 싶다는 응답이 37.8%(176명)로 가장 많았다. 등산·운동을 선택한 응답자가 21.7%, TV시청·휴식을 선택한 경우는 18.9%로 나타났으며, 영화·공연관람을 선호하는 비율은 14.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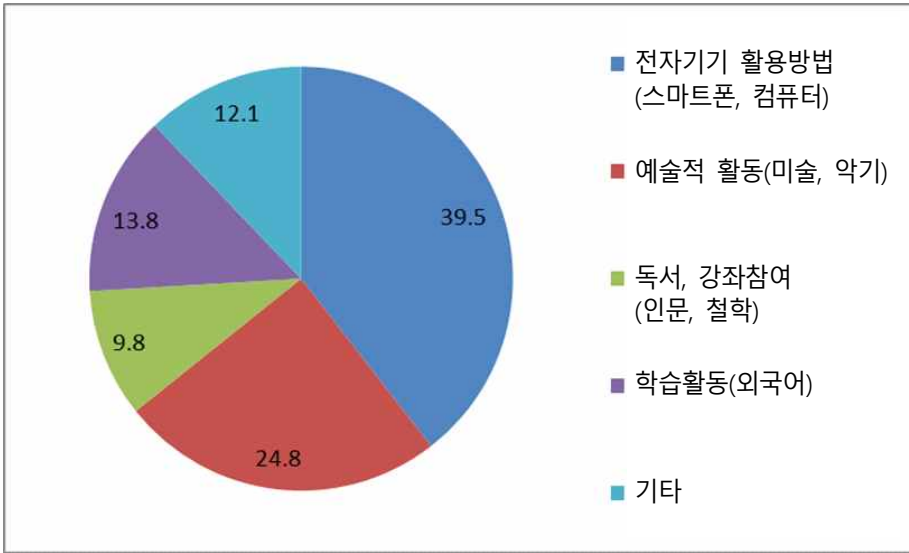
집단적인 여가 문화의 존재여부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여가 생활 및 개인 학습에 대한 욕구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터 외에서의 삶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쉼터 등의 시설을 이용할 의지도 강하게 나타났다.

아래의 인터뷰에서는 기술과 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취미활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드러난다. 취미생활에 대한 계획과 학습욕구는 양질의 여가생활에의 관심을 투영하는 것이다.

“배우고 싶은 거 많죠, 난타, 악기, 컴퓨터, 노래도 배우고 싶고, 기타도 배우고 싶고, 컴퓨터, 스마트폰 쓰는 거 배우면 좋을텐데,” (O, 노동자)

학습,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36.3%(169명)의 노동자가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미술·악기연주 등 예술활동 22.7%(106명), 외국어·한자 학습이 12.7%(59명), 인문학·철학 등 강좌를 원한 응답자가 9%(42명)였다.

[그림 IV-8] 여유 시간이 주어진다면 배우고 싶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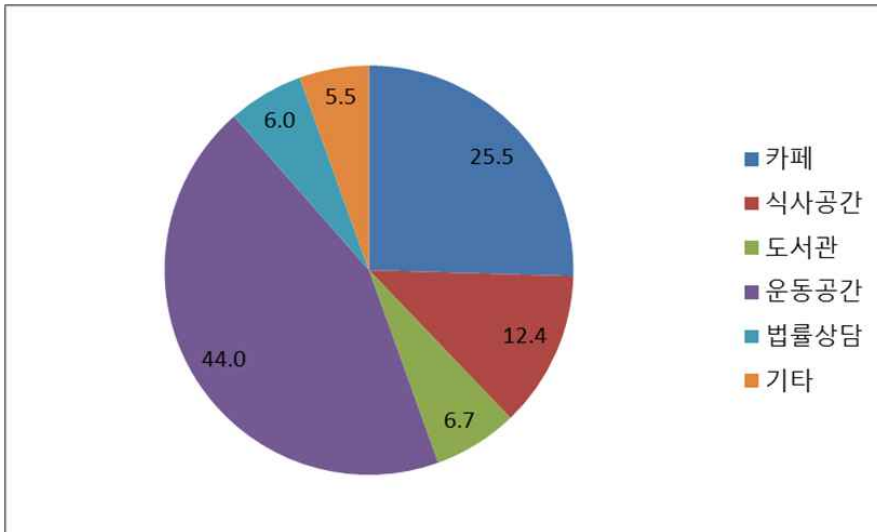
봉제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뿐만이 아니라 공간적 제약 탓에 양질의 휴식을 누리기가 어렵다. 봉제 노동자는 일과의 대부분을 의류봉제업 집적지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보낸다.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근처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설문 결과로 나타난 학습 및 예술 활동에의 참여는 필연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부 응답자들은 모여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함께 모여 답소를 나눌 공간 자체가 없으며, 취미나 흥미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이다. ‘휴식 공간의 부재’라는 문제는 봉제업 집적지에는 여가 선용을 위한 기반이 취약한 상황을 드러내는 지점이며, 노동자들이 정서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어려운 처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질 않으니 잘 모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나오면 일하고 끝나면 집에 가고 이러니까...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하니까.” (D,노동자)

“시장 제품하는 사람들은 같이 안 어울려요. 내가 이렇게 재단했는데 따라하고 팔아먹는다 말이에요. 잘 안 어울려요. 점심밥 같이 먹는 건요? 만나서 밥 먹으면 어느 집은 악독한 집, 어느 집은 돈이 없어 찢찢때는 집서로 얘기하고 알게 되는데 안 모이죠.” (Q, 노동자)

업무지역에 필요한 시설-공간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휴식 공간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봉제업 종사자들이 스스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며 필요로 하는 분야를 가늠하는 데에 유용하다. 노동자가 일하는 작업장이 있는 지역에서 필요한 공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운동공간을 원하는 응답자가 41.2%(192명)였고, 23.8%(111명)의 노동자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카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직장동료들과 식사할 수 있는 공간에 11.6%(54명)의 노동자가 응답하였고, 그 밖에 도서관, 법률상담 공간 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그림 IV-9] 업무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



면접조사에서는 중년 여성 노동자들은 현재 생활과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로써, 건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아래와 같이 노동자가 스스로 제시하는 ‘쉼터’ 구상은 자신의 수요에 맞추어 활용도가 높은 방법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신체의 피로를 해소하고, 봉제업 종사자들이 마주하는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하는 것이 봉제노동자가 원하는 휴식의 핵심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군데서 컴퓨터 교실도 있고, 안마기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밤에 라도 진료 하면 좋죠. 봉제공장마다 접수를 해서 회비를 받는다든지 해서 오늘은 사랑방에서 물리치료가 있고 알려주고...” (M,N, 노동자)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일을 할 경우,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

성이 높아진다. 여가 시간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거나, 다양한 배움과 놀이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여가 활동은 정서적 건강을 회복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Jung, 2005; Um, 2006 ;정명실·송지호, 2011에서 재인용) 여가를 활용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정신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많은 봉제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의 장시간 노동과 더불어 가사 노동으로 인한 ‘과잉 노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일종의 ‘시간 압박’<sup>36)</sup>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갖는다거나 재충전 기회를 가지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절대적인 시간 부족, 업무과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영역의 대안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건강 향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장시간 노동이라는 특성은 봉제 산업의 구조적 측면과 관련된 것이기에 단기간 내에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시간압박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와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미시적인 노력은 필요하다. 휴게시설과 운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여가 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장벽-이러테면, 학습 활동 등에 드는 비용을 낮추는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와 여가활동의 지속을 위하여 특정한 공간 마련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공간을 마련하여, 활용성을 높인다면, 봉제업 종사자 간의 상호 정보 교환과 사회적 지지를 활성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영세사업장이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는 봉제 산업의 특징을 고려하면, 공장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청파 봉제 사랑방’과 같은 상호 정보교환, 사회적지지, 여가 프로그램 수행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유의미한 행보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공간을 중심으로, 현장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향상 프로그램의 도입과 참여 활동의 확대 등을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공식적인 공간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여가와 휴식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유사한 맥락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36) 시간압박은 과잉노동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부과되는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이 크고, 이에 따라 시간압박을 체감하는 경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제이콥스, 거슨, 2010) 중년여성 비율이 높은 봉제노동자들이 가정에서의 일과 일터에서의 작업을 포함한 ‘과잉 노동’을 수행하며 충분한 여가를 갖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 2. 기존 지원책의 확대·지속

앞의 절에서는 충분한 휴식과 여가 선용을 통해 작업의 부담과 직무 스트레스를 줄여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확보하여 양질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조성되는 조건’이기에, 이 절에서는 휴식을 통한 건강증진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주로 다룰 것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받는 작업환경 개선책과 사무지원 등을 필두로, 봉제업계에 대한 다양한 산업지원책을 확대하는 방향을 점검하고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안을 매칭하여 살펴보면, ① 작업환경 개선, ② 행정·사무지원, ③ 의료보건 차원의 건강관리, ④ 교육·상담 4가지 카테고리로 유형화할 수 있다. 현행 지원책은 주로 작업장 시설 개선과 봉제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교육 차원의 의류제조 기술 교육과 봉제 마케팅 방향에 대한 정보 공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은 ‘패션봉제종합지원센터’나 서울시에서 설립을 추진한 ‘청파봉제사랑방’처럼 행정적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기술·교육 지원과 산업진흥책을 총괄하는 기관을 운영하여 복합적인 차원의 행정적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 1) 작업환경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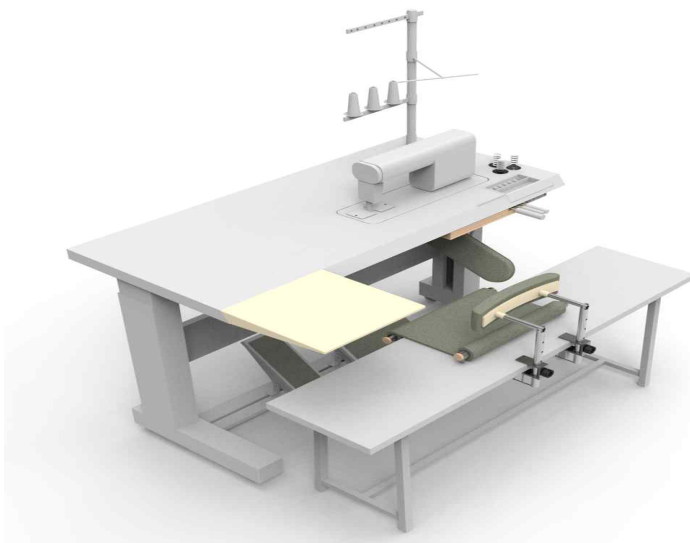
작업환경의 개선은 봉제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적 지원의 큰 틀에서 시도되어왔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부의 지원을 받는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다양한 실무 주체는, 각각 낙후 시설의 교체나 안전성 높은 비품을 봉제 업체 단위에 지급하는 등 원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봉제업체 전체 규모와 운영 현황 집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적인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그 수혜범주와 지원정책의 지속성 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봉제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노동자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이를 개선하여 실효성이 높은 방법을 찾아 주길 바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특히 봉제업처럼 작업성 질환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한 업종에서 작업환경은 중요한 이슈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접근인 클린사업장 조성과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에도, 주문과 납품 과정에서 시간부족이 심각하고 집

약적인 노동이 요구되는 만큼, 봉제노동자들은 대체로 불편한 작업환경을 감수하는 편이다. 작업장은 시설 면에서 업체 간 편차가 크고, 업종 별로 차이가 큰 편이다. 근골격계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원인에는 계절적 요인도 작용하는데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제도의 활용 외에 실용성 높은 작업시설개선안을 제시한다. 이는 3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제시되었던 작업의자를 개량하는 방안이다. 실태조사 중에 실시한 면담과 현장답사를 통해 완성된 작업의자개선안은 본 연구조사와 결합하여 추진되었다. 재봉틀과 작업의자의 불편한 지점을 직접 듣고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한 결과물이다. 디자이너는 인체공학적인 고려를 우선시하고, 면담조사를 통해 현장 노동자들이 제시한 작업용 의자 개선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의자개선안의 상세 내용은 보고서 말미의 부록으로 담았다.

[그림 IV-10] 작업대의의자개선안 (부록 1 참조)



## 2) 행정·사무지원

행정·사무지원은 노동자 건강향상과 무관한 부문처럼 보일 수 있으나, 다른 3가

지 분야에서 시행되는 정책의 수혜 여부를 결정짓는 행정적 절차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을 간과할만한 분야가 아니다. 사업체 등록률이 낮고, 폐업 및 공장이전이 잦은 봉제업계에서는 사업주가 고용 지속과 작업장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은 영세봉제업체에서 경영과 HRD(인적자원개발) 관련 훈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며, 노동자들의 기술 숙련 등을 위한 현장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지원사업도 관할하고 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2).<sup>37)</sup> 직업훈련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서울디자인재단, 중소기업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상공인진흥원과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 집적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인력 양성 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봉제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직무교육과 인적 관리를 위한 훈련 외에도,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운영 및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써, 지원 대상 업체에 직원의 임금을 일부 지원하거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근로자 10명 미만인 영세업체의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이다.<sup>38)</sup> 이는 산업과 업체의 운영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향이 강한 봉제업 종사자들에게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상술한 바에 따르면, 기존 정책이 작업장 환경과 종사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봉제 산업이 봉착한 근본적인 한계인 ‘업체의 영세성’과 ‘지속적이지 않은 일감과 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 인터뷰 결과, 노동자와 사업주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낮은 수준의 신뢰를 보였다. 사업주와 노동자는 현행 정책과 지원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수혜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횟수는 많다고 추정되나, 실제 수혜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각종 지원책에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였으나 담당자들과 기관에서 효율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여 성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음을 호소하였다.

37)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업주지원(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사업) <http://www.moel.go.kr/policyinfo/reclamation/view.jsp?cate=1&sec=5>; <http://www.moel.go.kr/policyinfo/reclamation/view.jsp?cate=1&sec=7>

38)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http://insurancesupport.or.kr/>)

지원책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봉제업체는 담당자의 설명에 따라 업체의 지원 대상을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간압박’<sup>39)</sup>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흐름은 봉제업 종사자가 전반적인 개선안에 참여하는 데에 장벽으로 작용한다. 봉제업 노동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카테고리-작업환경 개선, 의료 지원, 교육 및 상담 기회 확보-로의 접근성이 차단되게 되는 것이다.

### 3) 지속·확대 방향

기존 정책의 활용과 확대는, 현행제도의 안착을 위한 생산 현장과의 네트워킹 강화와 봉제 노동자·사업주 당사자들에게 각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이뤄져야한다. 특히 작업장의 시설 지원과 행정적 지원은 새로운 제도의 고안에 앞서, 기존 제도의 영향력과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작업시설의 인체공학적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서 수요도가 가장 높은 시설 및 환경 개선을 발굴해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선활동 평가 및 후속 사업 계획에 앞서 봉제 노동자들의 정책수요에 대한 조사도 정기적으로 추진될 필요성도 이에 있으며, 각 지원책 간의 중복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장에서의 적실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은 업계 및 종사자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사업자 등록 비율의 상승을 함께 유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

39) 작업량과 납기일의 촉박함으로 인한 시간압박이 본래 존재하지만, 행정서비스와 신청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비효율이 업무 부담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 3. 의료적 지원: 건강관리와 예방

1절에서 다루었듯이, 휴식을 통해 체력을 충전하고 심리적인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여가활동은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40) 양질의 휴식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특정한 방안은 아니지만,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시발점이 되며, 지속적인 직무 스트레스 완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유의미하다. 적절한 휴식은 직접적인 질환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예방조치와 동시에 추구되어야만 그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작업장에서 심화되는 건강 문제를 관리하고, 질환의 정도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 3장에서 지적한 만성질환, 피로, 근골격계질환, 호흡기 질환 등 건강문제는 직업환경의학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3절에서는 건강관리와 직결된 의료·보건 분야 지원에 대해 다룬다.

#### 1) 현행 제도와 실효성 검토

의료·보건 차원의 건강관리와 교육 및 상담 분야는 건강문제 해결과 직결되는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봉제노동자 지원책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은 보건관련 시설에의 접근성 부족과 연관하여 찾을 수 있다. 본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영세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봉제노동자들이 건강관리 대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또한, 지원 제도 활용을 위한 자격조건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되는 등, 제도 활용을 위한 접근 채널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건강향상 프로그램과 재활·관리를 위한 시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3 절에서는 기존 지원 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창구마련을 목표로 삼아야 함을 지적하고, 봉제업 종사자와의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체감도가 높은 지원방향과 항목을 반영한다. 더불어 본 연구조사의 의미가 현장 노동자의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추동하는 첫걸음을 던지는 것에 있기에, 현장에 직접 적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미시적인 노력이 누적되어야 서울시와 정부 수준에서 기획하는 정책이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

40) 기존의 여가활동과 휴식, 건강 간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밝혀진 일반론이기도 하다.

기 때문이다.

봉제업계에서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유사한 조건-작업량과 작업조건-에서 일을 한다. 노동자와 사업주는 모두 근골격계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과 같은 건강문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학적 건강검진에 대한 수요는 아래의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폐 검사라든가. 하루 종일 먼지를 안고 사니까. 운동이라든가. 그런 정도. 산재에서 주는 것 말고, 산재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 말고.(별도의 검 진행목으로)” (B, 사업주)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유해물질을 측정하여 작업 환경 개선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며, 직업성 질환과 질병을 확인 하여 예방적 조치와 관리를 취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sup>41)</sup> 각 사업은 신청 조건을 충족시키면 지원이 가능한 제도인데, 시설 지원 등을 신청하여 받은 경험이 있는 면담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장이 많고, 운영의 불안정성이 큰 편이기에 활용도 면에서는 다소의 한계가 있다. 기존 제도의 보완 확대를 위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

분진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위 면담자의 응답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제도화된 건강검진 외의 수요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업무 부담이 크고 시간압박에 시달리는 봉제업 종사자들에게 전문가의 조언과 건강 문제에 대한 관리가 더욱 일상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봉제업 외의 다른 일에 시간과 관심을 쏟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상적인 건강관리로써, 검진과 예방조치를 고안한다면 현장 노동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응답에서는 봉제업 종사자들이 센 업무강도, 주문량에 대한 압박, 수주 여부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상당한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적정 수준 이상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 등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방법의 고안도 필요한 실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과 치료도 줘.. (이게 필요한 이유는)스트레스죠. 어느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C,사업주)

41) 산업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

이어진 응답에서는 노동자 간의 관계, 사업주-노동자 간의 관계, 각각의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서적 안정감을 쌓고, 직장에서의 적응할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를 비축하는 과정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점들은 적절한 건강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직업으로 인한 피로도를 낮추고, 근무시간 외의 생활의 활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때, 그런 자세나 뭐.. 교육이겠지 뭐.. 정신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어느 공장이든 진짜 나는 일을 잘하고 애는 못하면 이걸 받아들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걸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C,사업주)

## 2) 근로자건강센터의 역할

### (1) 근로자건강센터와의 협력: 효과와 전망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질환, 심리 상담에의 요구는 전문 인력의 협력을 바탕으로 충족될 수 있다. 기존 제도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노력과 현장 세부단위로의 정보 제공·참여의사 타진을 추진하는 것은, 봉제업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전문가 중심의 건강관리를 계획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근로자건강센터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근로자건강센터는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에는 서울근로자건강센터(이화여자대학교 운영)와 서울강서근로자건강센터(서울대학교 운영) 2곳이 존재하고 있으며,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관리 프로그램 운영 직무스트레스상담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대안 영역에서 교육·상담부분에서의 일정한 역할과 건강관리 개선 프로그램 운영은 서울근로자건강센터의 협력 하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봉제노동자의 일반적인 건강문제와 업무상 질환에 대한 상담,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건강관리 교육은 근로자건강센터의 전문 프로그램에 의뢰하여 추진할 수 있는 일이다. 봉제업 종사자들은 민간보험을 활용하거나, 비수기를 이용하여 병의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는 등

으로 건강관리를 해왔다.<sup>42)</sup> 의복제조과정 과정에서 심화되는 직업성 질환은 직업환경의학 전문가가 마련한 근로자건강센터의 고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예방적 조치를 일상화할 경우, 가시적인 건강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2)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근로자건강센터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해볼 수 있는 대안은 직무스트레스 개선 교육, 생활습관개선 교육, 적절한 운동요법 교육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건강행동습관 교육, 개인별 운동처방, 운동지도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봉제노동자가 경험하는 증상에 적합한 운동요법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건강센터의 운동요법과 관련 상담과 처방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특히 근로자건강센터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상담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운동 처방과 지도는 장시간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해야하는 작업환경으로 인해 생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다.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노동자들은 운동량 부족을 호소했으며, 운동량 확보를 위해 개인적으로 체육시설 등록을 한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봉제업 비수기 등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적절한 운동 방법을 제시해주는 안이 있다. 업무과잉이 불가피한 성수기에는 짧은 휴식시간이나 작업 중 찻나를 이용하여 시도할 수 있는 스트레칭 등을 제안할 수 있다.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전문의 상담 기회도 제공하지만, 봉제업계와 같이 시간압박이 극심한 업종 종사자들은 근로자건강 센터의 유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편이다.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지니는 차별성을 충분히 홍보하고, 프로그램 참여 의지를 북돋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제도 홍보와 생산 현장에서 가용한 대안을 소개하는 것은, 실제 노동현장에서 잠깐씩 체험해볼 수 있는 운동요법 등을 시범삼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가능하다.<sup>43)</sup>

42) 노동자들은 자구책으로써 수영 등 운동을 하러다니거나 한의원, 정형외과 물리치료를 받는 방식을 시도하는 편이다.

“(일) 끝나고 침 맞으러 가요, 한의원이 9시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노동자 인터뷰)

43) 이와 관련된 협력 사업은 이미 진행 중인데, 서울노동권익센터의 2015년 상반기 연구사업(보고서 ‘서울시 봉제노동자의 건강안전과 작업환경’)의 후속작업이자 연계사업

작업(근무)환경상담 역시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항목으로, 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작업환경에 관한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작업 설비, 작업환경, 작업 자세에 관한 상담과 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봉제 노동자들이 노출되기 쉬운 유해 물질에 대해 적절한 진단과 조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건강센터는 필요에 따라 작업장 부근에서의 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센터로의 방문이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는 일정을 맞추어 근로자건강센터 외부에서 재활운동을 지도하는 등 현장 친화적인 사업을 시도할 수 있다. 예방적 조치로 기존 질환의 심화를 막는 근로자건강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봉제업 현장의 건강관리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수록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조사와 같은 실태조사가 거듭 시도하여, 봉제업 종사자 공동체(봉제업집적지에 위치한 협동조합 등 개별업체와의 소통이 가능한 통로)와의 소통 채널을 확보한다면, 기존 제도인 ‘근로자건강센터’의 사업의 수혜범주를 확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장과 기존 제도와의 견고한 관계 구축은 이후 서술할 협업 부문에서 재차 다룰 것이다. 협업체계 구축 시도는 봉제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가의 참여가 용이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으로써, 봉제 노동자들의 운동요법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작업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스트레칭 예시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 면담자는 “가내공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거야. 큰데 가면 중간 중간 스트레칭하게 돼 있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영세업체에서 업무 중 스트레칭으로 통증을 경감하고, 근골격계질환의 심화를 예방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자건강센터의 협력을 얻어 제작한 작업 중 스트레칭 지침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그림 IV-11] 스트레칭 - 유연성 운동

동운  
능여워  
의자를 이용하드

\* 20분, 5회 반복으로 2회 10분씩 운동  
 1. 좌우를 교차 실시한다  
 2. 좌우에서 교차한 뒤 반대  
 3. 10~15초 유지하여 호흡한다  
 \* 의자의 양의 이용

\* 20분, 5회 반복으로 2회 10분씩 운동  
 1. 좌우를 교차 실시한다  
 2. 좌우에서 교차한 뒤 반대  
 3. 10~15초 유지하여 호흡한다  
 \* 의자의 양의 이용

\* 20분, 5회 반복으로 2회 10분씩 운동  
 1. 좌우를 교차 실시한다  
 2. 좌우에서 교차한 뒤 반대  
 3. 10~15초 유지하여 호흡한다  
 \* 의자의 양의 이용

\* 20분, 5회 반복으로 2회 10분씩 운동  
 1. 좌우를 교차 실시한다  
 2. 좌우에서 교차한 뒤 반대  
 3. 10~15초 유지하여 호흡한다  
 \* 의자의 양의 이용

<p>바깥을 뒤로 올리고 손가락 끝까지 뒤로 다리를 올리고 다리에 의자를 올리고 <b>다리의 위쪽 다리 올리기</b> (의자 10도 사용 권장)</p> <p>10</p>	<p>바깥을 뒤로 올리고 손가락 끝까지 뒤로 다리를 올리고 다리에 의자를 올리고 <b>다리의 위쪽 다리 올리기</b> (의자 10도 사용 권장)</p> <p>10</p>	<p>바깥을 뒤로 올리고 손가락 끝까지 뒤로 다리를 올리고 다리에 의자를 올리고 <b>다리의 위쪽 다리 올리기</b> (의자 10도 사용 권장)</p> <p>10</p>	<p>바깥을 뒤로 올리고 손가락 끝까지 뒤로 다리를 올리고 다리에 의자를 올리고 <b>다리의 위쪽 다리 올리기</b> (의자 10도 사용 권장)</p> <p>10</p>
<p>손을 위로 올리고 손가락 끝까지 올리고 손가락 끝까지 위로 올리고 <b>올 다리 올리기</b> (의자 10도 사용 권장)</p> <p>2</p>	<p>손을 위로 올리고 손가락 끝까지 올리고 손가락 끝까지 위로 올리고 <b>올 다리 올리기</b> (의자 10도 사용 권장)</p> <p>2</p>	<p>손을 위로 올리고 손가락 끝까지 올리고 손가락 끝까지 위로 올리고 <b>올 다리 올리기</b> (의자 10도 사용 권장)</p> <p>2</p>	<p>손을 위로 올리고 손가락 끝까지 올리고 손가락 끝까지 위로 올리고 <b>올 다리 올리기</b> (의자 10도 사용 권장)</p> <p>2</p>
<p>손을 위로 올리고 손가락 끝까지 올리고 손가락 끝까지 위로 올리고 <b>올 다리 올리기</b> (의자 10도 사용 권장)</p> <p>2</p>	<p>손을 위로 올리고 손가락 끝까지 올리고 손가락 끝까지 위로 올리고 <b>올 다리 올리기</b> (의자 10도 사용 권장)</p> <p>2</p>	<p>손을 위로 올리고 손가락 끝까지 올리고 손가락 끝까지 위로 올리고 <b>올 다리 올리기</b> (의자 10도 사용 권장)</p> <p>2</p>	<p>손을 위로 올리고 손가락 끝까지 올리고 손가락 끝까지 위로 올리고 <b>올 다리 올리기</b> (의자 10도 사용 권장)</p> <p>2</p>

[그림 IV-12] 스트레칭 - 근력운동

의자를 이용하는  
근력운동

근력운동

Exercise of Muscle

하루 20분! 전신근력운동으로  
 근육격계 질환에서 벗어나보세요!

\* 시작전 유의 사항  
 1. 각 관절 운동범위에 맞춰 실시  
 2. 1일 20분씩 3~4차례 분할 실시

\* 시작전 유의 사항  
 1. 각 관절 운동범위에 맞춰 실시  
 2. 1일 20분씩 3~4차례 분할 실시

\* 시작전 유의 사항  
 1. 각 관절 운동범위에 맞춰 실시  
 2. 1일 20분씩 3~4차례 분할 실시

<p><b>1 앉아서 무릎 펴기</b> (무릎 운동범위) 100도 사용 권장</p> <p>좌우에 앉아서 무릎을 펴고 다리의 수직이 되도록 정중하게 펴주세요.</p>	<p><b>2,3 무릎 바깥쪽 근육과 무릎 안쪽 막기</b> (무릎 운동범위) 각 관절 범위 내 90도 사용</p> <p>좌우로 발바닥 양 방향에 힘을 주고 손은 무릎을 짚는다.</p>
<p><b>4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b> (무릎 &amp; 허리 운동범위) 100도 사용 권장</p> <p>90도 앉은 후 일어날 뒤로 의자를 밀어준다. 허리가 뒤로와 의자가 앞으로 밀어준다.</p>	<p><b>5 앉아서 무릎 가슴으로 당기기</b> (허리 운동범위) 100도 사용 권장</p> <p>발 끝을 발 바닥에 착하게 힘을 주며 무릎을 가슴 쪽 쪽으로 당긴다.</p>
<p><b>6 어깨 벌리기 운동</b> (어깨 운동범위) 각 관절 범위 내 90도 사용 권장</p> <p>양 팔을 그림과 같이 90도 구부린 후 팔꿈치가 몸통에서 떨어지지 않게 양 옆으로 벌려 준다.</p>	<p><b>7 어깨 올리기</b> (어깨 운동범위) 100도 사용 권장</p> <p>그림과 같이 90도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팔바닥을 팔꿈치 위로 올리고는 어깨, 팔꿈치, 흉골 위에서 움직인다.</p>
<p><b>8 손목 강화 운동</b> (손목 운동범위) 각 관절 범위 내 90도 사용 권장</p> <p>그림과 같이 손목, 손바닥을 뒤로 올리고 팔꿈치로 팔꿈치 꿈치 편이 (손목은 500ml 양수통으로 대항할 수 있음)</p>	<p><b>9 일차 목 교정운동</b> (목 운동범위) 각 관절 범위 내 90도 사용 권장</p> <p>그림과 같이 어깨의 손을 대고, 손을 들면서 어깨를 움직인다. 이제 목, 뒤, 좌우 방향 운동을 모두 시행한다.</p>

## 4. 협업 체계 구축

### 1) 협업의 필요성

작업환경 개선은 직장에서 이뤄지는 공간적인 변화이고, 의료보건차원의 건강관리 는 개별 노동자의 신체·심리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교육·상담 은 별개의 부문으로 보이지만, 건강관리와 환경 개선, 나아가 행정·사무 부문 모두에 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망라한다.

현재, 봉제업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지자체(서울시, 서울 25개구 각각)와 중앙부 처(고용노동부, 산업부)는 봉제업계에 대한 산업진흥책, 인력수급책, 작업장개선 관 련 기획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각은 업무 이관을 통해 실무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 다. 즉, 지원 기획의 주체와 집행 주체가 단계 별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다. 최 근 서울시의 봉제산업 지원은 <서울디자인재단>에 상당부분 이관되어있으며, 서울 시 분과에서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산업과’와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문화산업정책팀’ 등에서 각각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에서 봉제업체 단 위로 지원하는 정책적 실무는 한국의류산업협회<sup>44)</sup>에서 일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청 역시 협력기관으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상술한 기관에서 추진하는 세부사업은 작업환경 개선, 신규 인력 확충을 위한 노 동조건 개선 등 포함하는 것으로, 각 기관의 지원은 본질적으로 중첩되는 경향이 있다.

이 절에서는 앞의 절에서 서술한 근로자건강센터를 비롯한 ‘봉제산업(노동자) 지 원 주체’의 역할을 재정리하여, 연계되어 있는 지점을 ‘협업 분야’로 분류한다. 본 보고서의 주제인 서울 봉제노동자의 건강안전문제 해결방안은, 봉제업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식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추구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지원 분야 중, 봉제업 종사자의 건강 관리와 관련된 지원을 맥락화하여 협업 체계를 정비한다면 현장 적합성이 높은 지 원방안을 시도와 피드백이 용이해질 것이다.

44) 한국의류산업협회에서는 “패션봉제업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의류생산 역량강화 사업” 을 시행하고 있으며, 르돔·소공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 의류봉제업의 질적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실무기관은 봉제업 현장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장적합성 높은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의 류산업협회 브로셔 참조)

기능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참여 주체를 유형화하면, 산업지원 실무기관(지자체 및 산하/유관기관 등), 지역시민사회(지역사회-NGO-대학 네트워크 등), 봉제노동 종사자(사업주, 노동자)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각 주체의 역할 중에서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검토하여 협업이 필요한 분야를 정돈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봉제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관리할 일종의 거버넌스가 필요한 것이다.

## 2) 협업 방안과 전망

각 참여 주체의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면, 봉제노동자 건강안전 지원 방안의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이나 과소 지원을 피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문 실무 집행기구 간의 협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봉제업 지원 사업이 양질의 콘텐츠를 포괄하고 있음에도, 산업지원책의 다각적인 지점들이 봉제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괄목할 정도로 향상시키기 어려운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봉제 노동자의 건강향상을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에 앞서, 기존 지원책의 수혜 범위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추구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정책 집행과 같은 맥락에서 노동자의 생활과 밀접한 미시적 시도들로 대안을 구성,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을 제시하게 된 까닭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간략한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봉제노동자가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즉, 봉제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외부에서 제공되는 대안의 현장 적합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배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항에서는 각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 산업지원 실무기관(지자체 및 산하/유관기관 등), 지역시민사회(지역사회-NGO-대학 네트워크 등), 봉제노동 종사자(사업주, 노동자)의 역할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대안의 각 분야를 중심으로 협업 방식을 정리한다. 작업환경 개선, 행정·사무지원, 의료보건 차원의 건강관리, 교육·상담 각 부문의 대안으로 앞의 절에서 제시한 프로그램들도 이에 포함된다.

교육·상담과 전문적 건강관리에 해당하는 업무들은 협업의 범주로 묶을 수 있는

데, 각 항목의 연계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의료·보건 차원의 건강관리는 건강 관리를 위한 교육과 상담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중첩되는 경향이 있다. 건강안전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실무기관에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은 ‘영세사업장노동자표준가이드라인 및 교육안’과 같은 현장에 배포할 수 있는 제안을 구성하는 것이다. 봉제업체의 영세성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고려하면, 이러한 교육안과 가이드라인 구성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업체 운영상 특징이기도 한 영세업체의 역량적 한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과잉노동, 사회보험의 미비로 이어져 종사자 전반의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어려우며, 봉제업 종사자는 공적인 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실무기관과 서울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봉제업과 관련된 현행 안전관리 지침과 인력 수급을 위한 개선 방안에 건강안전관리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여 구체화하고, 다수의 노동자에게 이를 배포할 수 있는 주체이다. 인력관리와 환경개선 지원방안의 맥락에서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사업에서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공보물을 제작하여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홍보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작업환경과 시설개선에 대한 기존 지원책의 연장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전망해 볼 수 있다. 지자체와 실무기관에는 정기적으로 작업시설과 환경개선에 일정비용을 지원하는 현행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관리하기 위해 사후 평가와 관리를 주관하는 것을 제도화하기를 제안한다. 이는 본래 업무관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영역이기에 실현성도 높은 방식이다. 기존 지원책의 콘텐츠에 다소의 변화를 주고, 사후 관리 역량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도 후술할 타 기관·참여주체와의 협업을 위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전문적인 의료, 건강관리 역량을 갖춘 기관(서울근로자건강센터)은 본래 관할인 건강관리 개선 대안을 실천함과 동시에 교육·상담의 영역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안 예시로 들었던 ‘영세사업장노동자표준가이드라인 및 교육안’을 구성할 때, 전문적인 조언과 검토 절차를 제공할 수 있다. 행정·실무기관에서는 교육 지원의 설계를 주관할 수 있는 고유 역량을 지니지만, 보건관리와 대처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질환 관리와 증상 완화를 위한 처치방법을 제시하고, 건강문제의 원인 요소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의료보건 상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이 부문을 주관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근로자건강센터는 봉제현장에서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건강센터와 같은 기관은, 실무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환경 개선작업과 건강 관리 지침 개발의 콘텐츠를

구성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혹은 1차적으로 개발된 개선안을 감수하고 현실 적용성을 검수, 프로그램화하여 적용하는 단계에서 개입도 가능하다.

지자체·실무기관과 근로자건강센터 간의 협력은 위와 같이 제시할 수 있으나, 보다 발전적인 협업을 위해서는 협력의 주체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은 공공기관에 가까운 위의 두 주체에 현장 적합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은 NGO, 지역대학, 지역주민(봉제 집적지의 경우, 봉제노동자가 지역주민이기도 하다.) 등을 지칭한다. 노동권, 건강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NGO의 지역단위, 공공정책, 사회복지, 보건관리 관련 학제를 갖춘 대학 및 인간공학적 디자인을 연구하는 연구단위, 주거 지역의 산업적 기반에 관심을 보이는 지역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해진다. 대학과 연구단위는 인간공학적 작업장 개선안과 건강안전관리와 관련된 연구를 확대하며, 여가와 휴식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협업체계에 기여할 수 있다. 봉제노동자 건강 실태파악이 필요한, 휴식 관련 연구의 경우, 의료 전문가는 조사 설계 시, 과학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테면, 본 연구 조사의 설문지에는 반영하지 못한, 후속적인 문항을 과학적으로 설계할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실태조사와 수요조사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높여주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주민 전반의 참여는 봉제노동자 건강향상과 안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에 방점을 둘 경우, 지역의 생활공간 근처에 있는 봉제현장에 대한 유용성 높은 관찰이 가능하고, 봉제업 종사자의 정책 수요 평가가 용이해진다. 지역사회의 참여로 수집된 정보는 실무 집행 기관으로 전달되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통은 봉제업 노동자의 건강안전향상 관련 정책 제안을 창구를 넓히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참여의 긍정적 효과는 와이즈(WISE)프로그램 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와이즈(WISE, Work Improvement in Small Enterprises)는 명칭대로 작은 사업장 내에서 더 나은 노동환경을 구축하고, 건강안전과 생산성을 모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는 것이다.<sup>45)</sup> 국내에서 시도된 바는 거의 없으나<sup>46)</sup> 지역 참여

45) 봉제업분야에서의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ILO워킹페이퍼(Hiba, 1998) 내용 중, 주목할 만한 지침은 '기계와 작업환경의 안전한 관리', '유지, 높은 질의 생산을 위한 좋은 조명 사용', '작업장에 복지시설과 프로그램 제공', '건설적인 노동자 참여'로 요약할 수 있다.

46) 노동건강연대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한 바 있으나, 이는 봉제업과는 거리가 있는 분야에서의 사업이었다. 서울시 봉제 노동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며, 각 집적지역의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영역을 파악하여 순차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이끌어나가는 주체로는 지역사회 범주가 적합하며, 기

에 기초한 노동환경 개선 프로그램이며, 이는 봉제업 집적지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협업체계-나아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기대하는 중간목표이기도 하다.

이 절에서 제시한 협업체계 운영 방식의 요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봉제업처럼 업계 외부와의 교류가 쉽지 않은 산업분야의 영세업체 직원의 실태는 실무기구들과 봉제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지역(시민)사회의 도움을 통해 보완할 수 있고, 근로자건강센터는 협력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관리부문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주관할 수 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실무기관에 건강향상에 필수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조적 노력에 더해져야 하는 것은, 봉제업 종사자(사업주, 노동자)의 참여이다. 당사자의 참여의지는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협업 메커니즘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함께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 당사자의 피드백이다. 사업주는 건강안전 교육안과 의료 상담의 수용과 배포를 위한 협조해야하며, 노동자와 사업주는 새롭게 도입된 지침(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와 관심 역시 중요한데, 각 주관기관의 홍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각 대안이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되어, 일상생활과 작업장에서의 일과에서 변화가 추동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건강관리 개선 프로그램을 적용 시, 시간과 공간의 제한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면 당사자(봉제업 종사자)는 이를 전달하여 일정한 조정을 통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봉제업 종사자 당사자의 피드백과 참여는 개선책의 실현성과 적실성을 높이는 데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

획의 진척이 있을 시 본문에서 제시하는 협업체계에서 발전적 논의를 거듭할 수 있을 것이다.

## 5. 소결

4장에서는 봉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과 기여를 확인하고, 그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주체의 관할 부문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 한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각 주체의 역할이 중첩되고, 특정한 협력이 있을 경우, 효과성이 높아지는 부문을 찾아 협업의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이 장에서 제안한 협업은, 봉제노동자 건강 향상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미시적인 차원에서 제시하는 시도라는 점과 대안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는 협력 가능 범위를 확정지을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봉제노동자 당사자들의 반응에 따라 실효성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후속적인 검토가 필수적인 방안이다. 더불어 협업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의 배분도 고민되어야 할 지점이다. 봉제노동자 건강안전 향상을 위한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구체적 대안의 실행 가능성에 관한 고찰은 본 보고서 출간 이후에도 꾸준히 추구되어야 할 과업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학문적 관심에서 멀어진 경향을 보이는 봉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계획되었다. 최근, 도시형 제조업으로써 봉제업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신규인력 유입 및 산업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서울시와 정부부처의 노력이 부상함에 따라 봉제업 종사자들의 건강한 노동권에 대한 검토가 더욱 절실해졌다. 2010년대 봉제 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건강 상태의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관찰과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지향점이다.

기존의 봉제업 관련 연구는 봉제업의 전망과 봉제기술자에 대한 인력관리, 고용에 관심을 보이는 시각 위주로 진행되었다. 본 보고서는 업체와 산업 범주를 기준으로 하는 거시적 시각보다 개별 노동자의 미시적인 삶에서 건강상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작업장 안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 봉제업의 대표적인 집적지인 종로구, 중랑구, 성북구, 중구, 동대문구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수거하였다. 더불어 면담조사를 통해 봉제산업의 부침이 개별 노동자와 사업주의 노동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관된 흐름을 파악했다. 작업환경에 따른 건강상 문제와 현장 노동자의 시설개선안을 당사자가 설명한 인터뷰 자료는, 후속 연구와 단계별 후속 사업을 기획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봉제 노동자는 대체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높은 업무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인 업계의 사정상, 봉제 노동자의 건강문제는 봉제업 종사자(사업주, 노동자 모두를 포함하는 종사자 군) 전체가 당면한 건강상의 위험을 의미한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일감 차이가 크고,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봉제산업의 특성은 종사자들이 낮은 공임과 많은 작업량, 휴식부족, 장시간 노동의 부담을 체감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4대보험 미가입 비율이 높은 것은 봉제 노동자의 위상이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기준이다.

봉제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과 호흡기질환을 경험할 개연성에 대한 유추도 가능했다. 노동자들이 동일한 작업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며 시간압박과 많은 작업량에 노출되고,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의 영향으로 불편감을 느낀다는 것은 면접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통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업 자세

(근골격계 부담작업)와 불편한 의자 등을 유추하였으며, 후속 연구에서 객관적인 측정이 필요함을 적시하였다. 각종 만성질환의 경험유무에 대한 질문을 통해 눈의 피로, 전신피로, 피부염, 손상 등을 경험한 비율이 동일한 연령대의 타직군 종사자보다 현저히 높음을 확인하였다. 오랜 시간 작업대에 앉아 업무를 지속하는 봉제업자들은 방광염에 걸릴 위험성이 있으며, 불편한 작업의자로 인해 근골격계 통증 및 피로가 심해질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특히, 전술한 증상을 경험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재봉사와 보조 직군)은 중고령 여성이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 향상과 휴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년 이상의 여성이 경험하는 생애 주기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터와 가정에서의 노동 패턴에 따른 질환 예방 방법을 제안한다면 효과적인 개선안이 될 것이다.

봉제 노동자가 체감하는 건강문제의 심각성은 일정한 지역차를 보이는데, 시장상권 중심 지역으로 분류된 A지역에서 특히 높은 수준의 건강문제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A지역은 납품과 유통 시스템 상, 객공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건강 악화의 악순환이 심화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다. 이 해석은 일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제시된 하나의 명제일 뿐이며,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정확한 전문적 설문 설계와 개별 노동자의 작업환경과 건강문제에 대한 심층 인터뷰의 반복적인 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피면접자, 피설문자에 대한 후속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봉제노동자들이 호소하는 건강안전상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과 여가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노동자의 여가와 휴식에 대한 선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습활동과 문화 활동, 적절한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식사공간을 비롯한 휴게를 위한 공간이 부재하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효과성 높은 휴식의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적절한 휴식’에 관한 논의는 의료보건, 행정실무기관, 봉제업 종사자의 관심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휴식보장의 제도화도 적실성 있는 형태로 추구되어야 한다.

전술했듯이 봉제 노동자의 건강안전 향상을 위해서는 직업성 질환의 관리와 예방적 운동요법, 작업환경의 개선, 적절한 휴식 등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는 행정실무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봉제 노동자 집단과 사업주, 지역사회협력그룹의 협업을 제시할 수 있다. 각 행위 주체는 봉제업의 진흥과 봉제노동자에 대한 지원에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봉제노동자의 건강안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관할과 역할이 일정부분 중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 착

안하여 본 보고서의 4장 4절에서는 협업체계 구축과 거버넌스의 전망을 제안하였다. 상세한 지원책은 아래의 <표V-1>로 정리할 수 있다. 각 부문 중, 교육·상담과 건강관리·개선 부문에 해당되는 사업은 협업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이다. 각 분야의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며, 협업의 정도를 심화하여 생활에서의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다. 이후에는 미시적 대안 실현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건강안전 관리를 실시하는 등, 지원책의 규모와 수준을 넓혀야 한다. 봉제노동자의 건강과 관련된 체계적인 관리와 질환 예방 방식이 실효성을 떨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표이다.

본 고에서 제시한 지원책은 현실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의 대안으로, 봉제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차원의 접근에는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설문 조사 시의 접근성 문제와 설문문항 설계의 미흡함도 약점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상의 한계로 인해 봉제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과학적 제시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당면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노동자가 체감하는 문제를 집계하여 현행 지원제도에서 현장 적합성이 부족한 지점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봉제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휴식과 질환 예방에 필요한 후속 작업 계획도 가능해졌다. 장기적으로 봉제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담은 정책 구성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봉제산업의 실태를 확인하고, 노동자의 삶과 건강, 안전, 휴식을 기준으로 현장을 이해하고자 노력한 첫 걸음이라는 것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조사 진행 중 제약으로 작용한 시간적 한계와 현장 접근에의 애로 등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본 고에서 지적한 건강문제와 양질의 휴식, 시설개선안의 실효성에 관한 심층적 탐구는 후속연구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표 V-1 > 부문별, 주체별 대안 목록

	교육·상담 부문	건강 관리· 개선 부문	작업환경 개선 부문	행정-사무지원 부문
지자체(서울시) / 산업지원 **실무기관	(1) 교육 콘텐츠 개발 - 서울시 영세사업장노동자표준가이드라인 및 교육안 마련 제안  (2) 작업환경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 작업환경/ 유해물질 정보를 안내하는 목적	(1) 근로자건강센터의 역할을 보완하는 차원, 공공 건강상태 개선 프로그램 구축 - 지역 보건소 및 사회복지사 연계 프로그램 실행  (2) 건강 프로그램 실행 및 휴식을 위한 공간(쉼터) 확보 노력	(1) 시설개선 지원 작업시설의 인체공학적 개선 여부 검토 및 지원 (산업부 지원, 산재 지원 등 다양한 루트)  (2)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재정 기술 지원, -서울시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 연장선에서 추진  (3)개선활동 평가 및 후속 사업 추진	(1)영세사업자 사업자 등록 지원 위한 체계 구축 (지원 정책 수혜를 위한 필수조건)  (2) 고용 지원(일자리 사업)
***서울근로자건강센터	(1) 건강 문제 관련 교육 상담 - 건강문제 상담, 노동자 사업주대상 건강교육 진행 - 직업성질환 중심의 고유 프로그램의 활용도 ↑  (2) 직무스트레스 개선 교육  (3) 생활습관개선/운동 교육 상담 - 적절한 운동요법 교육	(1) 건강 개선 프로그램과 연계 체계 - 교육상담 분류의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의 실행 확대 - 노동자 건강안전 상태 진단과 예방운동 등을 지원  (2) 건강문제 조기진단 지원 - 조기진단과 관리사업을 전개  (3) 근골격계질환 평가와 운동치료 지원	(1) 직업 관련성 질환, 작업환경에 관한 정보 제공  (2) 시설개선 실행 과정에 자문 (적합성 판단과 효과에 대한 자문)	

	교육·상담 부문	건강관리 개선 부문	작업환경 개선 부문	행정-사무지원 부문
지역시민사회 (지역 대학-NGO-지역시민사회 네트워크)	(1) 대학 내 유관학문(공공정책, 사회복지)과 지역사회 네트워킹, 지역사회 참여적 프로그램 도입 기획 (ex. WISE 프로그램) (2) 영세사업장 노동자 / 사업주의 권리 교육, 법적 지식 교육 (3) 여가를 위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에 참여			(1) 고용지원 교육 이수행과 사업장 연계 관련 모니터링 -교육프로그램 이수생과 사업장 연결에 협력, 모니터링 통한 피드백 제공
사업자/노동자	(1) 사업자/노동자의 교육상담 참여 적극적 참여가 필요	(1) 사업자 지원 및 보조 프로그램 참여, 작업장내 휴식공간과 시간의 확충 노력 (2) 노동자 및 사업자 건강교육 및 건강관리 사업에 참여 후 실생활 활용 노력, 제반 프로그램에의 참여 필요	(1) 사업자 시설 개선 실행 (분진완화를 위한 환풍기 및 화재예방 시설 설치) (2) 노동자 개선 준비에 참여 (의자 등 시설 개선 방안에 당사자로서 피드백) 작업장에서 교육내용 실행(화재 예방 교육, 지침에 따른 정리 정돈 등)	(1) 사업자 고용지원책 및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 참여

\*\*실무기관에서 세부 사업 집행, \*\*\*전문성(직업환경의학)을 바탕으로, 타 기관의 집행 사업을 위한 자문 역할

## 참 고 문 헌

〈연구보고서〉

- 노동건강연대. (2009). 『법원 속기사 노동환경 및 건강실태 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3). 『여성근로자 보건관리지침개발(2차 년도) -여성근로자의 건강장해 요인과 영향 분석-』,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4). 『여성근로자 보건관리지침개발(3차 년도)』,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 산업연구원. (2005). 『봉제 산업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발간 자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2). 『서울지역봉제·의류산업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서비스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연구소. (2009). 『2009년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http://safedu.org/pds1/10320>.
- 한국의류산업협회. (2013a). 『국내 의류제조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한국의류산업협회 봉제업종합지원센터.
- \_\_\_\_\_. (2013b). 『서울시 의류제조 집적지 실태조사』. 한국의류산업협회 봉제업종합지원센터.
- Gereffi, Gary and Olga Memedovic.(2003). “The Global Apparel Value Chain: What Prospects for Upgrading by Developing Countries?.”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 Hiba, Juan Carlos (ed.).(1998)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and Productivity in the Garment Industry: an action manual.” ILO Working Papers.
- Laungaramsri, P. (2005). “Homeworkers in Thailand: an assessment.” Friedrich Ebert Stiftung. (28 February 2007).
- WIEGO, (2014), *Informal Economy Monitoring Study*, Women in International Employment: Globalizing and Organizing, available on-line at <<http://wiego.org/wiego/informal-economy-monitoring-study-iems-publications>>.
- Vanek, Joann, Martha A. Chen and Govindan Raveendran. (2012). “A Guide to Obtaining Data on Types of Informal Workers in Official Statistics.” *WIEGO Statistical Brief No.8*. (May, 2015). available on-line at <<http://wiego.org/publications/guide-obtaining-data-types-informal-workers-official-statistics>>.

Martin, Maximillian.(2013). “Creating Sustainable Apparel Value Chains: A Primer on Industry Transformation.” *Impact Economy* (December 2013).

available on-line at <[http://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html?reference=EPRS\\_BRI\(2014\)538222](http://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html?reference=EPRS_BRI(2014)538222)>

<저서>

- 제리 A. 제이콥스, 캐슬린 거슨. (2010). 『시간을 묻다』. 국미애, 김창연, 나성은 옮김. 한울아카데미
- 피터 커스터스. (2015). 『자본은 여성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아시아의 자본 축적과 여성노동』. 박소현, 장희은 옮김. 그린비.
- Herbert, Robin and Rebecca Plattus. (2011). “Part XIV.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 Clothing and Finished Textile Products.” in Jeanne Mager Stellman(eds). (2011). *Encyclopedia of Occupational Health & Safety*.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vailable on-line at <<http://www.iloencyclopaedia.org/part-xiv-42166/clothing-and-finished-textile-products>>.
- Jailer, Todd, Miriam Lara-Meloy and Maggie Robbins. (2015). *Worker’s Guide to Health and Safety*, Hesperian Health Guides.
- McCormick, Dorothy, and Hubert Schmitz. (2001). *Manual for value chain research on homeworkers in the garment industry*. Sussex: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논문>

- 김남승, 이재형. (1993). “일부 제조업 여성근로자들의 작업환경과 건강실태에 관한 조사.” 『최신의학』 36(12): 2-68.
- 박경옥, 김인석, 오영아. (2004), “제조업 근로자의 건강행위와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자각증상과 관련성.”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21(3): 195-211.
- 박수미, 한성현. (2004). “기혼 여성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직업특성과 가족특성.” 『한국인구학』 27(2): 155-175.
- 이상욱, 김경민. (2014). “서울 구로·가산동 의류패션산업의 가치사슬과 네트워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3): 465-481.
- 장미진, 양승우. (2015). “서울시 창신동 봉제공장 산업생태계의 공간적 특성-종로구 창신 1,2,3동을 중심으로-”. 『도시설계』 16(2): 5-12

- 장필화. (1991). “공장자동화와 생산직 여성노동의 변화: 의류봉제산업을 중심으로.” 『한국통신학회 전기통신학술연구과제』 : 61-106.
- 정명실, 송지호. (2011). “중년 여성의 여가활동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건강상태.” 『기본간호학회지』 18(1) : 97-106.
- 정헌주. (2011). “영세 제조업체 실태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 22: 141-185.
- Ahmed, Shaheen, and Mohammad Zahir Raihan. (2014a). “Health Status of the Female Workers in the Garment Sector of Bangladesh.” *Journal of The Faculty of Economics and Administrative Sciences* 4(1): 43-58.
- \_\_\_\_\_, Shaheen, and Nazrul Islam. (2014b).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he Workers in the Readymade Garment Industry of Bangladesh.” *Pearl Journal of Management,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1(1): 8-17. available on-line at <<http://www.pearlresearchjournals.org/journals/pjmssh/archive/2015/Apr/pdf/Ahmed%20and%20Islam%20.pdf>>.
- D’ambrogio, Enrico. (2014). “Workers’ conditions in the textile and clothing sector: just an Asian affair? Issues at stake after the Rana Plaza Tragedy.” *European Parliament Research Service* (August 2014). available on-line at <<http://www.europarl.europa.eu/EPRS/140841REV1-Workers-conditions-in-the-textile-and-clothing-sector-just-an-Asian-affair-FINAL.pdf>>.
- Deyyas, Kebede W. and A. Tafese. (2014). “Environment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Associated with Elbow/Forearm and Hand/Wrist Disorder among Sewing Machine Operators of Garment Industry in Ethiopia.” *Journal of environmental and public health* 2014: 1-8.
- Herbert, R. J. Dropkin, N. Warren, D. Sivin, J. Doucette, L. Kellogg and S. Zoloth. (2001). “Impact of a joint labor-management ergonomics program on upper extremity musculoskeletal symptoms among garment workers.” *Applied Ergonomics* 32(5): 453-460.
- Johns, Gary. (2010). “Presenteeism in the workplace: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1: 519-542.
- Rempel, D. M., P. C. Wang, I. Janowitz, R. J. Harrison, F. Yu and B. R. Ritz. (2007).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evaluating the effects of new task chairs on shoulder and neck pain among sewing machine operators: the Los Angeles garment study.” *Spine* 32(9): 931-938.

- Wang, P. C., B. R. Ritz, D. M. Rempel, R. J. Harrison, J. Chan, and I. Janowitz. (2005). "Work organization an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for sewing machine operators in garment industry." *Annals of epidemiology* 15(8): 655.
- \_\_\_\_\_, P. C., D. M. Rempel, R. J. Harrison, J. Chan, and B. R. Ritz. (2007). "Work-organisational and personal factors associated with upper body musculoskeletal disorders among sewing machine operators."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64(12): 806-813.
- Westgaard, R. H. and T. Jansen. (1992). "Individual and work related factors associated with symptoms of musculoskeletal complaints. II. Different risk factors among sewing machine operator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49(3): 154-162.

<기사 및 참고 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두루누리 사회보험, <<http://insurancesupport.or.kr/>>

산업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2015). "도시형 제조업 인식제고 및 환경개선." (2015.3.25). <<http://economy.seoul.go.kr/archives/18159>> (검색일: 2015-04-28)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2013). "영세한 봉제업체 사장님 공동작업장서 봉제기계 사용하세요." (2013.1.21). <<https://economy.seoul.go.kr/archives/4701>>

홍선표, 강경민. (2015). "'제조업 부활' 나선 서울- 패션업 되살린 뉴욕처럼...서울, 산업밀착형 도시로 탈바꿈." 『한국경제』 (2015.4.27): 3면.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42668951>>

통계청. (2013).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조사표." <[http://kosis.kr/common/meta\\_oned\\_eptf.jsp?vwcd=MT\\_ZTITLE&listid=K22](http://kosis.kr/common/meta_oned_eptf.jsp?vwcd=MT_ZTITLE&listid=K22)>

## [보론] 봉제산업 종사 이주노동자에 관하여

조 성 애

## 들어가며

보고서 “서울시 봉제노동자의 건강안전과 작업환경-주요 5개구 실태와 지원방안을 중심으로-”는 9만 여명의 서울시 봉제 산업 노동자의 건강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유효한 지원 방법을 고찰하기 위해 계획된 연구과제이다. 이 글은 보고서 “서울시 봉제노동자의 건강안전과 작업환경-주요 5개구 실태와 지원방안을 중심으로-”의 보론으로 작성되었다.

2014년 5월 기준으로 실시된 외국인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89만 6000명, 취업자 수는 85만 2000명으로 전체 국내 취업자 2581만 1000명의 3.3%이며, 고용률은 67.9%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률 보다 7.1%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외국인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sup>47)</sup> 경제활동인구에서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동력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상술한 상황에서, 인력난을 겪는 동시에 고강도 노동으로 분류되는 봉제업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인력으로 이주노동자가 자주 언급된다. 따라서 향후 봉제 산업에 있어 중요한 노동 인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주노동자 케이스를 본 글에서는 봉제 노동자 건강 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다루고자 한다. 실태 확인 후, 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봉제노동자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아래 본 글에서는 연구 보고서 본문에서 다루진 봉제 산업의 노동환경과 건강상의 문제를 이주노동자의 경우로 대입시켜, 이주노동자의 건강안전상의 문제와 현황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47)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795427>) “외국인 통계와 ‘세계인의 날’”, 2015.5.20., 검색일 2015.6.8.

<표 보론-1> 이주노동자 고용관련 제도의 변화

년도	주요정책	관련법규
1991년	해외투자법인 연수제도 시행 해외에 공장이 있는 한국 사업주가 현지 노동자를 데려와서 기술 연수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보호지침
1992년 6월 ~1994년 5월	미등록 노동자들의 자진신고를 통해서 합법적인 체류 보장 노동부와 노동조합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 표명	
1994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10개국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2000년 4월	연수취업제 실시 (2년 연수 + 1년 취업)	
2002년 7월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 발표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를 2003년 3월까지 모두 추방 연수생 14만 여명을 확대 유입하겠다는 내용	
2003년 2 월~3월	3년 이하 이주노동자 약 8만여 명에게 체류기간을 1년 연장 18만여 명이 강제출국 대상이 됨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실시 양해각서(MOU)체결 국가 8개국 (중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고, 필리핀, 베트남, 스리랑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3.8.16.(현재 15개 국가와 MOU)
2007년 1월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관련 고용허가제세부업무추진방안 (2006.11)
2007년 3월	방문취업제 실시	중국 및 구소련 지역 거주 동포 취업 합법화
2012년 7월	외국인 구직자에게 구인사업장 명단 제공하기 않음. 고용센터 연락에 의한 채용절차 진행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내부지침
2014년 7월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다며 출국만기보험 지급시기를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우선 이주노동자 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는 <표 보론-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보론-1>과 같이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가 변화하는 동시에 정부는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내년에 필요한 이주노동 분야 인력을 결정한다. 2015년에는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하는 외국 인력을 고려해서 55,000명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그중에 제조업으로 42,400명이 입국할 예정이며 봉제 산업도 이에 포함된다. (<표 보론-2>)<sup>48)</sup>

48)이주노동자 채용 제조업 규정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 &lt;표 보론-2&gt; 2015년 도입규모(E-9)

합 계	제 조 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55,000 [53,100+a(1,900)]	42,400+a <sup>1</sup>	6,000+a <sup>2</sup>	2,300+a <sup>3</sup>	2,300+a <sup>4</sup>	100+a <sup>5</sup>

그런데 현재 진행된 봉제 산업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봉제업계에서 이주노동자 비율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다. 이 배경에는 불법체류 중인 이주노동자 고용에 대한 단속강화와 비자 발급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건상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것 역시 행정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하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토로는 사업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들은 대다수 미등록 노동자 고용으로 인해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음을 밝혔다. 인터뷰에 사업주들의 다수는 본인 사업장에서 미등록 노동자가 단속에 의해 잡혀가는 모습을 목격했고, 대부분 벌금을 물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IMF때 많이 썼다. 불법으로. 남자들은 네팔, 네팔이 많았고, 필리핀. 여자들은 필리핀, 중국. 남자들은 재단보조하고 허드렛일, 시야기판에서 하고. 여자들은 시다 (미싱 보조). IMF때까지 96년부터 99년까지. 그다음은 중국인들(조선족, 한족). (최근)2년 전까진 한족도 썼었음. 한사람은 결혼해서 합법. 한사람은 여행비자로 들어온 사람. 나는 불법 안 받는데 옆 공장은 걸려가지고 2천만 원씩 냈던 듯. 걸린 다음에는 공장마다 문 잠귀 놓고 CCTV달아놓고 그랬음.”

“97년도, IMF때부터, 3명 베트남인. 중간 중간에 몽고, 필리핀 애도 써보고. 마지막으로 2007년쯤까지 썼음. 2006년쯤에 처음으로 단속에 걸림. 그때 이주노동자 4명(베트남2, 네팔1, 조선족1) 사용 중일 때 걸림. 그 조선족(합법)은 요즘도 있는데 새벽까지 부려먹음. 불쌍해죽겠음.”

“꽤 많이 냄. 1인당 200정도해서 600만원. 그다음부터는 쳐다도 안 봄. 6개월간 고생했음. 12명인가 13명인가 그 애들이 오래있었는데, (단속) 이후 6개월 동안, 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인력이 빠진 상황이라 공장 운영이 매우 힘들었음. 그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능숙한 인력 1/3이 빠지니까 공장 일이 안됐음. 그때 쫓아가서 차에 들어가니까 옆 공장 아는 애들이(이주노동자) 같이 잡혀있었음. 다들 울고 있는데

수갑 딱 차고 있는 게 마음이 아팠음.”

“그 서류 준비할만한 회사가 어디있냐고요, 없죠. 그니까 내가 아  
까 말씀드린 게, 자꾸 그런 제도를 그렇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인력  
을 쓸 수 있게끔 해야지만 눈 감고 대충 넣어 주는 게 현실적으로  
도와주는거지, 그 뭐 쿼터 이런 거 해가지고 니네가 뭐 신청해 그  
신청, 그 신청할 만한 공장이 없어요. 그 신청 골치 아파서 못해요.”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상황을 고려해서 내국노동자와 비슷한 건강안전실태 설문  
지를 이주노동자에게 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대신 이주노동자와 사업주  
인터뷰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5명의 사업주와의 인터뷰 내용과 6명의 노동자를  
개별 또는 단체로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이 글의 근거자  
료로 사용되었다. 네팔노동자들은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여 통역 없이 진행했으며,  
필리핀 노동자들은 영어 통역으로 진행했다. 면담자의 기본 사항은 아래 <표 보론  
-3>과 같다.

<표 보론-3> 면담자 기본 사항

구분	인적사항(성별, 연령, 체류기간, 업력)	면담방식	면담일시
이주 A	여성, 30대, 2년차, 한국입국 후 봉제업 1년 종사, 퇴사	개별면접	5.24
이주 B	여성, 40대, 10년차, 본국에서의 재봉 경험, 한국입국 후 봉제산업 종사, 퇴사	개별면접	5.31
이주 C	남성, 20대, 5년차, 봉제 마무리 작업 야간노동 종사	집단면접	6.7
이주 D	여성, 20대, 1년차 봉제 마무리 작업 종사	집단면접	6.7
이주 E	남성, 40대, 3년차, 타 제조업 종사경험, 봉제업 야간노동	집단면접	6.7
이주 F	남성, 30대, 재입국, 농업종사 경험, 봉제업 야간노동	집단면접	6.7

### 근로조건 일반

#### ①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

봉제산업의 일반특성은 내국노동자와 동일했으며, 이주노동자들은 잦은 야근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일하는 시간이 길고, 야근을 너무 많이 하는데 월급은 적다. 월

급이 적더라도 가능하면 정시에 퇴근하는 일을 하고 싶다. 다른 사람 쉬는 날에는 같이 쉬고 싶다”

“밤에도 일했다. 납품이 정해지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일해야 했다. 내가 오래 일하다 보니 처음엔 미싱을 했고 일이 바쁘면 모든 일을 다 했다. 그 회사에 오래 일해서 일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게 되었고 사람이 필요한 곳이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봉제산업 중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상권에서는 상가(시장)에서 아침에 퇴근 하면서 주문을 넣으면 오전에 재단과 재봉을 마치고 오후 4~5시가 되면 시야기집 (혹은 시야계, 마무리 공정을 담당하는 작업장 지칭)으로 보내지는데 이곳은 매일 야간노동을 하게 된다. 야간노동의 최장시간은 오후 4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6시가 기본이지만 일이 늦어지면 8시까지 일했다고 한다. 특히 시기에 따라 20시간 동안 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는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보통 일해요. 8시까지 할 때도 있어요. 토요일에는 다음날 12시까지 해요. 20시간 일해요” F  
“저는 오후 6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6시에 퇴근해요” D  
“회사를 그만둔 건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다. 야근을 언제할지 모르고 있다가 오늘 야근이라고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았다. 힘드니까 저녁에는 일찍 가서 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 A

대부분 시야기집은 오후 6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노동을 주 6일간 하고 있었다. 인터뷰를 진행한 6월7일 일요일 전날인 6월 6일 현충일도 이들은 12시간 노동을 했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요일뿐 아니라 한국 달력상 빨간날 (공휴일)에도 쉬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봉제 산업의 장시간 노동에 대해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최저임금 위반

이어서 상술한 바와 같이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급여는 얼마나 받는지 물어봤다. 오후 4시에 출근한다고 했던 노동자는 지난 3월까지 130만원을 받았는데 4월부터 16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대다수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전에는 130만원 받았어요. 지금은 160만원 받아요. 회사 세 번째라서 사장님 그거 알고 월급 많이 안줘요.<sup>49)</sup> 요즘 일이 많아서 160만원 주지만 나중에 어떻게 줄지 몰라요. 사장님 나는 기숙사도 있고 밥도 주기 때문에 월급 이만큼 준다고 했어요“ F

“저는 오후 4시 반부터 다음날 7시까지 일하는데 190만원 받아요” E

“저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일하고 140만원 받아요” D

비슷한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라도 노동자가 처한 조건에 따라 사업주는 급여를 달리주고 있었다. 연구진의 계산으로 최저임금 (시급) 5,580원 \* 12시간 (실제 14시간이나 식사 시간 등 휴식으로 2시간 제외한다고 하면) \* 26일 \* 1.5 (심야할증/잔업시간) = 2,611,440원을 급여로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 매주 토요일 12시까지 잔업, 매일 12시간이상의 노동시간은 넣지도 않은 계산이다.

2013년 조사된 한국의류산업협회 자료에 의하면 업무보조로 일하는 노동자의 평균노동시간은 10시간 이었고, 월 평균 23.2일에 임금은 143만으로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된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70% 전후를 받고 일한다고 할 수 있다.

<표 보론-4> 필요숙련기간, 평균총경력, 평균월급여, 평균근속년수

(단위 년, 만원)

구분	필요숙련기간	평균총경력	평균월급여	평균근속년수
봉제사	5.3	17.8	175.5	4.3
랭킹사	4.9	15.8	156.2	3.5
패턴사	6.6	15.3	224.6	4.3
샘플사	6.5	16.2	210.9	4.9
재단사	6.4	17.2	217.7	4.1
디자이너	4.2	7.6	221.0	3.9
업무보조	2.5	9.7	143.0	3.7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급여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처음 한국에 올 때는 회사에서 보낸 근로계약서를 보고 상호 서명을 한 후 근무를 할 수 있었으나 회사를 옮기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49) 이주노동자들은 최장 4년 10개월 한국에서 노동하는 동안 회사를 3번 옮길 수 있다. 회사를 옮길 때는 사업부가 변경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줘야 가능하다. 3번 이상 옮기는 것은 비자 기간이 남았더라도 미등록 노동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이주노동자들은 기숙사를 제공하고 하루 세 번의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명확한 계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주가 생활에 부적합한 기숙사와 식사를 제공하고서도 제공된 숙식의 값어치를 실제 가치보다 과하게 측정하여 급여에 포함하고 계산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참조. 임금과 처우

한겨레 신문 기사

“ ‘노예 노동’ 홍문종의 아프리카박물관 찾아가보니... ” 中 (2014-02-11)

(전략)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한 채 노예처럼 일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쪽은 월 급여 110만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겨레>가 확인한 노동자들의 은행 거래명세표에는 매달 60만 원 이하를 받은 것으로 찍혀 있었다. 항공료 공제 등을 이유로 5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 관장은 “4대 보험과 숙소 렌탈비, 전기요금 등을 공제했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포함하면 110만원이 된다” 고 설명했다. 곱팡이 가득한 열악한 쪽방 수준의 숙소 이용료와 전기요금 등으로 1인당 40만 원가량을 뺐다는 얘기다. 파이나는 “60만원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후략)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3731.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3731.html))

또한 한국에서 보너스를 받아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많이 받으면 20만원, 10만원도 받아봤다(E)”는 답변도 존재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는 보너스 수령을 할 수 없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 노동자는 본인의 사정으로 오후 4시에서 새벽 2시까지 일하는 노동자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였다. 즉, 근로 특성에 있어서는 내국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임금 부분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봉제 산업에 있어 새로운 노동 대체 인력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③ 휴게시간 확보 문제

면담자가 현재 일하고 있는 공장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각 2명씩 근무 중이었다. 지하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담배 피우러 위로 올라가는 시간을 줄이고자 사업장 내에서 흡연을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공장의 대기 환

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해당 공장의 사장은 비흡연자였지만, 흡연노동자들에게 시간 단축을 위해 실내 흡연을 허가했다고 이주노동자들은 전하고 있다. 또한 식사 시간도 10~15분 정도로 짧고 식후에 커피 한 잔 타서 마시는 것 말고는 특별히 쉬는 시간이 없었다.

“4시 반에 출근해서 5시에 밥 먹고, 일하다가 10시, 아침 3시에 밥 먹어요. 원래 식당에 가서 먹어야 하는데 요즘은 바빠서 공장으로 밥 가져와서 먹어요” F

“우리는 공장이 지하이고 1층에 식당이 있어요. 올라가면 밥이 차려져 있구요. 우리는 밥 먹고 내려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곧장 일한다. 밥 먹는데 길어야 15분 정도 걸린다. 다른 회사는 사장이 10분 안에 먹으라 그래서 10분에 먹는다. 우리 사장은 10분에 먹으라 그러지는 않는다” E

“옛날에는 6명 중에 5명이 담배를 피웠다. 지금은 2명만 핀다. 사장님은 담배 안 피지만 다른 사람들은 핀다. 밖에 나가 담배피면 왔다 갔다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우즈벡 사람이 담배 피러 나가니까 사장님이 시간 없다고 하면서 여기서 피라고 했다. 담배 피면 냄새 안 좋다” D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주어야 하고, 해당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봉제 산업에서 내국노동자는 물론 이주노동자에게도 역시 법정 휴게시간이 철저히 준수되는 사업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④ 사회보험 미적용

등록노동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미등록 노동자들은 가입되어있지 않았다. 면담자 E의 첫 번째 회사는 치킨 무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노동자 중 남성은 본인 한 명이어서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등의 힘든 노동은 혼자서 처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서 당시 허리를 다쳤는데, 허리에 가는 무리를 덜기 위해 봉제

업으로 옮겼지만 여전히 허리가 지속적으로 아프며 급여 일부를 병원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다. 내국인 노동자도 일하다 다치면 사고성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근골격계 등의 질병은 산재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내국인노동자보다도 산재처리가 더욱 어려우며, 이에 더하여 회사를 그만 둔 후 사업주가 산재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사업장 이동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옮길 때 3개월 안에 이동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주가 서명한 사업장 변경 허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근골격계 질환으로 3개월 안에 산재인정을 받는 일은 매우 어려우며, 산재인정을 받는 동시에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는 것 역시 이주노동자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나마 면담자 F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해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런 사례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일하면서 허리 다쳤다. 디스크 때문에 병원비 많이 들었어요. 치료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산재가 뭔지 몰랐어요. 힘들어서 회사 그만두고 건강보험 없어서 병원 가니까 돈이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일 못 할 때 기존 회사의 건강보험을 사용했는데 나중에 취업하고 나니까 부정수급했다면 비보험으로 계산해서 다 물어냈어요”

### 일과 휴식, 건강

내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도 내국노동자와 같이 장시간이 가장 힘들다고 답했으며, 대부분의 노동은 주 6일간, 하루 12시간 노동이었다. 또한 토요일은 일요일에 쉰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잔업을 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휴일은 일요일뿐이며, 추석·설날·여름휴가·새해첫날을 휴일로 받고(C)” 나머지는 계속 일을 한다. 이렇게 쉬고 나머지는 전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근무 일반 실태와 휴식 전반은 내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적용되는 제도적 환경 역시 동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건강 부분에서도 내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놓인 상황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건강 문제에 대해 내국 노동자보다 이주노동자의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큰 편이며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고 답한다. 이주노동자에게 아픈 것은 사업장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고법에 의하면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올 수 있는 나이는 40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젊은 노동자들이 철저한 건강검진을 마쳐야만 들어올 수 있다. 이러한 법적 한계와 사업장 내부적 분위기로 인해 건강문제에 대해 부담감이 과증된다고 보인다.

전체적인 근무 조건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내용도 위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병증과 강도가 내국노동자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시야기집은 종일 서서 일하는 업무라서 의자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나 다리미 작업을 할 때 고개를 너무 숙여서 모두가 “어깨와 목이 아프다(A, F)”고 했다. 12시간 동안 단춧구멍을 내는 노동자는 일은 앉아서 하고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기계를 보고 있다 보면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을 매일 받고 있다고 했다. 봉제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 등으로 피부염이나 알러지 병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냄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손으로 하는 작업인 만큼 “손이 갈라지는 경우가 많으며(E, D)” 소음에 대해서는 다리미판을 잡아주는 베큘 소리도 크고, 미싱 소리도 크고, 공장에서 내낸 틀어놓는 라디오 소리도 크다고 모든 면담자가 얘기했다. 그리고 일이 바쁜 경우 화장실을 참거나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답했으며, 이 역시 내국노동자와 큰 차이가 없었다.

### 생활문화

상술한 바와 같이 내국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비슷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문화 등으로 인해 차이점이 드러나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다. 한국과 이주국의 문화가 달라 발생하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네팔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로 '당신 (you)'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한국에서는 의미가 달라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 등이 존재한다.

“사장님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 했어요’ 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니가 나한테 당신이라고 했다면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내는지 모르고 저는 계속 '사장님 당신'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먼저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에게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사장님보고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아직

도 왜 당신이 나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또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사업주와 이주노동자간에 불화가 야기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보인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오늘 20개 하기로 하면 무조건 그거 다해야 집에 가요. 그런데 여기는 일하다가 시간 되었다고 사람들이 밥도 먹으러가고 집에도 가요. 저는 그거마저 다 하고 퇴근하려면 사장님이 막 화내요. 자기 말 안 듣고 일 한다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하고 퇴근하면 되는데...(C)”라고 언급하며 업무 완수 후 빠르게 퇴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성향은 이들의 문화가 시간관념과 업무 범위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여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업주들은 “언어, 문화, 시간관념이 투철해서 잔업 시키거나 하면 아주 싫어함. 일을 이만큼 하면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 정이 없다. 어제까진 웃으며 가족같이 일을 해도, 딱 하루 일이 없거나 하면, 단가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이 옆에 있으면 단칼같이 그쪽으로 가버림. 정이 없음. 한국 사람들과는 다르다.(사업주 인터뷰)“인식하는 경우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호간 인식과 문화의 차이가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과 사업주는 이는 사업장이나 사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음을 시인한다. “불법 체류자이므로 불안하고, CCTV 달고, 밖에서 단속이 올까봐 망을 보는 등 신경 쓸 일이 많음(사업주 인터뷰)“을 인정하면서도 다수의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는 일을 잘함. 농땡이를 부리지 않고, 늦은 시간에도 말없이 열심히 일한다(사업주 인터뷰)“고 이야기한다. 또한 사업주들이 인력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희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50)

더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나름의 생활문화 유지하며 공동체를 구축하여 한국 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해 나가고 있다.

현재 봉제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대다수 야간노동자들로 회사에서 새벽 3~4시쯤 밥을 먹고 왔기 때문에 그냥 잠들어서 오후 3시쯤 일어나 회사로 출근해서 5시에 밥을 먹는다고 했다. 봉제를 떠난 노동자들도 (기존에도 이들은 주간노

50) 사업주들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주된 이유를 물었더니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서가 66.3%로 압도적이고 그 다음이 3년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서가 (외고법상) 14.9%로 뒤를 잇고 있다. 현재 허용된 외국인근로자 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49.5%가 부족하다, 매우부족하다로 매우적정하다와 적당하다 50.5%와 비슷함을 보인다. 더불어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에는 늘려야 한다고 53.6%를 차지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과 수요조사] 보고서, 2012. 1월)

동) 대체로 주중에는 퇴근하면 잠시 쉬다가 잠자리에 드는 일과는 비슷하지만 주말을 보내는 방법이 서로 달랐다. 주간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쉬는 날이면 국가별로 커뮤니티 활동 (필리핀의 경우는 농구대회, 네팔의 경우는 배구대회 등 국가별 체육행사)을 주로하고 있었다. 야간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요일 06시에 퇴근해서 (또는 일요일 낮 12시에 퇴근) 잠을 자야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국가커뮤니티 행사에는 별로 참석할 수 없고, 가까운 곳에서 야간노동을 하는 노동자들과 저녁에 잠시 만나서 소통하고 있었다. 네팔 4명의 노동자 중 3명은 같은 동네에서 봉제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교회 등의 종교단체와 연결되어 한국생활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생활지원, 정보교류 등을 하는 것을 기본활동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얘기 끝나면 필리핀 농구대회 하는 곳으로 가야해요.  
거기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이주노동자들에게 근무 환경에서 개선되길 바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내국노동자와 같은 대답을 들려주었다. 노동조건에서는 모든 노동자들의 생각과 요구사항은 소박하지만 한결 같았다.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급여에 대한 요구로 ‘내 월급이 적당한가, 내가 노동한 만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꼽을 수 있다. 일하는 시간, 시급, 월급계산 방식 등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였다.

## 나가며

이번 조사를 하면서 만난 모든 노동자와 사업주는 봉제 산업이 쇠퇴하고 있으며 지금의 40대가 더 이상 옷을 만들지 못할 때가 되면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수입에 의존하는 옷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위기의식은 강하지만, 구조적인 차원(봉제 산업의 전망)부터 작업장의 투입 인력과 같은 시급한 문제까지 난점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은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취업을 통한 생산력 유지는 가용한 대안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최장 4년 10개월이라는 유효기간을 가진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봉제업체에서 장기간 근속하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다. 이주노동자의 합법적인 고용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며, 봉제노동자의 건강향상과 처우개선의 맥락에서 이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이주노동자는 오랜 기간 숙련된 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우며, 단순한 노동에 집중된 일의 패턴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데, 장기적

으로 이주노동자가 숙련된 봉제노동자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주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에 대한 간략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주들이 행정적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미등록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데, ‘미등록 노동자 - 미등록 사업주’ 구조에 따라 개선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주 등록을 마친 후, 행정적 절차를 처리할 능력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므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지원은 정부(지자체)의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지자체)는 소규모 봉제산업을 포함한 사업주들의 사업운영과 관련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작은 지역단위에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몇 가지 지원프로그램도 지원방법과 정보를 충분히 접하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사업주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홍보하고 보조하는 것일 것이다. 현재, 일부 봉제 집적지에서는 협동조합 등을 통한 봉제업 종사자간의 커뮤니티 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연결고리를 꾸준히 마련하여 관의 지원이 미치는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둘째, 이주노동고용기간 4년 10개월의 유효기간을 늘이는 방식이 필요하다. 한국의류산업협회의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봉제산업 한 분야를 숙련하기 위한 시간은 최소 2.5년에서(업무보조) 6.6년까지 긴 시간을 요구한다. 우리가 봉제라 불리는 미싱사가 되기까지 5.3년이 걸리는 시간만큼 이주노동자에게 교육과 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누군가는 곧 돌아갈 이주노동자라 하지만, 신자유시대 노동은 국경을 허물고 있다. 봉제업과 같은 기술 인력이 필요한 직종에서, 이주노동자가 맡아야 할 영역이 있을 것이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몫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의한 법률의 융통성을 위해 이주노동자, 사업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다.

셋째, 정부와 사업주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완벽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라도 그들은 한국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다. 한국의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동법은 한국의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문화 차이와 과거 독일을 탄광과 병원에서 일했던 한국 노동자들이 마주했을 차별이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에게서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합의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부록1] 작업의자 개선안: 인간공학적 개선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산업디자인 전공  
 학석사연계과정 최재공

이 글은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봉제산업 노동자(5개 구 6개 동)의 작업도구 개선을 목표로 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원들 및 여러 보조연구원들과 함께 관찰,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의 질적, 양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구체화 하였다. 동시에 실현가능한 범위 안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한다.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현장에 실행되는 것을 말한다. 완벽한 대안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중간과정의 실제적 대안이라는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관련부서의 예산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설득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봉제공장 현장에서의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통해 실태조사와 대안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겠다.

인터뷰 전반에서 알 수 있었던 중요한 점은 대다수가 보고서의 실효성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주로 사업주 인터뷰에서 정부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역시 그들은 체감할 수 없는 대안을 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는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도 있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디자인 방향은 사용 습관적 측면을 고려한 소극적 변화부터 시작해서 거부감 없이 현장에 바로 적용가능하게 하는 것과 제작에 있어서 봉제노동자들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게 하는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재봉틀 주변 도구들을 본인들 스스로 새롭게 만들거나 덧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방석, 요부받침, 소도구정리, 작업대 확장판, 노루발 들기(knee lifter)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도출 한다.

### 1. 방석

방석은 딱딱한 나무의자에 앉아서 장시간 작업을 할 때 필요한 품목이다. 이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다. 두꺼운 방석으로 인해 딱딱한 의

자인 1차적 문제는 해결했지만 앉은키가 높아져서 작업 시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는 2차적 문제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방석 디자인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사용습관적인 측면과 기본적인 인체공학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도출하려 한다.

#### 1) 사용습관적 측면

- (1) 방석 외피는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2) 기존 나무 의자에 탈부착이 가능하게 하여 작업장 이동시에도 들고 갈 수 있게 한다.
- (3) 손으로 쉽게 조절할 수 있게 한다.
- (4) 각자의 몸에 맞게 조절 할 수 있게 한다.

#### 2) 인간공학적 측면

- (1) 앉은키가 최대한 높아지지 않게 한다.
- (2) 작업 시 몸이 뒤로 밀리지 않게 한다.
- (3) 작업 시 허벅지 아래쪽(의자 끝선과 닿는 부분)을 고려한다.

#### 3) 구체적 가이드라인

- (1) 좌석 폭 : 400mm 이상 되게 한다.  
\_대상자의 95분위 앉은엉덩이너비 397mm를 기준으로 한다.
- (2) 좌석 깊이 : 대부분 재봉틀 의자 폭인 30mm와 겹터앉는 작업 자세 고려한다.  
\_앞쪽 끝 면과 오금사이에 약 50~100mm의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 (3) 좌석 쿠션 두께 : 10mm(방석이 너무 높지 않게 함)
- (4) 엉덩이 받침 높이 : 50mm(엉덩이 뒤쪽 부터 앉는 면 까지 높이를 기준으로 함)
- (5) 의자의 앉는 면과 허벅지 아래쪽 부분의 떨어지는 곡률의 각도 고려 : 3~5도로 한다.
- (6) 숨을 넣거나 천을 감싸서 쓸 수 있게 프레임만 제시한다.

[그림 부록1-1] 기존 의자 판재에 피스 결합방식으로 부착하는 방식



## 2. 요부받침

요부받침은 신체의 일부 인 요부를 전방으로 이격시켜 앉아서 휴식을 취할 때 편한 자세를 유도한다. 앉는 면을 기준으로 등받이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요부받침은 앉았을 때 바른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요부받침은 척추의 활처럼 흰 모습을 유지시켜주면서 편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요부받침은 작업하는 동안에는 신체에 닿지 않게 접을 수 있게 디자인 하였다. 그것은 사용습관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인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작업할 때는 허리를 숙여서 한다. 따라서 작업 중에는 요부받침이 필요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끔 허리를 펴고 쉴 때에만 요부받침을 들어 올려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1)사용습관적 측면

- (1)작업 중 작업자세를 고려하여 접이식으로 한다.
- (2)기존 나무 의자에 탈부착이 가능하게 하여 작업장 이동시에도 들고 갈 수 있게 한다.
- (3)손으로 쉽게 조절할 수 있게 한다.

(4)각자의 몸에 맞게 조절 할 수 있게 한다.

2)인간공학적 측면

(1)요부 전방을 유지시켜 주도록 한다.

3)구체적 가이드라인

(1)요부받침 폭 : 300mm

(2)요부전방을 유지시켜주는 길이 : 170mm(요부받침 끝이 방석의 엉덩이 받침보다 전방에 위치)

(3)앞는 면으로부터 요부까지의 높이 : 150mm

[그림 부록1-2] 기존 의자로 사용하고 있는 판재에 클램프 결합방식으로 부착할 수 있는 요부받침



[그림 부록1-3] 미사용 시 접어서 작업 자세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함



### 3. 소도구정리

소도구들은 작업 시 재봉틀 기기 자체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작업도구들이다. 관찰 및 인터뷰 결과 소도구들의 목록과 각각의 사용빈도를 기준으로 소도구 정리 시스템을 디자인했다. 작업대 우측에 소도구함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놓고 사용하지 않고 의자 오른쪽에 도구들을 놓던지 아니면 작업대에 주머니 방식으로 소도구를 보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소도구함에 있는 도구들은 사용 빈도수를 기준으로 나열하면 바늘, 밀실 감게, 쪽가위, 핀셋, 일자 드라이버, 송곳 뭉툭한 것, 초크 순이다. 또한 인터뷰에서 의자 자체에 속이 보이는 보관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후속 연구의 고려대상으로 넣는다.

#### 1)사용 습관적 측면

- (1)찾는 도중에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 (2)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
- (3)쉽게 꺼내 쓸 수 있게 한다.
- (4)앉은 상태에서 유용하게 손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한다.

## 2)인간공학적 측면

- (1)사용빈도에 의해 정리할 수 있게 한다.
- (2)도구들의 형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리방식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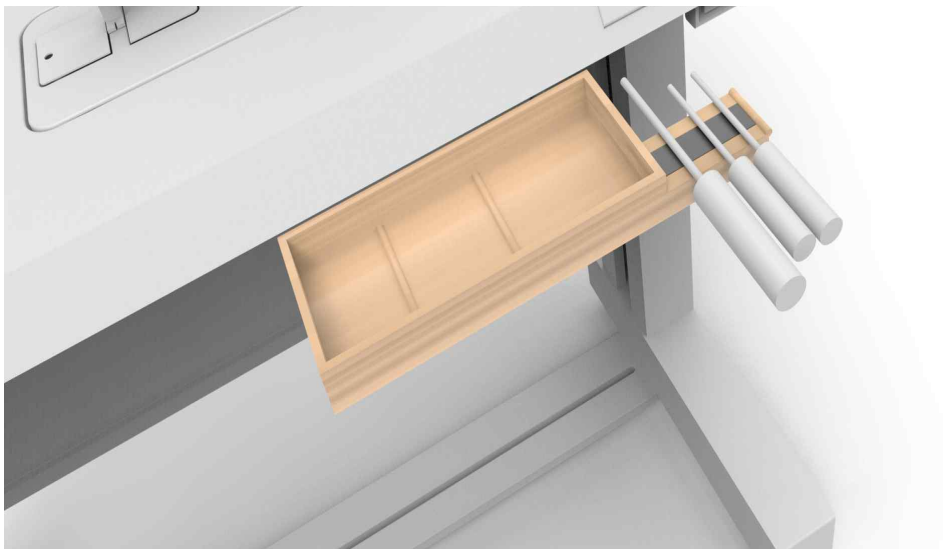
## 3)구체적 가이드라인

- (1)사용빈도의 원리를 기준으로 한다.  
\_바늘, 밀실 감게, 쪽가위, 핀셋 일자 드라이버, 송곳, 초크
- (2)도구를 찾을 때 다른 것에 의해 시각적인 방해받지 않게 한다.
- (3)작업대 오른쪽에 있게 하되 on/off 스위치는 가리지 않게 한다.
- (4)기존 작업대에 탈 부착할 수 있게 한다.
- (5)도구함 사이즈 : 300\*100\*30 mm
- (6)소도구들이 철제인 점을 고려하여 자석을 이용한다.(일자 드라이버, 송곳, 핀셋)
- (7)밀실 감게는 가운데 구멍을 고려하여 꽂는 행동을 유도하는 정리방식을 제시한다.

\_작업대와의 고정방식 : 공기압착식 고정

\_총 높이 : 50mm(밀실 감게 4개를 꽂아 보관할 수 있는 높이)

### [그림 부록1-4] 작업대 우측 하단에 위치한 자석 활용 소도구 보관방식



[그림 부록1-5] 밀실 감개의 형태적 특성을 고려한 꽃는 방식의 정리시스템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쉽게 옮길 수 있도록 공기압착기를 이용



#### 4. 작업대 확장판

작업대 확장판은 대량 생산하는 작업대에 필수적인 것이다. 옷감을 많이 쌓아 두고 작업을 하는 재봉틀의 작업 동선을 들여다 보면 작업자 왼쪽에 옷감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작업대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직접 얇은 판재를 구해서 테이프로 고정시켜서 작업대를 만든다. 추가적인 작업대를 유지 보수하는 노력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작업대 확장 판을 제시한다.

##### 1)사용 습관적 측면

- (1)옷감이 걸리지 않게 모든 면을 부드럽게 한다.
- (2)좁은 공간에서도 지나갈 수 있게 접이식으로 한다.
- (3)무거운 옷감이 버틸 수 있도록 한다.
- (4)작업자 왼쪽에 위치해서 많은 옷감을 놓을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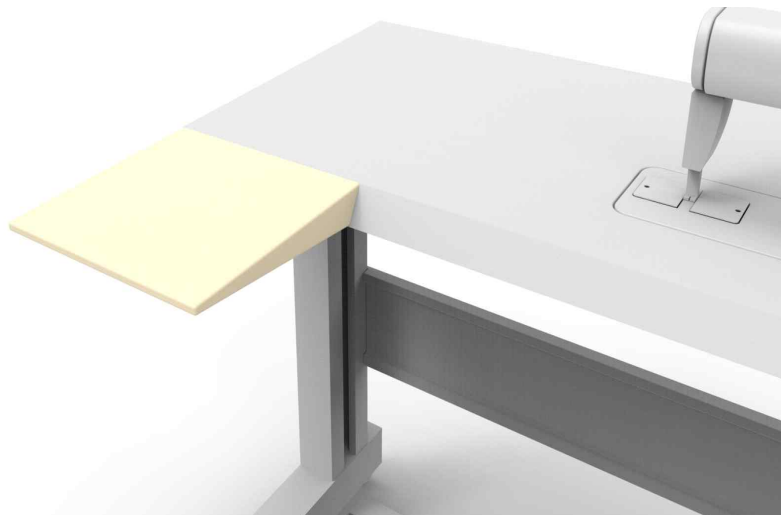
##### 2)인간공학적 측면

- (1)허리를 과도하게 회전시키지 않도록 한다.
- (2)작업공간의 자유도를 고려하여 사이즈를 정한다.

3)구체적 가이드라인

- (1)작업대 확장판 사이즈 : 300\*300mm
- (2)작업대 끝선이 사선으로 떨어지는 것을 고려한다.
- (3)작업대 확장판의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도록 한다.

[그림 부록1-6] 기존 작업대에 힌지 부착방식 활용 접이식 디자인



5. 노루발 들기(knee lifter)

일명 ‘와샤기’라고 불리는 노루발 들기(knee lifter)는 옷감이 밀리지 않게 잡아 주는 노루발을 들어 올리는 기구를 말한다. 기존의 노루발 들기는 무릎 부분과 닿는 면적이 좁아서 노동자의 무릎부분에 고통을 주고 있다. 현장방문 관찰 결과 대부분의 작업장에는 위와같은 문제 때문에 두꺼운 솜과 천을 이용하여 노루발 들기 전체를 감싸서 넓은 면적이 되도록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선안도 국소부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하고 그에 따라서 작업공간의 자유도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1)사용 습관적 측면

- (1)기존 기구에 갈아 끼울 수 있게 한다.
- (2)무릎과 닿는 면적을 딱딱하지 않게 한다.
- (3)작업자의 습관에 맞게 조절할 수 있게 한다.

2)인간공학적 측면

- (1)국소부위를 넓게 한다.
- (2)길이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

3)구체적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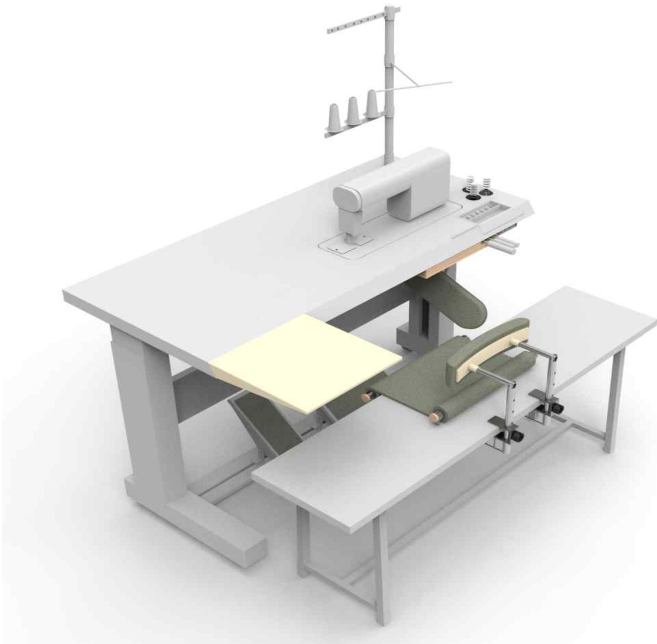
(1)기존의 기구에 결합할 수 있도록 나사 체결 방식과 사이즈를 동일하게 한다.

(2)노루발 들기 사이즈 : 300\*100 mm(끝이 둥근 직사각형 모양으로 국소부위를 넓히는 동시에 길이 조절을 가능하게 하여 작업자세의 자유도를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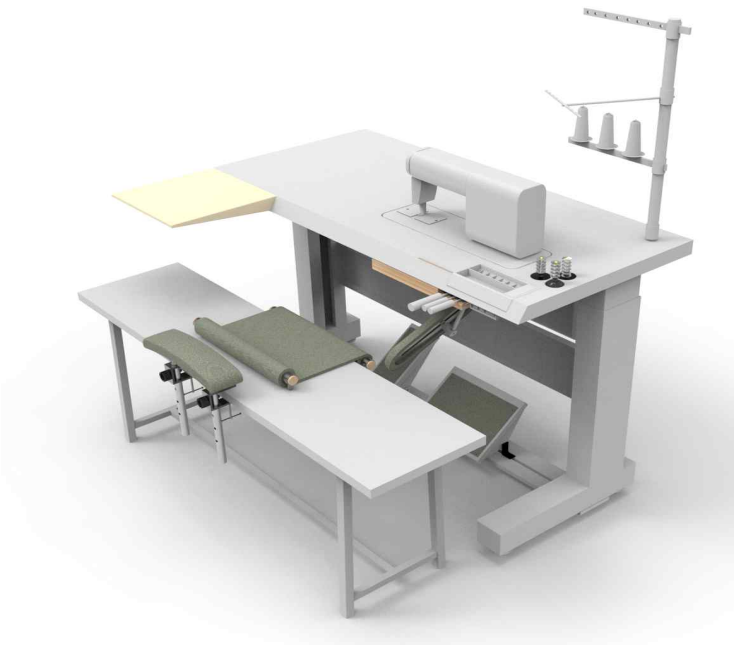
[그림 부록1-7] 기존 기구에 신체 접촉 부위만 갈아 끼울 수 있게 했고 위치와 길이를 조절가능 하게 함



[그림 부록1-8] 작업공간에 적용한 모습 1



[그림 부록1-9] 작업공간에 적용한 모습 2



노동자들에게 익숙한 기존의 작업환경과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해당 작업환경에 적절한 모습과 방식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오랫동안 같은 자세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해 온 숙련공들에 가장 친화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장의 모습과 목소리를 담아 내고 또한 가려내는 과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현장 중심적이고 사용자 중심적인 이 대안을 바탕으로 봉제 노동자가 작업하는 곳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부록2] 봉제사업장 작업환경(소음, 분진) 측정 결과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측조사 보고서 요약 및 정리-

부록 2는 연구 조사 진행 중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요약한 내용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봉제산업 노동자의 건강안전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2015년 6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분진과 소음 측정을 의뢰하였다. 부록 2에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 “서울시 봉제 사업장 작업장 환경 실측조사 결과(분진과 소음을 중심으로)”의 주요 내용을 싣는다. “서울시 봉제사업장 작업장 환경 실측조사 결과(분진과 소음을 중심으로)”는 본 연구과제의 측정조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측정조사 결과는 예상만큼 의미있는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환기가 용이한 여름에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원인은 측정조사에 동의한 업체는 봉제업체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본 측정조사는 예산 상의 한계, 시간상의 제약 하에서 진행되었고, 업계 내 편차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통해 향후 봉제 작업장 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설계 시 필요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조사 결과를 부록에 담았다.

지면상의 제약과 연구 결과의 유의미성이 낮음을 모두 고려하여, 실측조사 보고서 전체를 부록으로 삽입하지 않고, 측정방법, 결과, 의미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주요 데이터는 그대로 보고서원안대로 사용하되, 전반적인 서술의 분량은 대폭 줄였다. 측정 조사 대상과 방법, 측정 내용, 위험성에 대한 판단 등 실측조사 결과의 의미를 후속연구의 필요성과 연관하여 간략하게 제시할 것이다. 이어서 제시할 표와 데이터는 측정 및 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실측조사 결과물로 받은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 1. 측정 조사: 대상과 방법

측정 조사는 2015년 6월 4일과 5일 양일 간, 종로구에 위치한 봉제업체 2곳과 성북구에 위치한 1개 업체(총 3개 업체, 이하 A,B,C 사업장)에 진행되었다. 분진과 소음 측정 대상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lt;표 부록2-1&gt; 의류봉제공장 환경평가 시료 수

사업장명	측정 대상 인자	
	분진	소음
A	3개	3개
B	3개	3개
C	3개	3개

측정조사에 참여할 사업장 3곳의 섭외에 난항을 겪었는데, 설문 및 면담조사 실시 당시에 당면했던 접근성 문제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업주나 노동자 스스로 작업환경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측정조사를 거절한 경우도 있었고, 업종과 계절별로 작업장 내 환경이 천차만별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소속된 사업장이 적합하지 않은 사례라며 거절한 경우도 있었다. 대다수의 업체에서는 장시간 측정 장비를 착용하거나 장비가 설치된 근방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드러냈다. 봉제 노동자들이 작업대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으며, 작업과정 중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측정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측정대상 사업장은 장비 설치 및 착용에 대한 노동자의 양해와 사업주의 협조 의사가 있는 특정 업체로 한정된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이번 측정조사에 봉제업체별로 다루는 원단, 제품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한 배경이기도 하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측정팀이 밝힌 측정방법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분진 측정(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15)

“측정 및 분석 NIOSH method 0500에 준하였다. PVC 필터(37-mm, 5-um)를 측정 여재로 사용하였고, 샘플링 펌프(AirChek XR5000)는 2L/min 유량으로 보정하였다. 필터는 작업자의 호흡기 영역 부근에 부착하기 위해 옷깃에 부착하였고, 부득이한 경우 작업이 이루어지는 재봉틀 위에 설치하여 최대한 호흡기 영역 부근에서 측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총 분진의 노출기준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경우 15 mg/m<sup>3</sup>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 ACGIH) 10 mg/m<sup>3</sup>으로 노출기준을 두고 있다. 국내 고용노동부는 ACGIH 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소음측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15)

“소음은 작업자의 귀와 근접한 위치에 마이크로폰이 위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우리나라의 소음의 노출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1일 8시간 노출시 노출기준은 90dB(A)이며, 소음이 5dB 증가함에 따라 노출 허용시간이 반감된다. 이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기준과 동일하다. 그러나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경우 85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는 1일 8시간 노출시 노출기준은 85 dB(A)이며, 3 dB(A) 증가할 때마다 노출시간이 반감된다.”

연속소음에 대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노출기준

노출시간[시간/일]	음압수준[dB(A)]
8	90
4	95
2	100
1	105
1/2	110
1/4	115 <sup>1)</sup>

\*측정조사 시, 사용된 장비는 누적소음노출량계(model: Spark 706)이며, 설정 정보는 다음과 같다.

누적소음측정기 설정 정보

Response	Slow
Weighting	A
Exchange rate	5 dB
Criterion level	90 dB
Threshold	80 dB

## 2. 조사 결과

### 1) 업체별 작업장 환경 조사표

각 사업장의 환경은 위의 조사표와 같이 나타났다. 면, 마, 폴리, 나일론 등 다양한 원단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작업시 불편사항으로는 분진으로 인한 호흡 곤란의 호소 비중이 높았다. 계절적 영향과 원단의 종류에 따라 분진의 양이 다르다는 응답이 많았고, 환기가 어려운 겨울철, 면 원단 작업 시에 분진 발생이 심각하다는 증언도 있었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호소도 많았으며 특히, 좁은 공간에서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는 봉제 공정에서는 허리와 어깨통증 등 호소가 주를 이루었으며, 재단 공정은 중량물 들기(원단 입고 시) 작업으로 인한 통증과 질환을 호소했다. 중량물 들기 때문에 생기는 통증에서도 계절적 요인(겨울 옷 원단의 무게의 부담)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표 부록2-2> 사업장 조사표\_A업체

일반사항	조사 일자	2015. 06 04		
	작업인원	4명	주생산품	여성상의
인력운영	출퇴근 시간	-	근무요일	-
	교대제	-		
취급 원단 정보	원단 종류 및 물질명	사용량 또는 생산량	비고(원산지 등)	
	면	-	원단의 90% 이상 중국산 10% 이하 국내산	
	스판	500벌/월		
	마	150장/월		
폴리	500벌/월			
공정도	공정	작업내용	비고	
	원단 -> 재단 -> 봉제			
환경관리	바닥상태	재단 자투리들이 작업장 바닥에 무질서하게 놓여 있음	진공 청소기 사용 유무	사용하지 않음
	출입구 및 창문 수	창문: 2개	출입구: 2개	
	퇴적 먼지 위치	재봉틀 바닥 및 기기 다리 사이		
환기상태	전체환기	출입문 및 창문 개방 / 자연환기용 벤틸레이터 / 동력 환기팬 / 건축집진기 / 기타( )		
	비고: 동력팬 2대 가동 되고 있었음.			



2) 분진과 소음 분석 결과

분진과 소음 측정 결과는 예상과 달리 심각성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총 분진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노동부의 분진 기준은  $10 \text{ mg/m}^3$ 이나 측정 결과, 매우 낮은 농도로 나타났다.

<표 부록2-5> 업체별 총 분진 측정 결과(단위:  $\text{mg/m}^3$ )

업체명	작업구분	측정결과
A	재봉	0.02
	재봉	0.10
	재봉	2.60
B	재봉	0.17
	재단	0.18
	재봉	검출한계 미만
C	재봉	0.14
	재봉	0.04
	재봉	0.06

<표 부록2-6> 업체별 소음 측정 결과(단위: dB(A))

업체명	작업구분	측정결과
A	재봉	57.9
	재봉	67.2
	재봉	64.3
B	재봉	67.9
	재단	65.4
	재봉	63.8
C	재봉	36.5
	재봉	47.4
	재봉	27.4

[그림 부록2-1] 노출기준과 측정 결과 비교



소음 측정 결과는 위와 같이 나타났다. 측정결과 90dB(8시간 노출 기준)이하의 소음으로 나타나 유해하지 않은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재봉틀 소음은 80dB정도로 보고되었으나, 각 사업장에서의 측정에서는 70dB이하로 나타났다. 노동 시간이 12시간인 것을 고려하여 보정한 노출기준은 82dB였으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 원단 작업시 분진의 심각성을 호소한 노동자들의 응답을 고려하였을 때, 측정 기간 동안 3곳의 업체가 사용한 원단이 마와 기타 원단이었음은 분석결과에서 유효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 중 한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름에는 원단 소재의 가벼움과 환기의 용이성으로 분진의 심각성이 더욱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소음의 경우도 분진과 마찬가지로, 계절적 요인, 작업자의 수나 생산 제품의 특성에 따라 발생 수준과 심각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실측 조사결과에서는 분진과 소음이 봉제노동자의 건강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정도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측정시점이 환기가 용이하고, 원단의 종류도 비교적 가벼운 여름철이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봉제업체의 주기(비수기/성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 봉제업체의 작업량이 감소기에 접어들고 있었던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해당 측정 기간 동안 작업량이 줄어들어 현장의 모든 기기들이 가동되는 것이 아니었다. 사업장 조사표에서 드러나듯이 전체 공장의 일부에서만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측정조사의 기한 상의 문제로, 재봉 공정에 한해서만 측정이 이루어진 한계도 고려하여 이 결과를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 3. 추가적인 실측 조사 필요성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분진과 소음은 모두 심각하지 않은 수준으로 측정되었지만, 전술하였듯이 2일간의 측정에서는 계절적 요인, 봉제업 성수기 여부, 작업장 내 작업자의 수와 공정 방식, 제품과 원단의 특징 등의 많은 변수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기에 후속적인 실측조사가 필요하다. 봉제 작업장 내의 작업환경과 작업량의 편차가 큰 만큼, 지속적이고 보다 범위가 넓은 측정조사 계획이 요구된다. 더불어 분진의 양과는 별개로 분진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정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봉제업 종사자에게 유해한 분진에 대한 연구와 보고가 있는 이상, 심층적인 분진 성분분석이 필요하다. 후속 측정조사와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봉제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설계되어야 하며, 생산공정과 제품 별로 분류를 거친 후 측정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유해물질에 대한 국외보고

측정결과 보고서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실측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두 문단은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한 것이다.

국외에서는 봉제노동자의 건강에 유해한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와 보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면폐증, 근골격계 질환의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Kong athit, 2005; Padmini,Venmathi, 2012) 이들 보고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화학적 위해와 물리적 위해를 체감하고 있으며, 이는 의류 산업에서의 위험성을 띠는 화학 물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 사례로, 미국 헬레나의 스포츠의류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포름알데히드의 심각성을 들 수 있다.(Echt,1993) 분진은 본 측정조사처럼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포름알데히드 검출은 0.14 ~ 0.17 ppm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세탁건조망에 함유된 난연성물질인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의 위험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Stapleton et al, 2005)신경행동 장애와 갑상성 호르몬 분비에 방해를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물질이 세탁건조망에서 발견 된 것은, 의류에도 해당물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하며, 제조 공정에 나서는 작업자도 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시해야한다.

◆ 보론, 부록1, 부록2 참조자료

보고서 본문 참고문헌 란에 표기되지 않은, 보론 및 부록에서 사용된 자료의 전거 표기를 위해 마련한 페이지이다.

[보론] 봉제산업의 이주노동자 고용

자료 출처 각주 처리, 주석 참조

[부록1] 작업의자 개선안: 인간공학적 개선

<서적>

마크 S. 샌더스, 어네스트 J. 맥코믹. 1995. 『인간공학』. 조영일 옮김. 대영사.

<보고서>

한국의류산업협회. (2013a). 『국내 의류제조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한국의류산업협회 봉제업종합지원센터.

\_\_\_\_\_. (2013b). 『서울시 의류제조 집적지 실태조사』. 한국의류산업협회 봉제업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자료>

안전세계, 근골격계 부담작업 개선을 위한 인체공학 디자인 가이드라인 (<http://www.safetygo.com>)

[부록2] 봉제사업장 작업환경(소음, 분진)측정 결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측조사 보고서 요약 및 정리-

<논문>

Kong Athit. (2005). "Hazards in Cambodian Garment Factories." *ASIAN LABOUR UPDATE* 55

Padmini D.S. and Venmathi A. (2012). "UNSAFE WORK ENVIRONMENT IN GARMENT INDUSTRIES, TIRUPUR, INDIA."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Development*. Vol. 7- No. 1A

Stapleton, Heather M., Nathan G. Dodder, John H. Offenbergl, Michele M. Schantz and Stephen A. Wise. (2005).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in House Dust and Clothes Dryer Lint."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서적>

Echt, Alan . (1993). *West Helena - Helena Sportswear, Inc.* NIOSH health hazard evaluation report series-.Springfield, Va. :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부록 3] 설문지

## 서울시 봉제산업 노동자 건강안전 실태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서울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위탁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봉제산업 노동자 건강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취지는 서울지역의 봉제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이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번거로우시겠지만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문내용에 의문이 있으실 때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바로 응답해드리겠습니다.

통계법 제 8조에 의하여 조사결과는 통합적인 자료로만 사용되며, 소속회사를 비롯한 개인정보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5년 5월



www.labors.or.kr 02-6925-4349  
 무료노동법률상담 02-376-0001

조사담당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 정용식 연구위원  
 (070-4610-2479, tumse@labors.or.kr)

### I. 근로조건 일반

1. 만드는 옷의 종류는?	① 남성복    ② 여성복    ③ 캐주얼    ④ 스포츠복 ⑤ 외투류    ⑥ 내의류    ⑦ 유아동복    ⑧ 기타(            )		
2. 하시는 일은?	① 봉제사    ② 재단사    ③ 보조(시다)    ④ 기타(            )		
4. 현재 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만(    )년	5. 봉제업종에서 일한 기간은?	만(    )년
6. 근무지 규모?	Q. 현재 귀하가 일하고 있는 곳의 소속된 근로자 수는 몇 명인가요? 1) 봉 제 사 (            )명    2) 보 조(시다) (            )명 3) 재 단 사 (            )명    4) 전 체 인 원 (            )명		
7. 공장 위치?	① 지하2층 이하    ② 지하1층(반지하 포함)    ③ 1층    ④ 2층 이상		
8. 근로시간?	1) 출근시간 (    시    분)    2) 퇴근시간 (    시    분) 3) 점심식사 (    시    분 ~    시    분)    4) 저녁식사 (    시    분 ~    시    분) 5) 1주일 평균 몇 일 일하십니까? ① 4일이하    ② 5일    ③ 5.5    ④ 6일    ⑤ 6.5일    ⑥ 7일		
9. 임금형태?	① 월급제    ② 시간제    ③ 실적급(객공)    ④ 기타(            )		
10. 임금수준?	Q. 최근 3개월 월 평균 급여 및 소득액은? ① 100만원 미만    ② 150만원 미만    ③ 200만원 미만 ④ 250만원 미만    ⑤ 300만원 미만    ⑥ 300만원 이상		
11. 사회보험 가입여부	1) 고용보험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잘모름	
	2) 국민연금	① 직장가입    ② 지역가입    ③ 미가입    ④ 잘모름	
	3) 건강보험	① 직장가입    ② 지역가입    ③ 미가입 ④ 배우자 피부양자    ⑤ 자녀피부양자    ⑥ 잘모름	
	4) 산재보험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잘모름	

## II. 일과 휴식

12. 귀하는 봉제업종에 종사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다소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1) 장시간 노동	①	②	③	④
2) 열악한 작업 환경	①	②	③	④
3) 직업병	①	②	③	④
4) 산업 재해	①	②	③	④
5) 임금 체불	①	②	③	④
6) 낮은 임금(공임)수준	①	②	③	④
7) 많은 작업량	①	②	③	④
8) 빠른 작업속도	①	②	③	④
9) 휴게시간	①	②	③	④
10) 휴일에도 노동	①	②	③	④

13. 업무 중 식사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 ① 작업장 내부(13-1번으로)    ② 작업장 밖의 식당(14번으로)

13-1. 작업장 내부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주로 어떤 곳에서 식사를 합니까?

- ① 작업장 정해진 공간(예 휴게실)    ② 별도 공간 없음(미싱테이블 등에서 그대로 먹는다)    ③ 기타 (        )

14. 현재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의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	아니다
1) 등받이가 필요하다	①	②
2)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 너무 딱딱하다	①	②
3) 의자의 높이가 너무 낮거나 높다	①	②
4) 의자가 좌우로 회전되어야 한다.	①	②

15. 귀하가 일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근무시간내내	근무시간절반	거의노출안됨	절대노출안됨
1) 수공구, 기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목청을 높여야 할 정도의 심한 소음	①	②	③	④
3) 신나, 나염천 등의 냄새	①	②	③	④

16. 귀하는 귀하의 작업장에 14세 미만의 자녀나 타 노동자의 자녀가 와서 머무는 경우(놀거나 일을 돕거나 등)가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 한 달 평균 (    )회, 하루 평균 (    )시간

## III. 건강

17. 귀하의 건강은 대체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나쁜 편이다    ④ 매우 나쁘다

18. 귀하는 건강검진을 받고 계십니까?

- ①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② 최근 5년 사이에 받은 적 없다  
 ③ 3~4년에 한 번씩 받는다    ④ 1~2년마다 거르지 않고 받는다

19. 지난 1년동안(2014년)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을 한 날은 모두 며칠이었습니까?.....    일







◎ 집필진

• 김재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 전수경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전)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일과건강 사무처장

• 조성애

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

•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이사  
경기대학교 사회적경제전문가 과정 수료

• 이관재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사무장

서울시 봉제노동자의 건강안전과 작업환경

- 주요 5개구 실태와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

- 발행연월일 2015년 11월 26일
- 발 행 인 김 성 희
- 발 행 처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10층  
02)6925-4349, www.labors.or.kr

